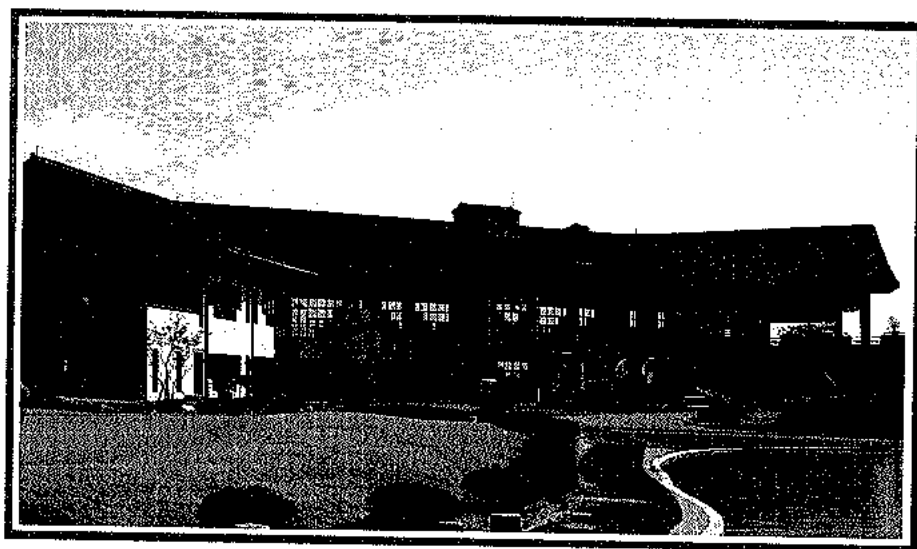


MONTHLY

建築士

- 등록/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제라-1251
- 198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나)급 인가
- 우편번호/137-070
- 1989년 9월 15일 발행
- 통권245호
- 발행/대한건축사협회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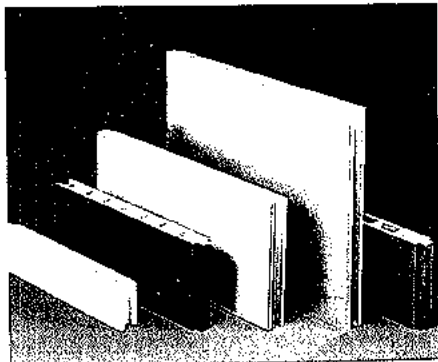


유지할 수
없이 안전합니다.
다
리폴
회사
784-1171~9
'3-1141~5



● 전일약품 GMP 공장 ● 설계·감리/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소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설 / 내동결 율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질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길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 179 —

치밀한 고감도의 압출제품

박산 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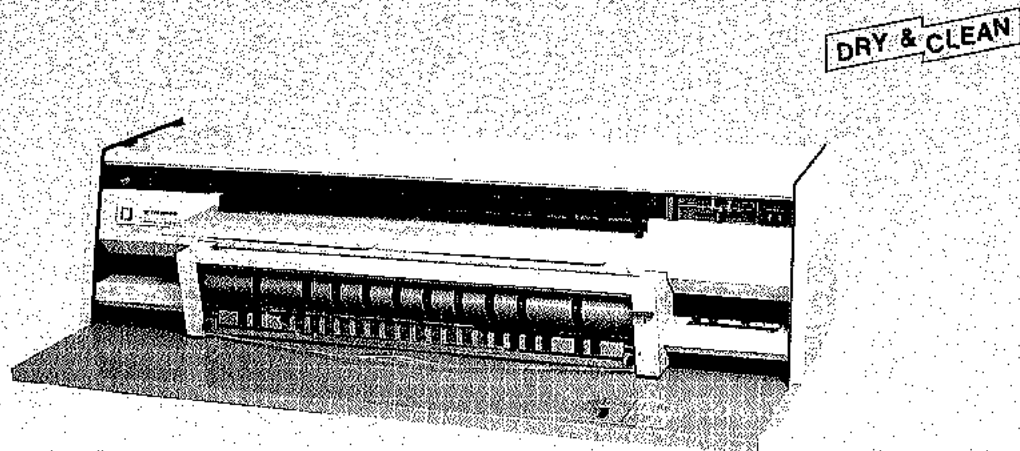
◆ 제품·시공문의상달 / 273-9211~9(구내281) 배이스사업부

전문시공업체/고려엔지니어링 844-0942, 2728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245호
구입년월일	1989. 9. 25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회	

IS COPYLAND

118이 암모니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Convenience Engineering Copier
with
Automatic Original/Print Separator

AMMONIA가 필요없는,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MECHANISM의 결정체입니다.

COPINICA PD 118은 종전의 AMMONIA를 사용하던 복사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독특한 System인 1R, 2B, P 현상방식과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건식 청사진복사기입니다. (폭사폭 680mm)

지금까지 청사진 복사기의 최대 난점이었던 AMMONIA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시간이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스위치 한 동작으로서 작동되는 COPINICA PD 118은 어느 업종, 어느 장소에서나 효율적인 작업을 약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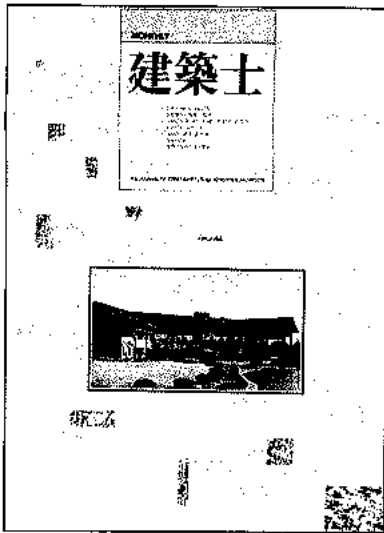
(株) 龜 映

The Frus in Reprographics in Korea.

- 본사·공장: 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608-2 ☎ (032) 92-4167/8 ● 서울영업소: ☎ (02) 266-7416~8
- 울산영업소 ☎ (0522) 5-6620, 33-5045 ● 마산영업소 ☎ (0551) 55-3851, 44-3851 ● 대리점: ● 강서삼중비즈니스 (02) 600-4090
- 수원송화상사 (0331) 36-3798 ● 인천삼일사 (032) 862-3961 ● 부산현대측기 (051) 245-8566/7 ● 강동 구영상사 (02) 419-0050

Items

- Dazoprinter ● Wide-width Plain Paper Copier ● PD Copier ● Copy Paper ● Film Sepia
- Tracing Paper ● Sensitive Paper (blue, black line, PD, etc.) ● ALL REPROGRAPHICS EQUIPMENTS



표지사진/姜錫元 作 가야크림하우스

發行人: 宋基德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副委員長: 卞 鎔, 徐千植

委員: 尹錫祐, 趙聖烈, 閔庚民, 重政根,
姜哲求, 姜聲益, 崔正一, 金周品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레ックス: KIRAA 33550

登錄番號: 第라-1251(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圭 (沈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Vice Chairman: Byun, Yong / Suh, Chun-Sik

Member: Yun, Suk-Woo Choi, Jeong-II

Choi, Sung-Yul Kim, Joo-Cheol

Min, Kyung-Min

Dong, Jeong-Keun

Kang, Chul-Koo

Kang, Sung-Ik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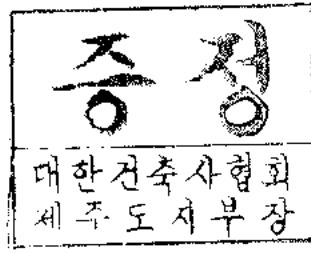
(Kwangmoon Printing Co.)

차례/1989년 통권제245권 9월호

會覽作品	
7	가야크림하우스 姜錫元
10	서울법원종합청사 金壽根
14	한국전력진해지점 朴舒弘
18	송실대학교 과학관 尹承重+下鎔
21	아름빌당 金麟
일하며 생각하며	
24	心理建築 金自浩
批評	
27	'발굴'과 조형성의 굴절 金炳潤
研究	
34	開拓者の 발자취 林洙
44	韓國開化期の 外人館(4) 金泰永
51	호텔건축의 공간구성과 배분에 관한 연구(II) 全東勳
60	자연채광 광원으로서의 천공상태의 추정 金正泰
89	조적조 내력벽 구조계산에 관한 연구 李明春
설계경기	
68	대치·수서1지구 시영아파트 현상설계
75	서울시 신설구청사 노원구청 현상설계
이달의 시	
79	다시 가을에 朴鐘禹
資料	
80	1989년 7월분 도서신고 현황
82	도시저소득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92	協會消息
94	新入會員

전국시도지부 및 분소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 581-5715~8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희동169-16 / 333-6411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1422-17 / 382-6744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191-13 / 903-3425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3가81 / 634-2143
강동분소 / 강동구상대동317-4 / 484-6840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1105-5 / 695-0787
성동분소 / 성동구구의동252-16 / 446-5244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선정동101-7 / 923-6213
종로분소 / 종로구청전동201-1 / 735-0905	마포분소 / 마포구도화동250-4 / 712-8844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0-12 / 423-9158	중구분소 / 중구무학동11-2 / 252-6507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1가129-22 / 712-7647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1623-1 / 586-7707
은평분소 / 은평구녹번동79-32 / 352-6720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147-79 / 599-6754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241-6 / 545-0757	노원분소 / 노원구상계1동1049-79 / 900-1947
양천분소 / 양천구상정동1027-9 / 646-7172	중랑분소 / 중랑구망우동516-41 / 491-0925
성북분소 / 성북구삼전5가410 / 923-4401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130-32 / 864-3988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가1 (부산대피트내) (051) 23-628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가1-8 / (053) 72-5141~2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길1동558-1 /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323-11 / (062) 224-7598	
대전직할시지부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37-1 / (042) 254-2441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1가124-5 / (0331) 47-6129	
직할분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8 / (0331) 42-6490, 7072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719-9 / (0343) 2-2638, 2-0012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74-6 / (032) 63-3144
성남분소 / 성남시신원동5512 / (0342) 2-5445	외청분소 / 외청구서외청동182 / (0351) 2-1083
송탄분소 / 송탄시신원동21 / (0338) 4-6153	고양분소 / 고양시관동로38로16동16 / (0344) 63-8902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409-2 / (0346) 63-8112	이천분소 / 이천시연죽동리216-8 / (0336) 2-3396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464-7 / 682-2875	안산분소 / 안산시고잔동531-5 / 82-2820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 (0361) 2-2442	
원주분소 / 원주시월산동206 / (0371) 42-3257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6 / (0391) 2-2262
속초분소 / 속초시중앙동468-66 / (0392) 2-5081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55-43 / (0397) 2-3106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월리959-35 / (0372) 2-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가116-168 / (0431) 56-2752, 53-7342
충주분소 / 충주시의정동673-1 / (0441) 2-3082	제천분소 / 제천시외동동8-8 / (0443) 2-6253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삼거리139-4 / (0433) 2461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437-1 / (042) 256-4088
천안분소 / 천안시 문화동160-14 / (0417) 2-4551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 (0451) 2-2853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문곡리710-2 / (0463) 2-221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 (대북빌딩 508) (0652) 3-3881
익산시분소 / 익산시남동1가77-22 / (0653) 52-3304	군산분소 / 군산시동양로1가85 / (0654) 2-4060
남원분소 / 남원시하장동105 / (0671) 2-60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 (후신회관) (062) 364-7567, 33-9944
목포분소 / 목포시도남동1 / (0631) 2-5152	순천분소 / 순천시정전동85-7 / (0661) 2-7545
여수분소 / 여수시관동동441번지 / (0662) 64-1144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가1285번지 / (053) 425-4904
포항분소 / 포항시죽도동96-70 / (0562) 74-9713	경주분소 / 경주시노봉동100-1 / (0561) 3-7743
구미분소 / 구미시권평동356-2 / (0546) 52-7903	안동분소 / 안동시북문동29-5 / (0571) 2-6635~6
김천분소 / 김천시평화동280-1 / (0547) 2-2541	영주분소 / 영주시영주4동470-17 / (0572) 2-4566
점원분소 / 점원시점원동251-2 / (0581) 2-2700	황주분소 / 황주시단성동11-3 / (0582) 2-4306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가13 / (0551) 46-4530~1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6 / (0522) 74-8836	전주분소 / 전주시본성동7-20 / (0591) 2-6403, 42-3434~5
충무분소 / 충무시서호동177-101 / (0557) 2-2504, 2-7420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25B-17L / (0594) 2-3155
밀양분소 / 밀양군밀양읍내일동392-1 / (0527) 53-2110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하동483-9 / (0598) 2-3777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방리500-3 / (0523) 4-2669	거제분소 / 거제군 신원읍고현리139-2 / (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도1동1285-6 / (064)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포동299-6 / (064) 62-2233, 32-7777	



CONTENTS Vol. 245, September 1989.

WORKS	
7	Club House Kaya <i>Kang, Suk-Won</i>
10	Seoul District Court Complex <i>Kim, Swoo-Guen</i>
14	The Jinhea Branch of KEPCO <i>Park, sub-Hong</i>
18	Soongsil University Science Building <i>Yoon, Sung-Joong & Byun, Yong</i>
21	Aryung Building <i>Kim, Lin</i>
24	Essay <i>Kim, Ja-Ho</i>
CRITICISM	
27	An Excavation and a Refractions of Configuration <i>Kim, Byung-Yoon</i>
REPORT	
34	The Foot Prints of a Pioneer <i>Lim, Soo</i>
44	A Study on the Foreginers Residence in Korea <i>Kim, Tai-Young</i>
51	A Study on the Space Organization and Program of City Hotel in Korea <i>Jun, Dong-Hoon</i>
60	Estimating Sky Conditions as Daylighting Source <i>Kim, Jeong-Tai</i>
89	A Research For Structure Design of Brick Retaining Wall <i>Lee, Myung-Choon</i>
DESIGN COMPETITION	
68	Daechi & Suso Zone Municipal Apartment
75	Songpa & Rowon District Building in Seoul
79	POEM <i>Park, Jong-Woo</i>
80	MATERIALS
92	KIRA NEWS
94	NEWLY ADMITTED MEMBER



GoldStar

☐ 럭키금성

기존주택에도 설치가 간편한
혁신적인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국내최초 판매개시!

홈오토메이션



금성 홈메이트 점단의 10대 장점

- 1 최첨단 전력반송시스템의 홈버스(HOME BUS) 방식으로 배선공사가 필요없습니다.
- 2 국내최초 무선리모콘제어 방식으로 가전기기를 원터치로 조작합니다.
- 3 원격지에서도 가전기기8가지를 제어 및 확인합니다.
- 4 카폰기능에 의한 점단의 통신 싸이버스 (30여가지)를 제공합니다.
- 5 각 방의 카폰전화기도 가전기기의 내선제어 및 경비실/내선/도어폰 통화가 자유롭습니다.
- 6 방범을 위한 점단의 무선감지기로 기존주택에도 설치가 간편합니다.
- 7 부재중 사고발생시, 지정된 곳으로 사고내용을 음성/정보음으로 알려줍니다.
- 8 옥외, 현관 등에 전동제어용 동계감지로 야간 및 외출시에도 침입자를 감시합니다.
- 9 방문객 확인 및 출입자 감지를 위한 다양한 도어비디오폰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 10 완벽한 방범·방재를 위한 컴퓨터 경비원 역할로 안전하고 쾌적한 꿈의 주택을 꾸며드립니다.

◀금성 홈메이트 (GH-300)

국내최초 리모콘 방식/
국내최초 무선감지기 채택/
국내최초 홈버스 방식/

최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 홈메이트
금성통신(주)

■ 본사 : 서울 서대문구 여의도동20 (원키금성 트윈타워)
● 수도권 영업부 : 797-4131 ~ 9 ● 강원도 영업소 : 465-0411 ~ 4
● 강남영업소 : 817-0401 ~ 3 ● 부산영업소 : 864-1331 ~ 3
● 대전영업소 : 253-9952, 252-0128 ● 광주영업소 : 526-3912 ~ 3
● 대구영업소 : 755-4600, 752-4321

가야크럽하우스

Club House Kaya

姜錫元 / 건축사사무소구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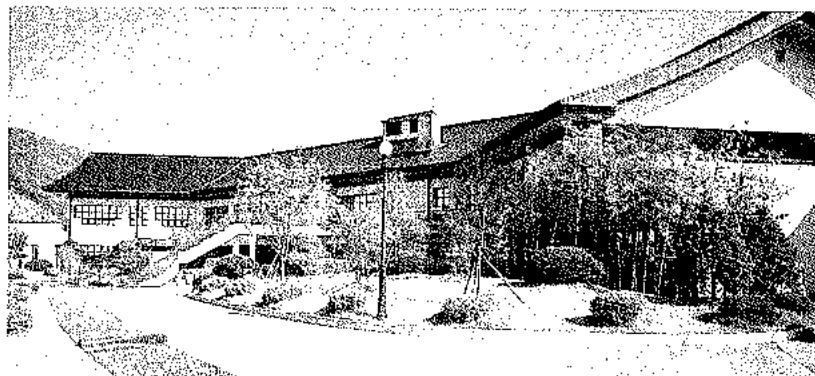
Designed by Kang, Suk-Won



①



②



③

대지위치/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 137-2

대지면적/637.779m²

건축면적/2,343m²

연면적/5,046.25m²

건폐율/0.37%

용적율/0.79%

구조/철근 콘크리트조

규모/지하1층, 지상2층

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

주차대수/403대

외부마감/창호-자연발색알루미늄후레임

+THK18mm열선반사복층유리

벽-화강석 불꽃마감

지붕-도기와 엇기

설계개요

경남 김해시에서 북쪽으로 20여분 소요되는 삼방동 신어산 계곡의 구릉에 위치한 부지로서 남측으로 멀리 남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잡목이 우거진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27개홀의 골프코스를 위한 컨트리클럽하우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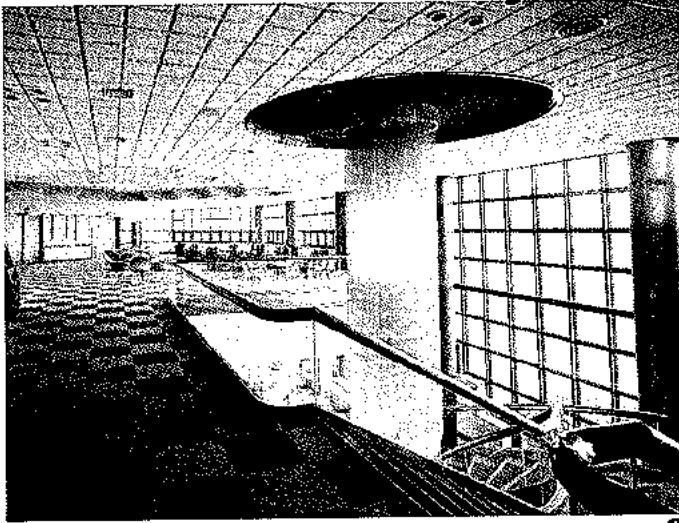
본 건물은 골프링크의 순환되는 코스 흐름에 일치되는 공간전체의 통일성 및 원활한 동선 체계에 의한 질서속의 연속성과 공간의 흐름을 유도하고 플레이어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위치에 주변환경을 적극 순응하여 배치하였다.

평면계획에 있어서 기능에 따라 공간의 영역을 규정하고 공간의 연계성을 주는 동선체계를 수용하여 유기적인 공간의 흐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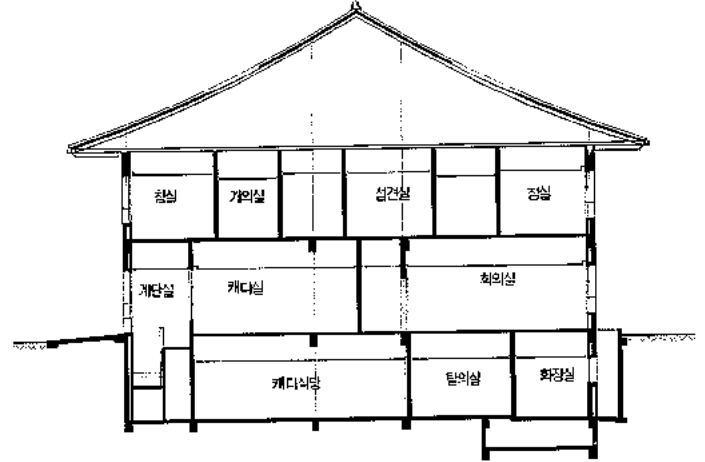
유도하고, 각각의 기능에 상응하는 독립된 동선체계를 유지하여 동선의 중복을 피하도록 하였으며, 외부공간의 자연요소를 내부 깊숙히 끌어들이어 쾌적한 내부공간이 되도록 구성하고 플레이어들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평년을 구성하였다.

외부형태에 있어 지세의 흐름에 순화되면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많은 변화보다는 단순한 형태의 반복되는 연속성을 부여하였으며 부드러운 경사의 지붕형태는 주변질서에 순화되고 친근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토록 하였고, 현대의 복잡한 도시생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더욱 전원적이며 쾌적한 클럽하우스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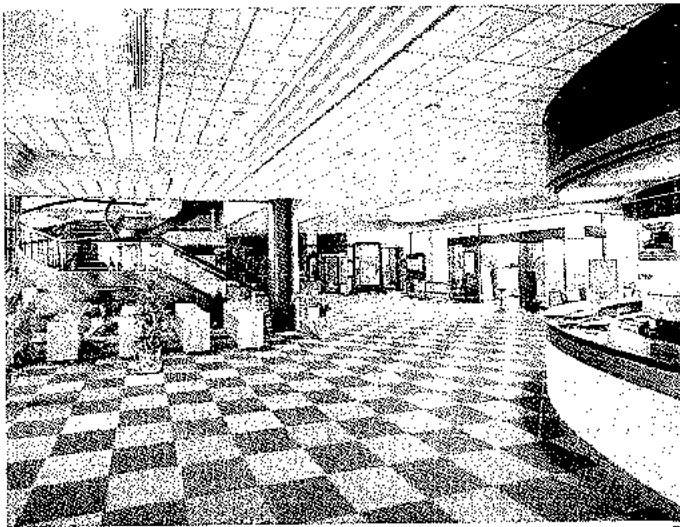
- ① 주출입구측 전경
- ② 측면 계단실 외벽상세
- ③ 배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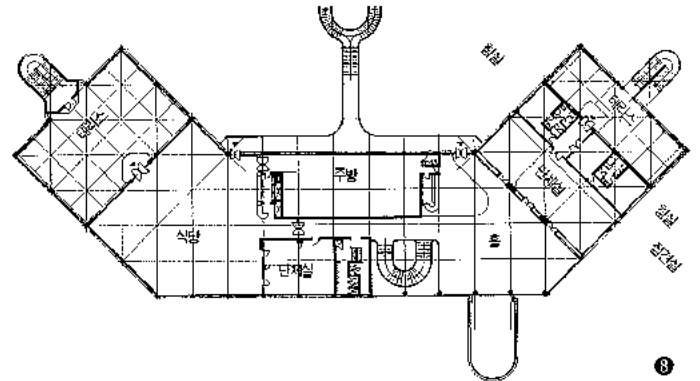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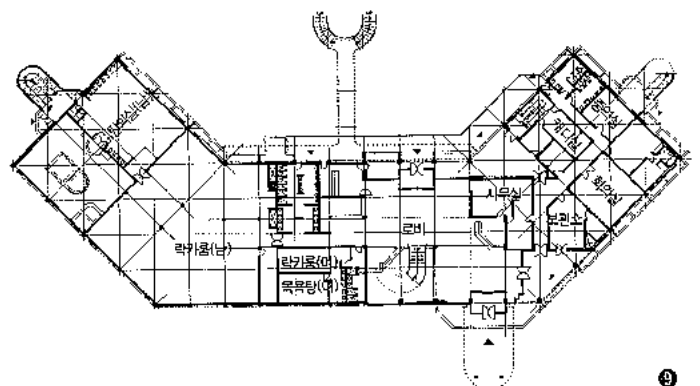
5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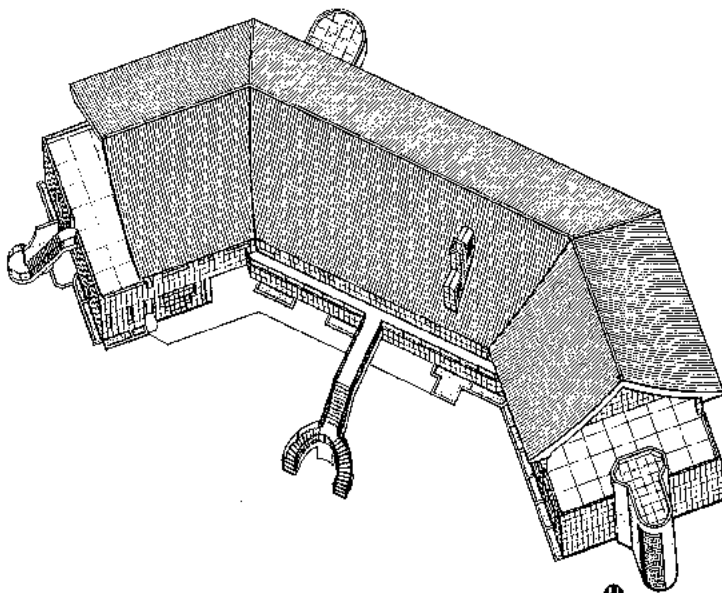


9

- 4 2층 홀
- 5 1층 로비
- 6 주출입구 캐노피
- 7 주단면도
- 8 2층 평면도
- 9 1층 평면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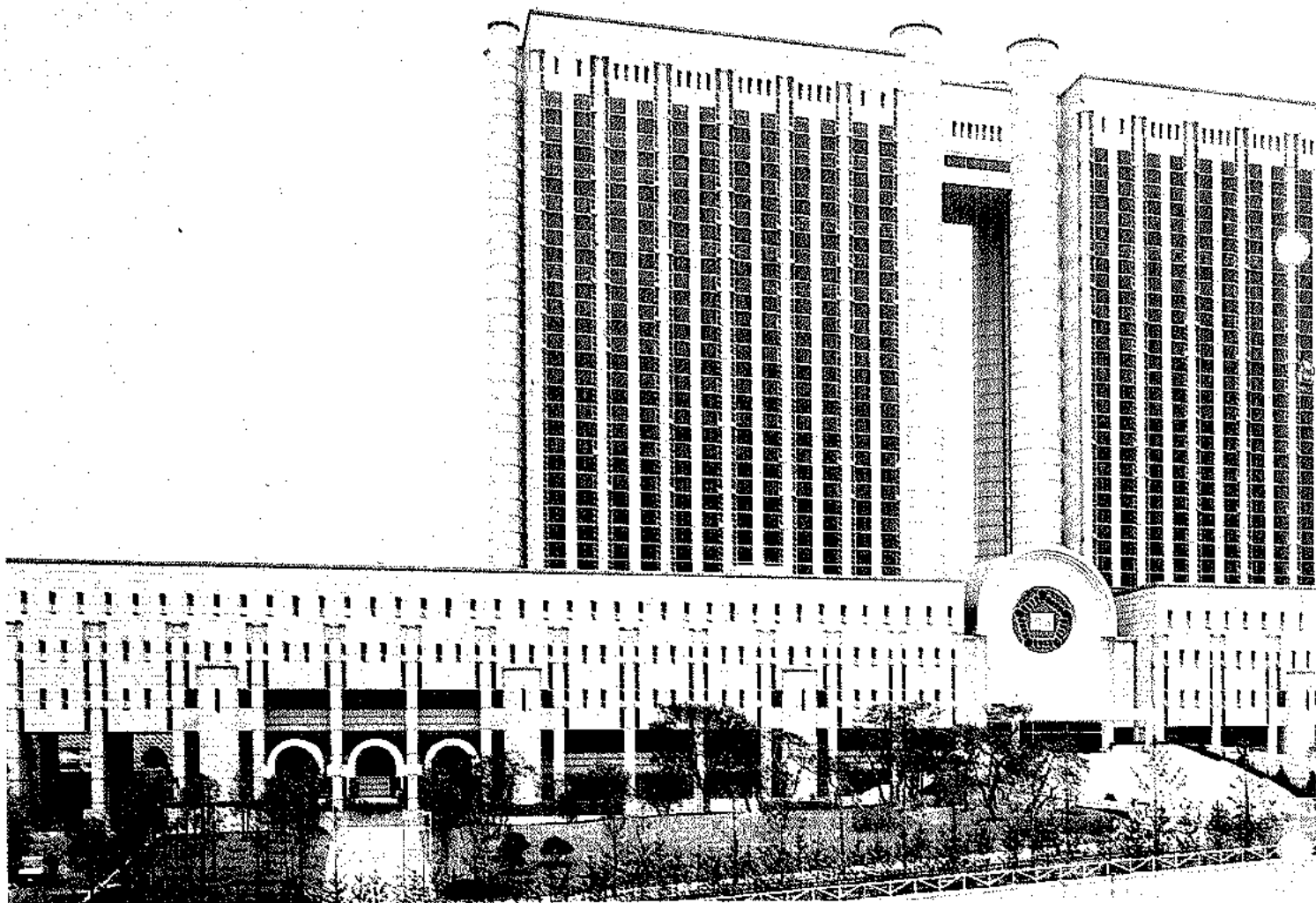


11

- ⑩ 골프링크에서 바라본 전경
- ⑪ 등각투시도

서울법원종합청사

Seoul District Court Complex



故 金壽根 / (주)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woo-Guen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지면적 / 70,886㎡
건축면적 / 10,807㎡
연면적 / 93,446㎡
용도 / 고등법원, 형사법원, 민사법원, 가정법원 및 후생시설
건폐율 / 15.2%
용적율 / 107.8%
주차대수 / 옥내 163대, 옥외 419대
규모 / 지하 2층, 지상 20층
구조 / 고층부 - 철골H형강 강구조
저층부 - 철조콘크리트 라멘조
주요 마감 / 외벽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판워 자기질 타일
기둥 - 알루미늄 쉬트
창호 - 알루미늄 새시 + 복층 유리
바닥 - 화강석 버너마감
천장 - 알루미늄 스펠드

배치개념

- 주차장 및 차량동선의 합리적 처리
- 바로크적 입구부 구성
- 정면성 및 도시적 축의 강조
- 사선진입에 의한 한국적 분위기 고양

평면개념

- 법관과 민원인 동선의 명확한 분리
- 넓은 내부홀과 대칭적 평면
- 내부 주공간과 옥외광장 연결
- 중정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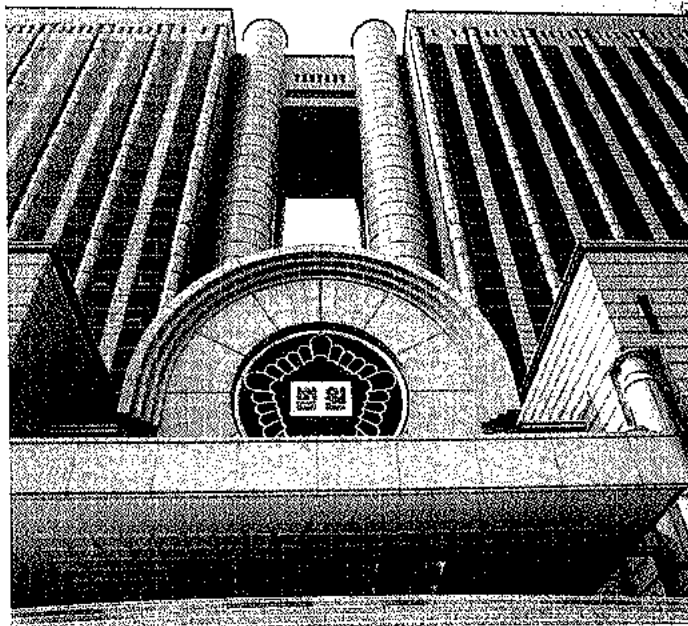
입면개념

- 기능의 상이성에 따른 두 동의 분리적 입면
- 정형적 대칭적 입면
- 수직성 표현
- 열주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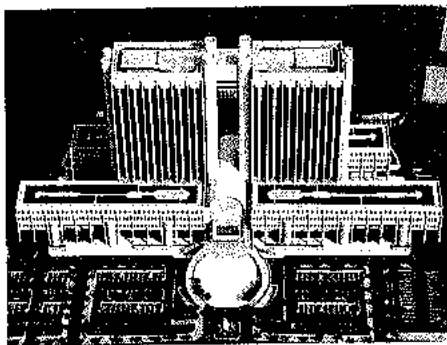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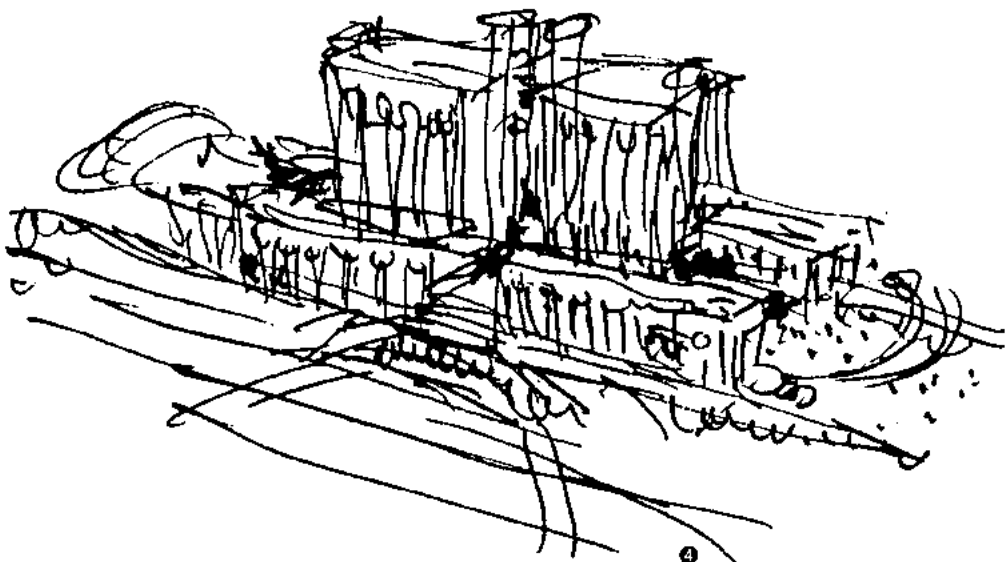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주출입구에서 본 캐노피와 고층부
- ③ 모형사진
- ④ 김수근선생의 초기 스케치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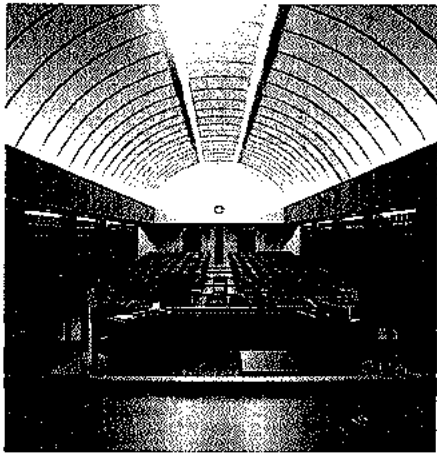
③



④

단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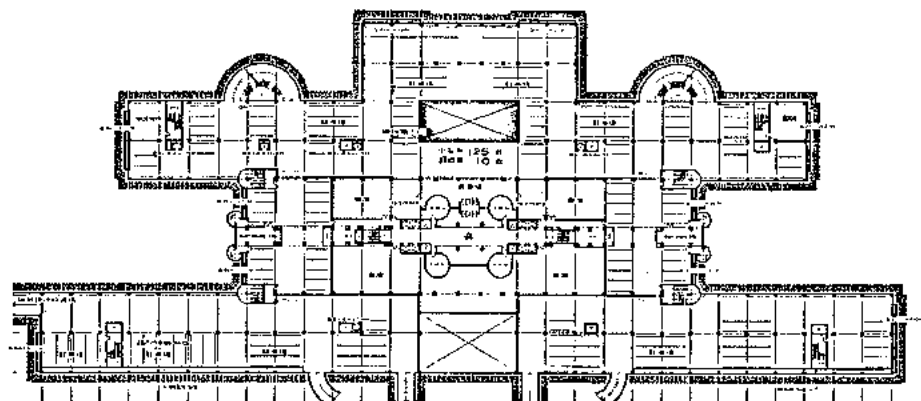
- 높은 층고로 법원의 권위 상징
- 내·외부공간의 고저변화
- 회랑공간 도입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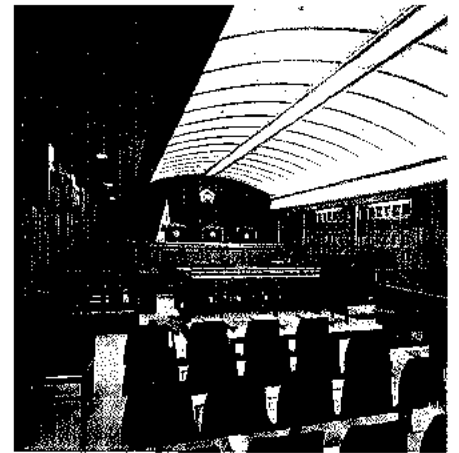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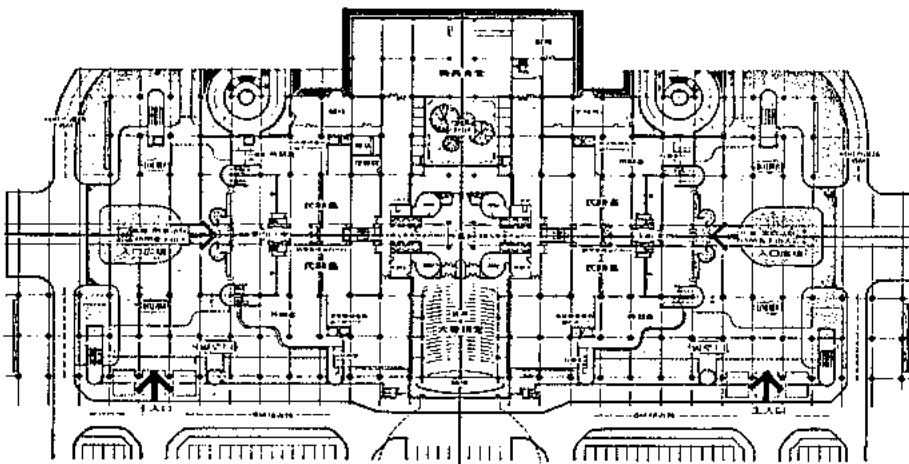
7



8



9



10

- ⑤ 방청객쪽으로 바라본 내부전경
- ⑥ 중앙로비와 주출입구
- ⑦ 지하층 평면도
- ⑧ 내부중정
- ⑨ 법관석 쪽으로 바라 본 내부전경
- ⑩ 지층 평면도

한국전력 진해지점

The Jinhea Branch of KEPCO

대지위치/경남 진해시 여좌동 456
대지면적/4,939.75㎡
건축면적/852.094㎡
연면적/2,427.85㎡
건폐율/23.67%
용적율/51.68%
층수/지하층, 지상3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장미감/자기질타일+16mm 일면착색복층유리



朴舒弘 / (주) 화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Suh-Hong

설계소요

벚꽃의 도시 진해에 설계된 한국전력 진해지점은 진해의 초입인 마진터널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고저차 약 5m의 대지 위에 신축되었다. 그 위치는 진해의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곳이며 현대식건물(?)이 눈에 띄지 않는 진해에 새로운 건축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곳이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여타의 한전지점과 같이 에너지토피아를 주제로 한 이 건물은 에너지 절약 시범건물로 지정, 초기 단계에 Passive Solar System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Double Skin에 의한 부속 온실방식의 채택과 축열조의 활용, 외벽단열의 완벽성이 추구된 이 건물은 초기에 계획된 Solar System의 방법이 채택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빛이 크게 퇴색되었으나 새로운 시도와 과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좌측에 여좌천변 10m도로, 남쪽 4m도로에 접하고, 북쪽에 대지를 관통하여 10m 계획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대지는 남북으로 약 5m 정도의 고저차가 있으며 계획도로로 잘려진 대지의 북쪽에는 자연스럽게 테니스코트 및 야적장이 형성되었고 대지의 남쪽부분에 지점건물이 설계되었다.

대민봉사부분, 업무부분, 서비스부분의 3부분으로 형성된 이 건물은 고저차의 적절한 활용으로 기능별 접근이 각각의 필요한 높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넓은 대민봉사공간(open space, 시민휴게공간, 주차장)이 형성되었고 한전에서 추구하는 대민봉사 정신이 표현될 수 있었다.

주요공간과 부속공간의 향별배치를 중점으로 한 평면계획은 대지의 고저차의 적극적 이용과 함께 매끄럽게 해결되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기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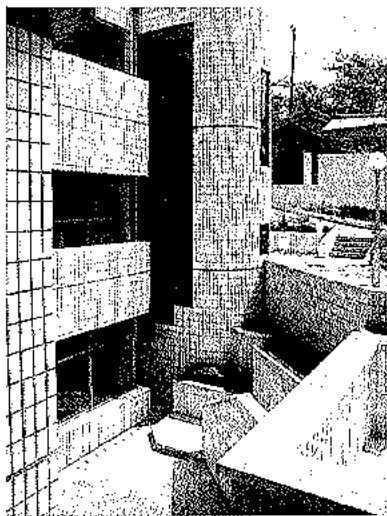
공간배치가 이루어졌다.

외관은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에너지토피아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Round 처리된 Glass Curtain Wall (Double Skin)이 주요 요소로 채택되었고 진해시의 진입에서 보이는 후면의 요소로 가벽을 만들어 고저차에 의한 왜소함을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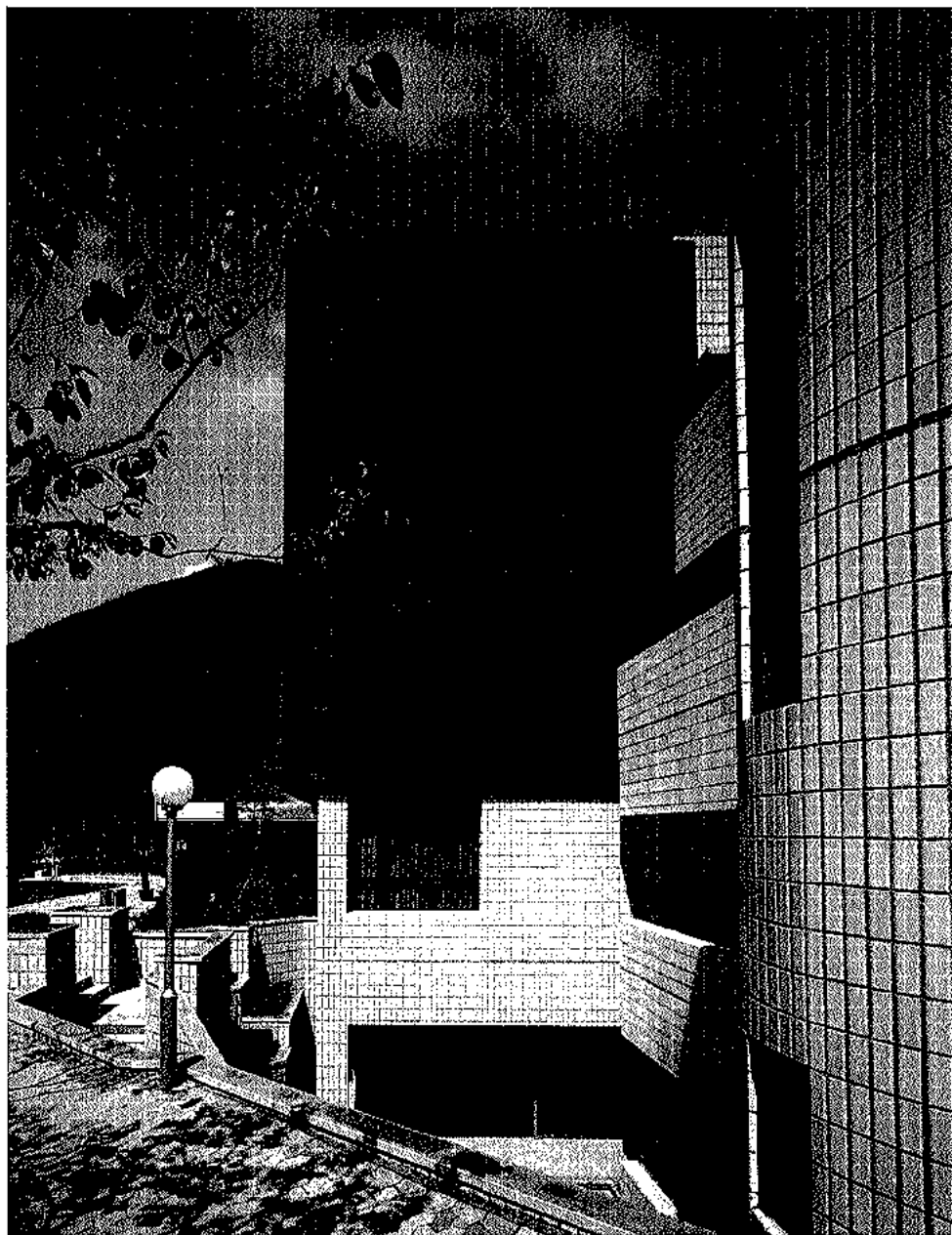
주요 Issue인 Passive Solar System의 적용은 여타지점에서 채택한 층별대류방식에서 벗어나 Double Skin 전체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태양고도에 의해 결정된 차양 설치, 외벽 두께의 확충 및 단열재 보강등으로 에너지 절약기법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에너지 절약 시범건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한전 진해지점은 지역적으로 고립성이 강한 진해에 미래지향적 건축물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부드러운 관공서 건물로 인식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❶ 남서측 전경
- ❷ 선근가든
- ❸ 남동측 외부상세
- ❹ 별관측 외벽상세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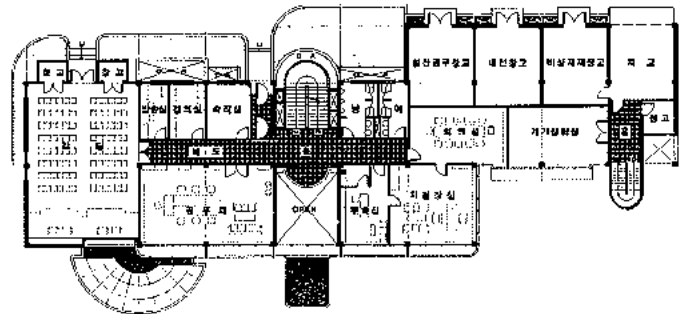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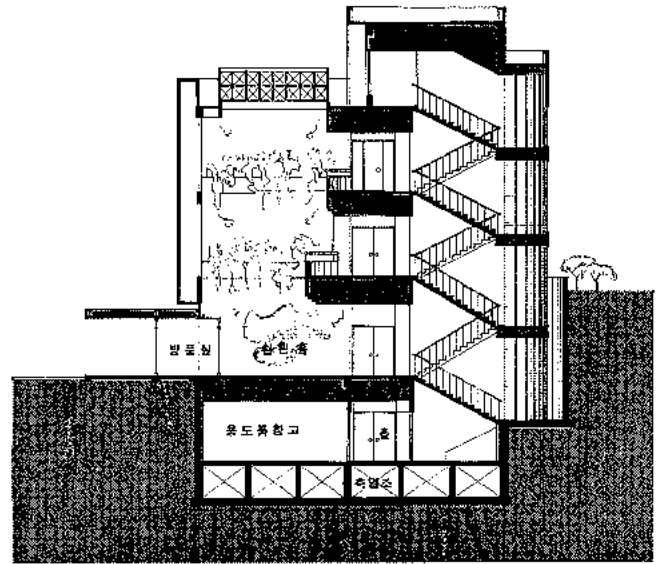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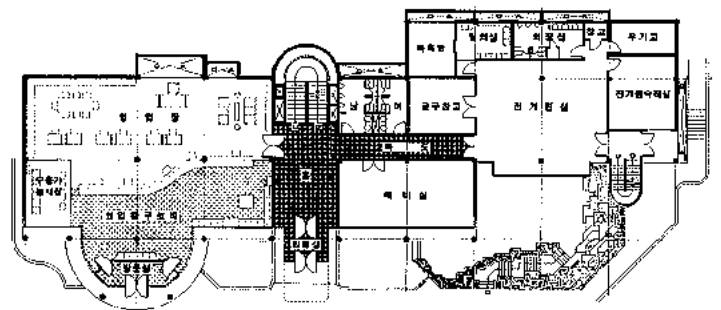
❹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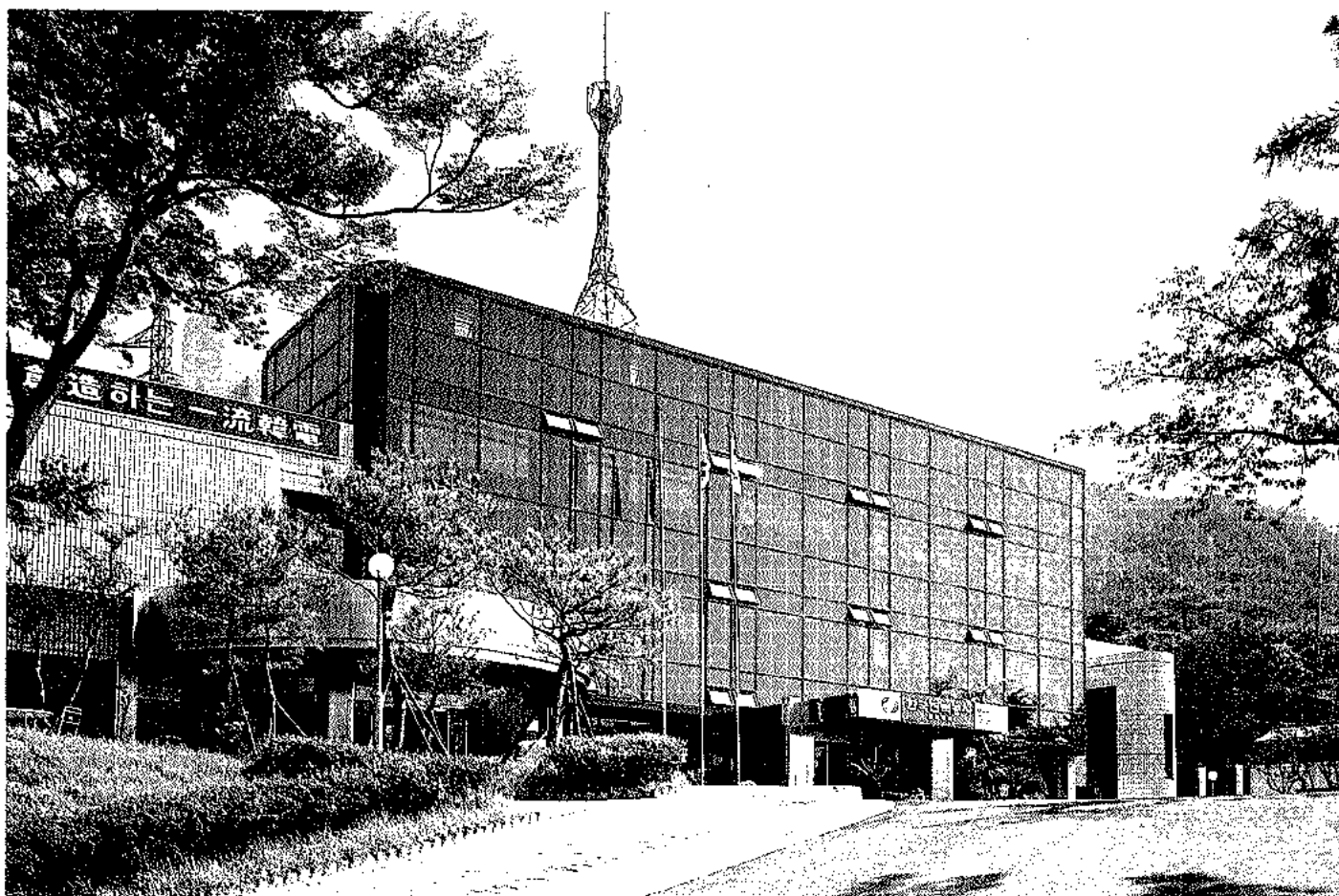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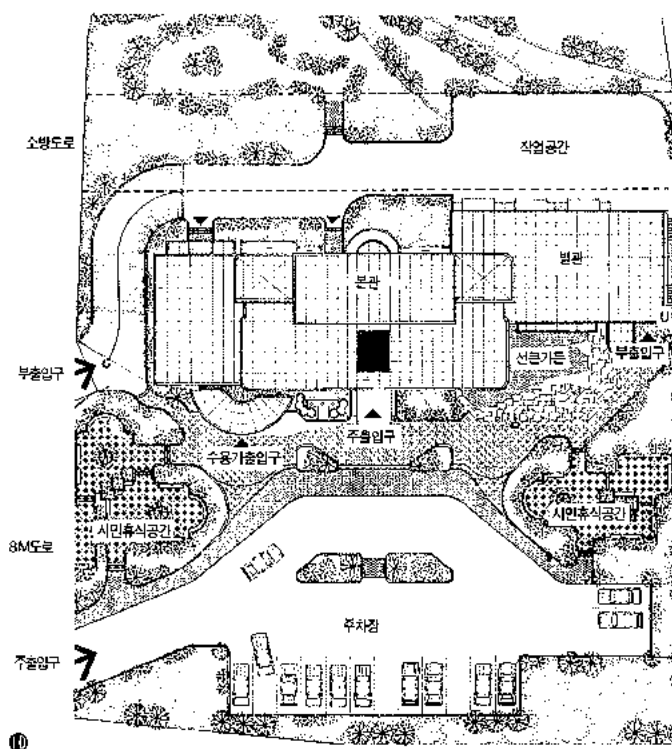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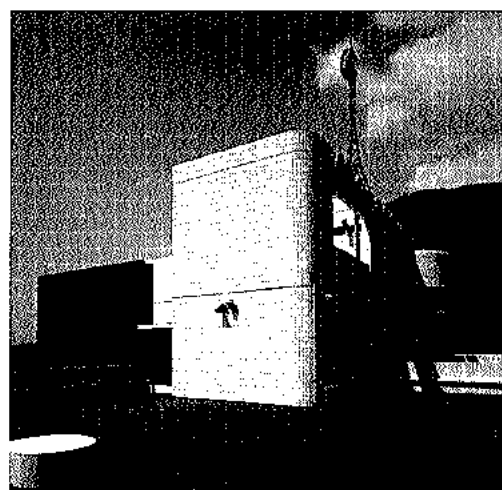
- ⑤ 주출입구 내부
- ⑥ 단면도
- ⑦ 2층 평면도
- ⑧ 1층 평면도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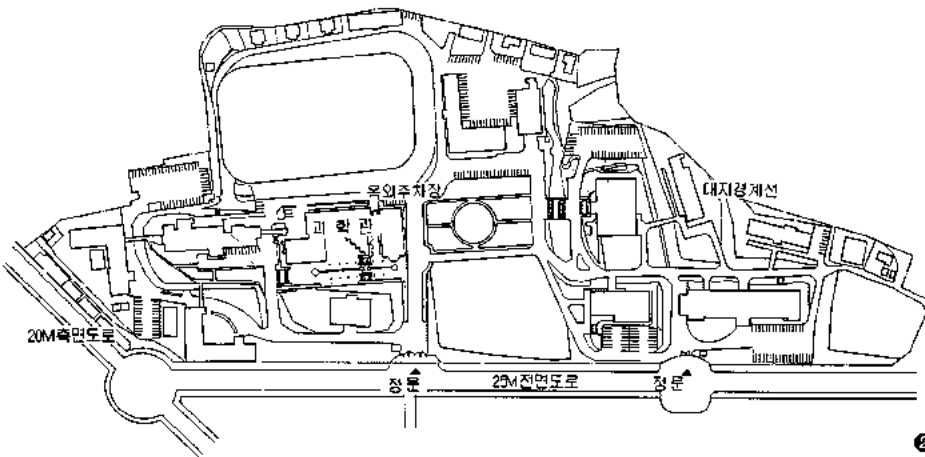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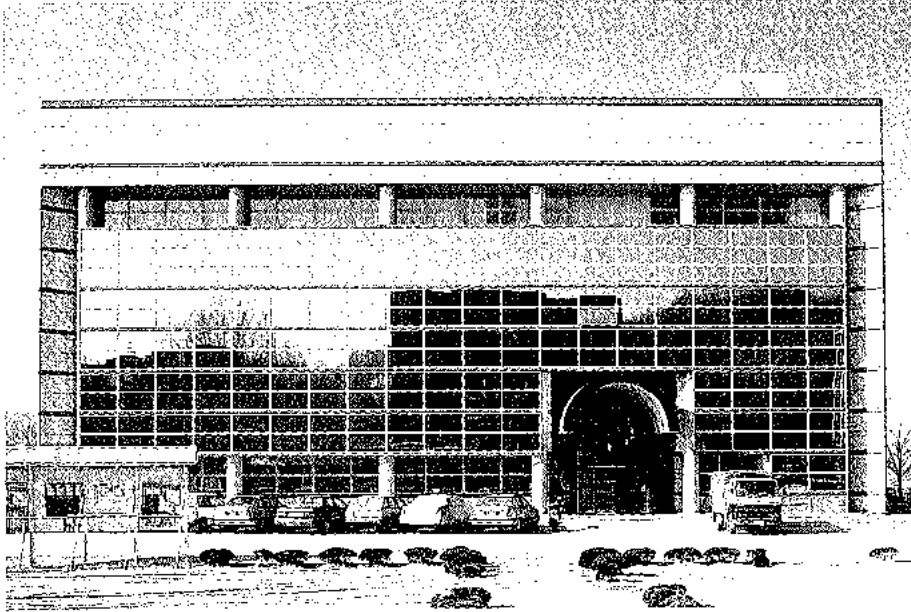


11

- 9 전경
- 10 배치도
- 11 옥상층 외부상세

송실대학교 과학관

Soongsil University Science Building



설계소요

송실대학교 캠퍼스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동측 상부에 인문사회계열, 그리고 서측하부에 자연과학계열의 교육시설군이 동·서로 큰 높이의 차이를 두며 대형(帶形)으로 서있다. 행정기능을 포함한 이 과학관은 도서관, 중앙광장과 함께 이 캠퍼스의 코어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신축될 대학교회가 중앙광장의 남측 보조운동장에 건설되면 캠퍼스의 코어는 일단 완결된 것이다.

이 과학관은 긴 대형의 캠퍼스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주 보행자통로와 교문에서 이어지는 진입통로와의 직교상에 놓여있다. 따라서 진입로의 시각적 목표물이 가져야 할 상징성과 동서 Activity Corridor상에 많은 보행자를 쉽게 수용해야 하는 두가지의 요구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약 2개층(≒8m)의 높이차를 가진 기존의 대지를 절토하여 4m의 높이차를 가진 새로운 대지를 형성하였다. 그곳에 주 보행자통로와 평행하게 건물을 구성하게 되었고, 외부흐름에 맞춰 내부공간의 주된 동선의 흐름도 각각의 레벨에 대응적으로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과학관은 주 보행통로와 이어진 중정, 이와 연계된 내부의 중앙홀이 주요 포인트가 되며, 다양한 School Activity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도 캠퍼스 전체를 지배할 만한 시각어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감을 가진 클크색 석재타일과 갈색의 알루미늄패널, 붉은 유리(일부 반사유리)를 이용하여 일정한 격자를 형성하는 표피를 만들어 보았다. 건물의 불륨을 유니크하게 짚우고 일부에 돌출된 원형테라스와 후퇴된 벽면의 강한 Spot Colour는, 자칫 Monotoneous하기 쉬운 입면에 청량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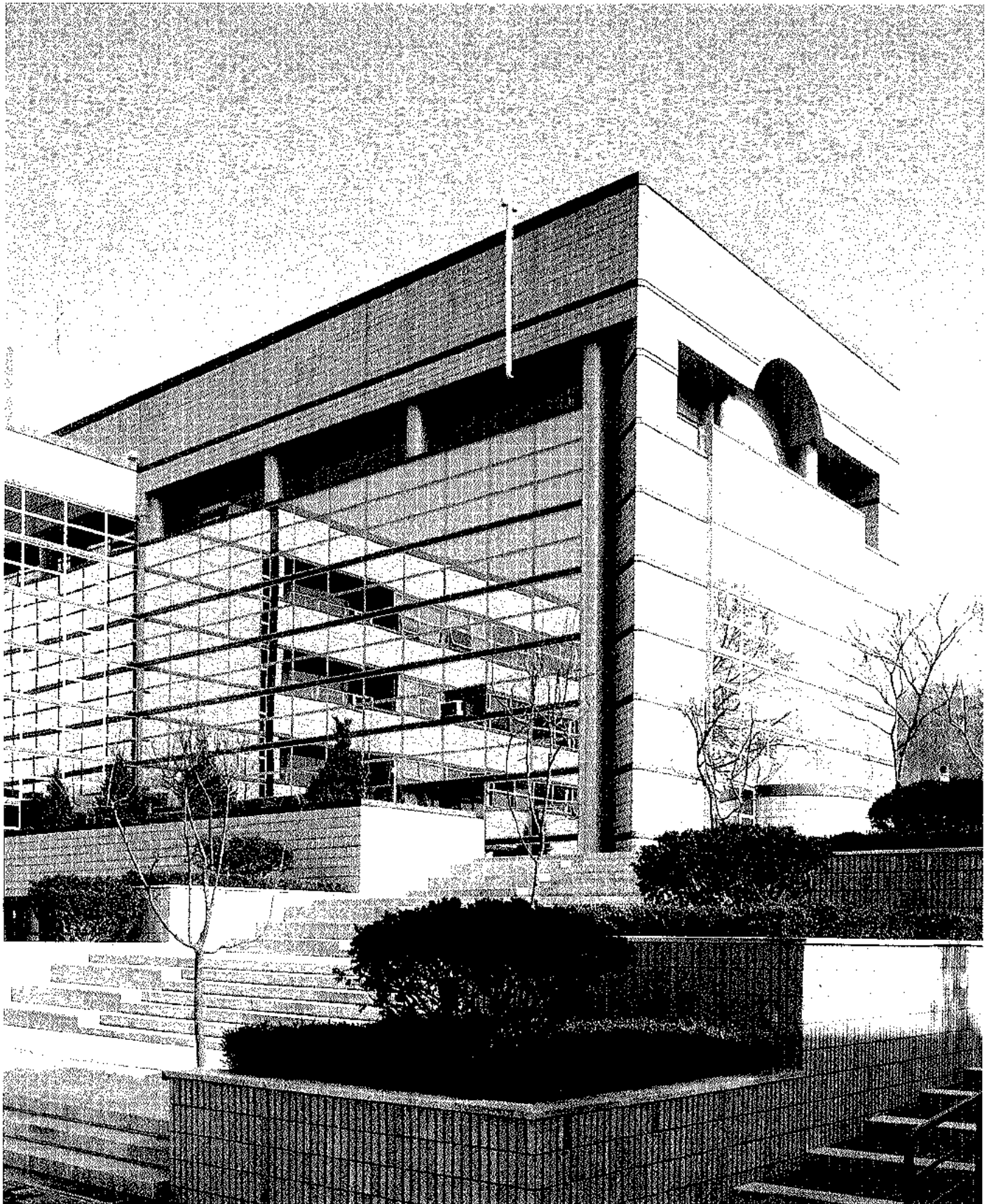
설계담당/민현식
대지위치/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대지면적/122,303㎡
건축면적/2,420㎡
연면적/9,829㎡
규모/지하1층, 지상5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4종미관지구
건폐율/13.48%
용적율/47.91%
외부마감/외벽-석기질외장타일
지붕-슬래브
창호-불소수지코팅, 알루미늄 창, 패어글라스
주차대수/275대
냉난방시설/라디에이터 중기 난방, 일부 공조식 냉난방

尹承重 卞鎬

/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Designed by Yoon, Seung-Joong
& Byun, Yong

- ① 동측 파사드
- ② 배치도
- ③ 남측에서 본 외부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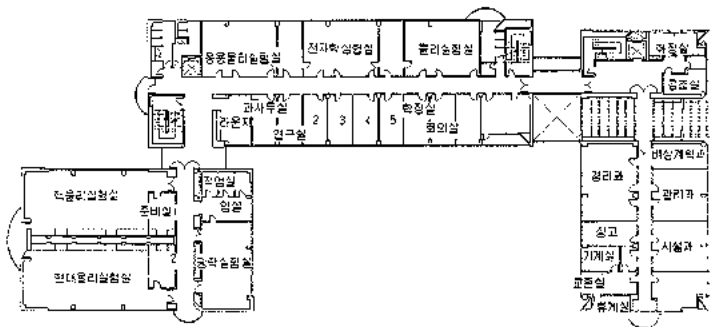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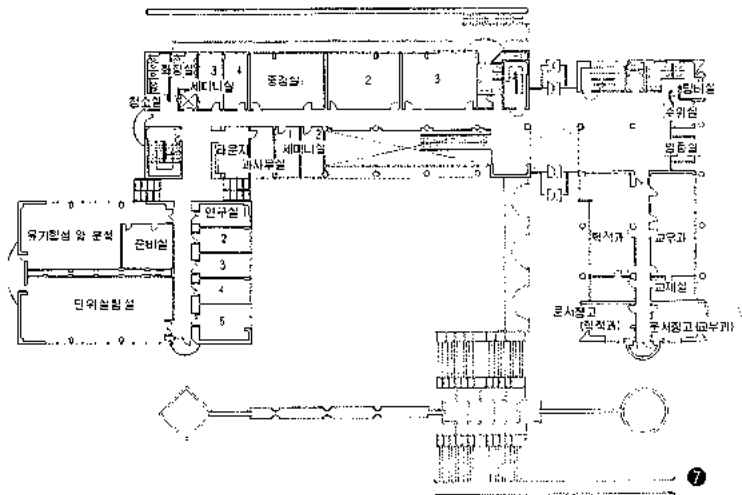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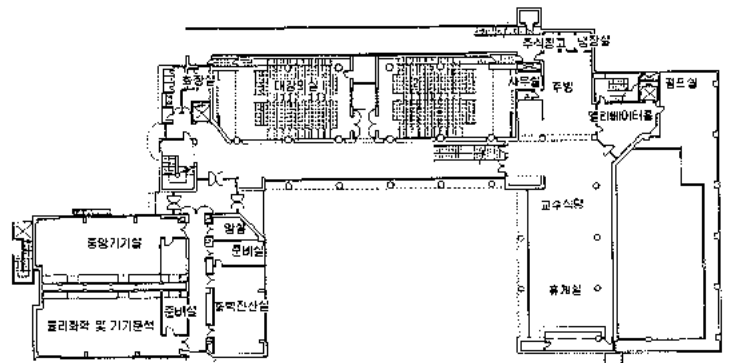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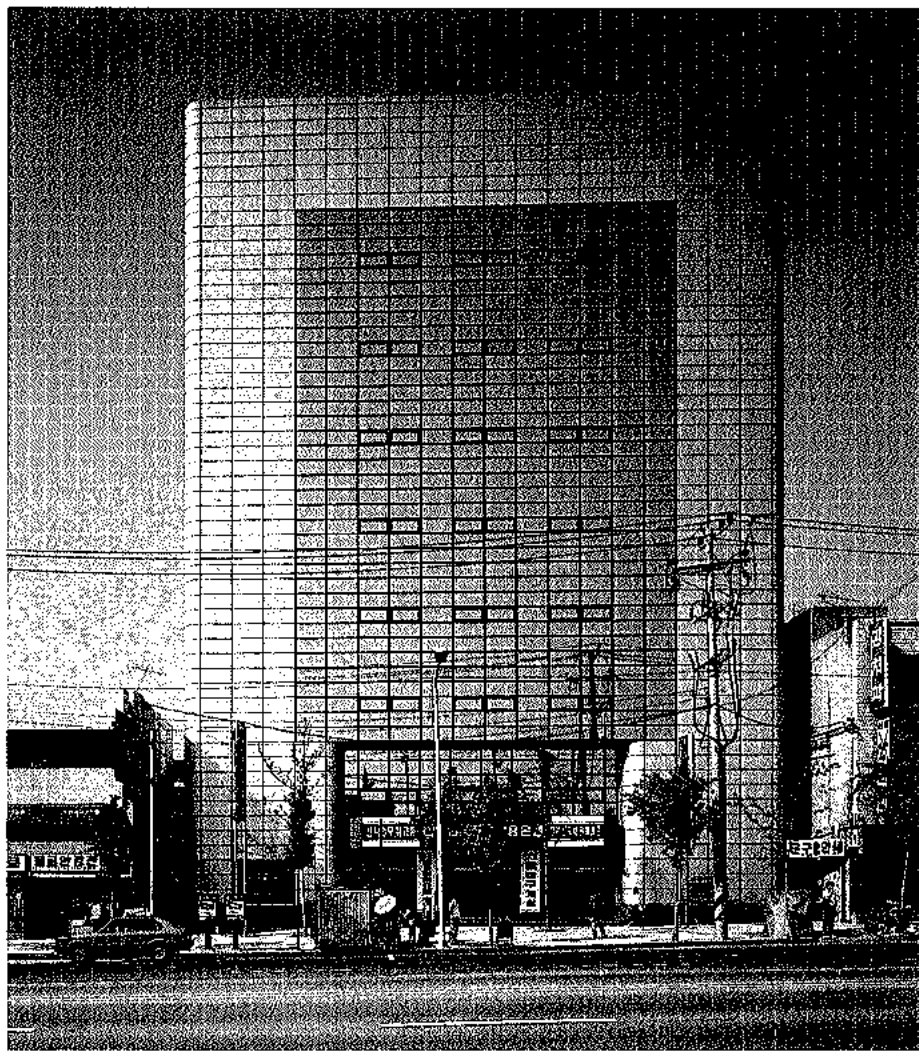


8

- 4 남측입구 내부
- 5 연구동 중앙홀
- 6 3층 평면도
- 7 2층 평면도
- 8 1층 평면도

아륭빌딩

Aryung Building



金麟 / 동해건축사사무소 가전
Designed by Kim, Lin

대지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6-20
대지면적 / 1,387㎡
건축면적 / 396㎡
연면적 / 4,752.32㎡
규모 / 지하2층, 지상9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장 / 컬러알미늄복합판, 18mm 컬러반사복층유리

- ① 전면 파사드
- ② 주출입구 상세



설계소묘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완성된 건축물은 커뮤니티 혹은 피할 수 없는 환경요소로 오랜 기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건축물은 사용자나 통행자의 시각을 통해 좋은 이미지도든 나쁜 이미지도든 감성화하기를 강요한다. 이것은 조형작품중 건축작품만이 갖는 특성, 즉 사회성이다.

자신이 계획하고 설계한 건축물이 완성된 후, 그 건축물을 경험하며 느끼는 건축가의 감회는 남다른 때가 있다. 흡족함보다는 아쉽게 느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미술작품이나 조각작품처럼, 완성되었다도 남의 손에 건너지기 전에 파기해 버릴 수 있다면 오죽 편리할까하는 무책임한 생각을 갖기도 한다.

완성된 건축작품은 대체성이나 호환성이 없으며, 사용자나 통행자에게 선택의 권한

또한 주어지지 않는다. 좁게는 근린가로부터 넓게는 도시의 구성요인으로서는 기능을 가지며, 조형적인 수준은 그 작품이 속해있는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게 된다. 조형예술 작가 중에서 유독 건축가만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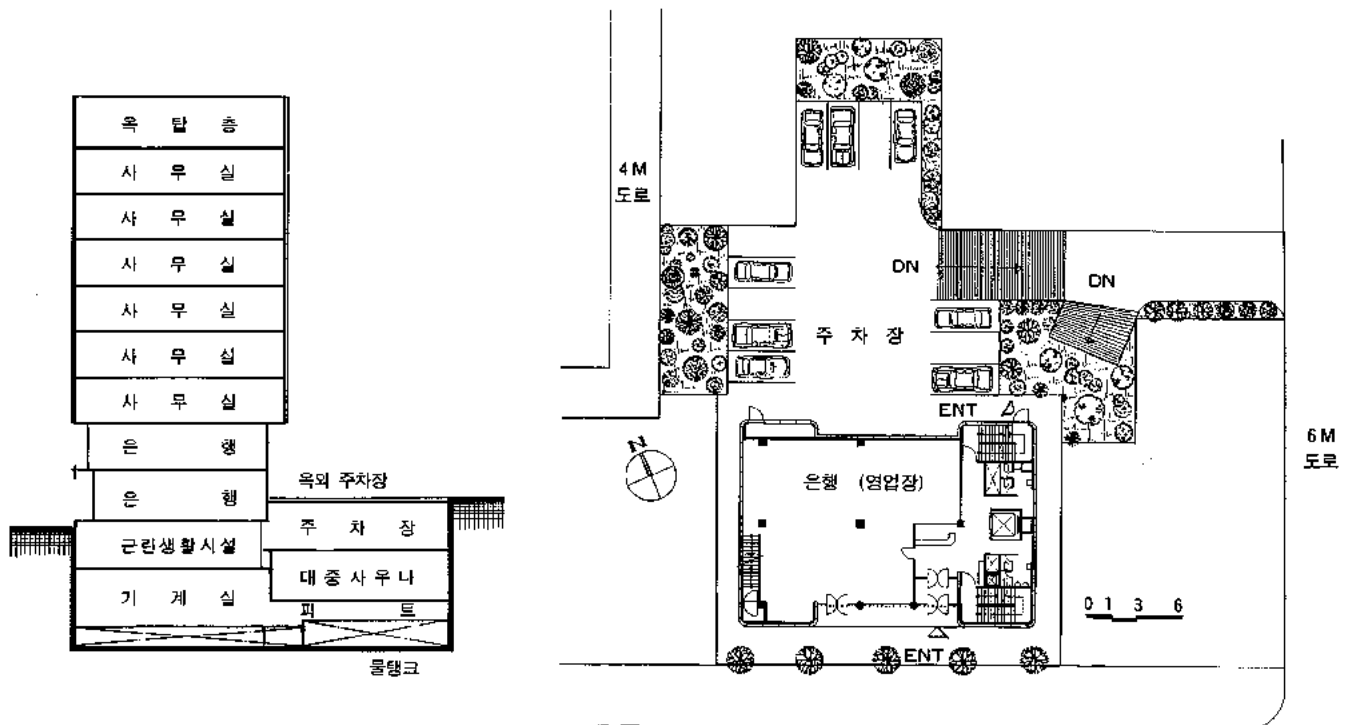
아륭빌딩의 설계의뢰가 확정된 후, 초기에 가장 번민했던 일은 전면도로가 갖는 미래 도시구성의 의미와 현실적인 사실과 상충되는 이해였다. 폭 40m의 전면도로는 도심의 광화문로와 연결되며 밖으로는 공랑로에 이어지는 관문로이다. 도로 뒤편은 북쪽으로 높은 경사를 이루며 양자바른 주택군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쪽에 바람직한 개방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가지면서도 주택가에 미칠 폐때문에 결행을 억제하였다.

두번째 과제는 조형요소의 결정이었다. 즉,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떠한 패턴으로 발전할 것이며, 그에 상응한 조소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예측과 상징성이 문제였다. 아울러 현재의 배후 주택군과 주위 건물과의 관계 정립이 전자와 상치되는 점이었다. 더욱 어려웠던 일은, 이 건물이 가져야 할 이미지의 설정이었다. 지역의 분위기를 선도하는 유니크한 인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평이한 인상이어야 하는가? 일년여의 긴 계획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만드는 가운데 스스로 건축철학의 빈곤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야심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던 초기생각에서, 시간이 갈수록 후퇴하여 안이한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곤 하는 것이 언젠가 괴로움으로 남는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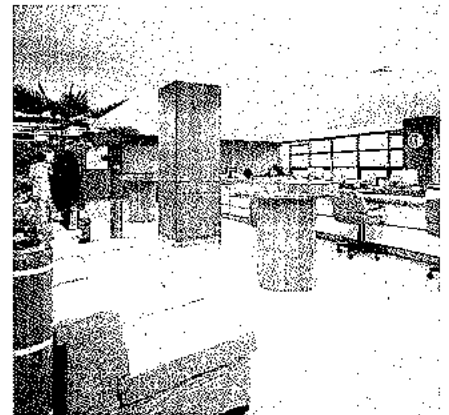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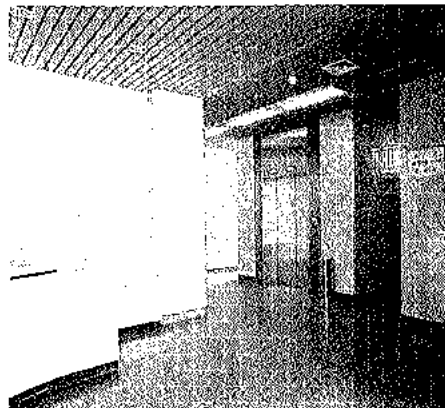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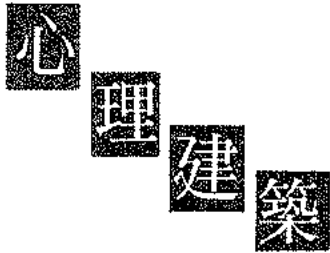


7

- ③ 외벽상세
- ④ 주단면도
- ⑤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 ⑥ 남서측에서 바라본 전경
- ⑦ 내부객장
- ⑧ 출파 엘리베이터실



8



建築物은 건축물을 設計 또는 施工을 하는 사람과 그 건축물을 所有하거나 使用하는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建築物이 좋은 건축물이나 아니냐는 우수한 人力을 얼마나 투입하였는지에 따라, 또는 사용하는 사람 혹은 제3자들의 건축물에 대한 精神的 내지 物理的 뒷받침이 얼마만큼 든든하였는가에 따라 판가를 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면 하나의 건물 혹은 건축물을 놓고 좋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즉 建築主, 또한 이것을 만드는 사람 — 設計者와 施工者가 서로 상반되는 생각을 하기가 일쑤이고 同床異夢을 할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중에서 建築主와 設計者간에 하나의 건축물을 놓고 進行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는 좀더 이랬으면 하고 늘 생각하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았으면 한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高速化되어가는 생활이라 10년이면 時代가 변화해 가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新世代化되어가고 있지만 유독히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建築分野는 깊은 늪에서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겠지만, 우선 첫째, 상대자가 建築主라는 대상들이고 또한 작업하는 것이 도구가 아닌 設計者 혹은 建築士라는 사람들이 —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있지만 —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둘째는 이러한 현대에 살고 있는 복잡한 社會의 구조로 인한 문제 즉, 일제식민지시대, 해방과 혼란기, 6.25동란, 제1~6공화국까지의 4.19, 5.16, 12.12 등의 사건, 이러한 모든 것이 복잡한 시대적 구성에서 正道 아닌 邪道에 의한 바, 쉬운말로 어느 줄잡기, 굵은 밧줄 잡기, 혹은 줄 갈아타기 등등 타잔의 시대가 계속되어 온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각기 다른 타잔교육을 — 건축 교육 또한 마찬가지였다 — 받은 탓도 있는 것 같고,

셋째로, 文化에 대한 배경 즉,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建築設計活動이란 결국 西洋文化를 받아들인 근대, 현대 건축문화로서 이러한 것들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세계를 지배하였던, 혹은 한 시대를 이룩하였던 — 종속되지 않았었고 식민지화되지 않았던 — 민족들이 이룩하여 온 문화를 잡자기 받아들이어 소화하려는 행위에서 근세의 소화불량 내지는 설사를 하는 시행착오의 부작용 탓도 있는 것 같고,

네째로는 사회에서 建築의 歷史的 背景의 인식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즉, 과거에 조상들은 유교사상에서 오는 士農工商에 대한 사회적 계급의식에서 전문직에 대한 어휘조차 “장이”라는 단어를 썼다. 예를 들어 미장이, 석수장이, 팽장이, 대장장이, 환장이 등으로 불리웠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와서까지도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기를 — 대부분의 건축주가 — 자기에 종속된 관계, 혹은 업자, 돈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 시키면 하는 사람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머리 속 한 구석에는 잠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다섯째로는 이러한 생각 — 建築主의 — 반면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建築士로서는 반대로 作品을 하는 사람, 아이디어맨, 社會내지 都市環境구축자, 造形美를 창작하는 사람 등으로 自己自身이 우위화하는 자부심 속에서 상반된 생각에 좋은 건축물이 이루어지리라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행하여지는 요즈음의 建築士의 社會的 活動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지위향상이 아닌 격하의 일로를 걷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졌고, 덕분에 과거 어느 때 보다는 건축을 하는 모든 이들은 더욱 보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난 몇년 사이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결국 건축인들에게 많은 보람을 안겨 준 것보다 “기이한 부조리”와 이에 따른 건축인들의 지위격하만 가져다 준 것 같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상설계”란 허울좋은 애드버문을 띄어놓고, 여기저기에서 마치 X개들을 훈련시키는 양, 희롱 농락하는 행위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훈련받는 분위기 속에서 헛헛 찾아대는 — 비유가 무척 아하지만 — 우리(?)들의 일감이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어린 양들과도 같은 기분에 가끔 정신없이 일하던 양어깨가 축 늘어지곤 한다.

꼭 이렇게만 생활하여야 하나 하고 반문하여 보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괴압박 민족의 근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사회조직 —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 속에서 책임자가 싫어하고 自信을 가지지 못한 建築主들의 하수인 손에 열심히 돌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요즈음에 와 생각하여 본 것으로 “心理建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보았다.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약 5천억시장이라는 건축설계用役業種에서 建築主와 建築士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에는 처음에 이야기하였듯이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건축주)의 심리부터 연구하고 파악하여 이 복잡한 함수관계의 실마리를 풀지 않고는 결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요즈음 겨우 깨닫게 된 것 같다.

우선 현상설계를 집행하는 建築主의 心理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보면,

첫째, 좋은 建築士를 자기 힘으로 찾을 수가 없다.

둘째, 建築士를 믿을 수가 없다.

셋째, 자기의 哲學이 없다.

넷째, 조직 속에서 오해 받기 싫다.

다섯째, 타인의 압력내지 청탁으로부터 피하고 싶다.

여섯째, 좀 더 색다른게 없다.

일곱째,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여덟째, 돈 안들이고 많은 案을 볼 수 있다.

아홉째,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열번째에 가서야 겨우, 좋은 案을 채택하고 싶다.

등등의 생각을 하고 있는 지들이 대부분 현상설계를 택하는 것 같다.

建築三團體에서 현상설계 경기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이런 설계경기에 참여하는 건축인들은, 나를 포함해 이러한 건축주의 사기술에 말려들어 웃도리 밟고, 바지 밟고, 배의 밟고, 나중에는 알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춤을 추고 끝에 가서는 돈도 못받고 외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러한 불만(?) 내지 불평 한번 건축주에게 제대로 못해보고 “다음에 기회있으면 또 부탁하겠습니다”하고 씩씩히 돌아서는 수가 고작인 것 같다. — 나의 경우 —

무엇이 작품이고 무엇이 창작활동인지, 허울좋은 말가루 반죽에 기생화장하듯이 하여 이께, 목에 힘만 주고 있을 때가 아니고 선전전으로 가는 국가에 — 외문이 가지만 — 우리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망둥이가 뛰니 쫓뚜기까지 쫓다고 요즈음에는 별의별 군데에서도 전화가 걸려와, 일을 주고 싶으니 설계사무소장 내일 댁까지 어니로 들어오시오 하고 전화를 끊는다.

인사말로 “알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또 한번 사기 당하는군”

다음날 가까운 휘발유판 버리며 방문하여 보면 해괴한 발상을 하여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그러면 작업을 하는 대가(설계비)를 이야기하면, 뒷사람의 마음에 돌면 그때가서 생각해 보겠다. 억지충항직으로 “네, 알겠습니다.”하고 돌아 나서다 나와 입장이 똑같은 다른 건축사무소 소장 — 대장이 아닌 — 님께서 시간차공적이 어긋나 현관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XX집에 혼자 몰래 갔다가 친구를 만난 기분으로 이상한 웃음에 인사말만 하고 헤어지는 기분이라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보이곤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는 당연한 것 같이 되어가고, 또한 그러한 속에서 발버둥쳐서, 재주를 부려 일을 — 건축물의 설계가 아닌 — 하게 되었다는 것이 당연하기라도 하는 풍토가 무언가 씁쓸하지만 느껴지곤 한다.

결국 지금까지 상대방(建築主)의 일방적인 단점만을 — 전부는 아니지만 — 나열하였지만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너무나 순수하고 일밖에 모르는 무지한 建築人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곤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社會에서 정당한 待遇와 정당한 報酬, 우수한(?) 建築物의 設計가 비좁아졌고 이에 따른 모든 지위는 우리들 자신이 찾았어야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빼앗기고 희롱당한 것이 분하기만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心理建築에 더욱 더 몰두하여 볼까 한다.

건축사 8909 25



‘발굴’과 조형성의 굴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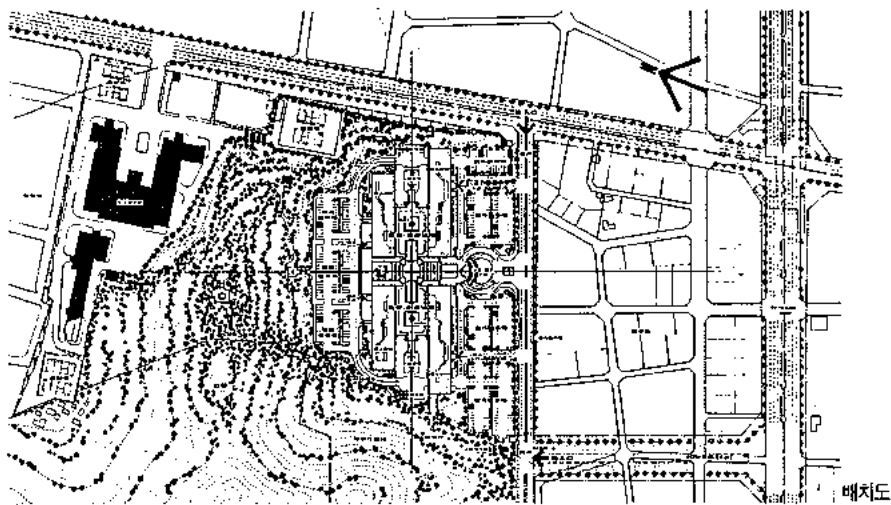
서울법원 청사를 중심으로 한 건축적 시각

An Excavation and a Refractions of Configuration

金炳潤/한양대 건축과 강사

“주임”지 편집부장

by Kim, Byung-Yoon



배지도

1. 序

현상설계에서 완공까지 5개년의 기간이 하나의 성숙된 건축물의 발현을 보게하였다. 골조가 윤곽을 드러내면서부터 이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었으며, 더욱이는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법원청사는 여러 의미에서 초기적 발상과 새로운 전형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단편적인 차원으로 느끼는 법원의 위용은 습관적으로 판료주의적 색채의 극치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고한 이미지의 옛 건물 모습이어야 했음인데, 이미 그 한계는 물리적으로나 인식면에서 새로운 수 밖에 없는 의식의 개방을 뜻하고 있으며, 이 개방성이 갖는 자유만큼이나 비례적으로 응축되려는 형태의 인식을 시대의 전거를 구축하는 요구를 수용하여야 했음이다. 당시만 해도 강남의 외곽 순환도로의 내부도로인 테헤란로 연결선에 위치한 입지조건이 형태의 인식상 자유로울 수 있었고 강렬한 도시적 이미지와 솟는 자광력을 필요로 하였음이 여러 면에서 표출되고 있다.

인식면에선 펼쳐버릴 수 없는 하나의 주된 사고가 있다. 그것은 법원 건물의 초행적 시도로서 현대건축의 용어에 맞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 함에서다. 그것은 마치 표준설계도시를 제시하는 마음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법원의 설계란 그리 잦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느낌으로 갖게 되는 위용, 전위동이 건물의 상징성을 극대화한다. '법의 정신'이란

현실적으로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질서의 근원으로 규정된다. 이 변형될 수 없는 절대성은, 오히려 판정의 균형보다 우선하여 단정하고 무거운 힘의 건축형태를 떠올리게 한다. 첫머리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인상이 짙은 시대적 산물로서, 신행도시적 입지의 이정표로서, 균형잡힌 법의 표출로서 그 당위나 의미는 다층적인 분석을 요한다고 생각된다. 도시속에 막다른, 단절된 이상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생활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단죄의 공간이 아닐까 싶다. 정당하다고 하는 경로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소유를 침해하는 순간, 이것은 법의 정신이란 유리창을 깨어버리는 것과 같다. 깨어진 유리창 너머의 세계는 현실이 아닌 제3의 세계랄 수 있다. 이러한 체계의 절대적인 기능이 존재하는 영역, 즉 벌판에서 모닥불이 비쳐주는 한계가 지워지는 규정 그 이상의 공간이란 일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유추케 한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큰 벌판을 비추이는 모닥불이 되기 위해 역산하여 더 큰 봄짓으로 솟아 오르게 된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게 풀어진다. 건축은 이와같이 큰센서스화된 모습을 구체화하면서 실존적 당위성을 찾고 있다. 건축 이전의 국가적인 모순은 소설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발자크는 얘기한다. 앙드레 말로는 '인간조건'을 통해 고독이란 문제로 살인, 난동, 아편등의 소멸적 행위를 자행하는 인간의 한 단면을 그리고 있다. 건축은 오히려 이 이완되어 가는 현실적 소외와 모순을 자연스럽게 구체화하여 가는

것이다. 건축이 규명하는 영역과 장소성은 하나의 본질로서 증거를 규정하려는 후발적 완벽성을 찾으려 한다. 따라서 논의되는 비평의 기준들이 도시 환경과, 표피적 문제, 형태문제등의 아이덴티티 규명에 심화되어 버린다.

서울법원 종합청사는 작게는 한 설계집단의 운신의 문제에서 도시와 지역, 인간의 갈등과 위안, 건축의 심층적인 문제까지 모두 지닌 문제의 구심이라 여겨진다. 그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단위 형태가 갖는 특징들은 차후에 논하더라도 일견하여 모습은 포만감 보다는 주변환경을 더욱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없지 않다. 그 일단의 현상은 수직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건물이 인지되어야 하는 배후의 사정이 없지 않았겠지만 당혹하리만치 치솟은 건물은 차라리 도심 한복판의 하이라이스라 다들께 없는 것이며 주변의 상황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인지만을 위해 높게 된 것이 소위 판료성, 권위주의 등의 소치에서 유발되지 않은 것인가하는 추정을 하게 된다. 또한 내용적으로 분화된 각각의 기능들이 형태상으로는 크게 분화되지 않은 점에서 수평적 요소인 각 법원의 Wing이 사실 환경의 대응이나 기능성의 확립에만 국한되었을 뿐 다면성이 없는 기능의 분화가 낳은 형태의 조합 이하고 이상도 아닌 체적성에서 비롯된 표피적 체감만이 우선 느껴진다.

2 인지성과 암시성의 문제

법원청사를 찾는 이에게 우선 느껴지는 건물의 기능인지차원에서 4개의 분화된 기능중에 크기가 다른 점외에는 상이점이 없어 기능성의 끝달음이 미약하게 느껴진다. 우선 요구된 4개의 기능이란 가정법원, 형사법원, 민사법원, 고등법원 등의 법정기능이며, 이외는 사무실로서의 기능이 서로 크게 분화되어 다이어그램상의 매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4개의 법정기능을 지닌 4체계의 발을 지닌 사무기능공간의 몸통이 2개의 타워로 이분되어 강하게 상승된 것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 건축계의 영원한 신화로 존재할 김수근 건축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가 채 완성시키지 못한 점, 이전에 그의 건축은 이미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그가 흔들려 깨운 모든 이론들, 즉 모태공간, Negativism, 궁극공간등의 배경들이 새로운 차원의 제3의 세계성과 결집을 시도하려 하지 않았나 싶다. 하이테크도 그 주요한 매체로서 등장하여 변화되어 가는 시대에 그의 채 완성되지 못한 Negativism을 어떻게 숙성시키는가 하는 큰 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공간그림'의 형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건축의 궁극적 목표는 이 모든 행위의 연결고리를 자신의 어휘로 삼아 한국건축의 토양을 좀더 비옥하게 하려 했다고 본다. 법원청사의 완성은 그의 삶과 죽음이 얽힌 시기에 이루어졌다. 죽음을 예견했을 경우 당시에도 그는 하와이 로아대학의 현상설계등에 열의를 보였고 재차 안을 뒤집어 바꾸는 열정도 빠지지 않았다. 그의 건축의 기억은 대단한 인지성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불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암시적이며 묵시적인 의미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 그의 시기를 상당히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시기였고, 건축적으로 보면 더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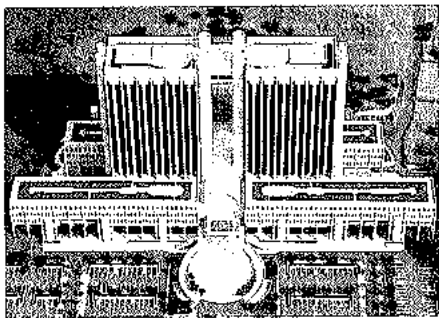
당시 일본의 경우 거목인 당께 겐조를 위시해서 아주 뚜렷한 세계성 건축에 연결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고 여기서 돌아온 그는 그 모든 기억들이 구체화되려는 응집력을 가진 채였을 것이다. 많은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어휘를 창출해냈고 채 완성되지 못한 이론들의 확산으로, 그러한 실험성이 방법론으로 전개되면서 새로운 보편성의

형태들을 한국적 가치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가 유발시킨 사고의 원천은 무엇이던 한국적인 사고의 개념이며 생태학적인 측면과 유기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직유의 체계보다는 은유의 체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데아는 상호 관입하는 형태로 하나의 시어(視語)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유발하는 규범과 더불어 명료한 형태로 치환해내는 것이다. 즉 Negativism은 Negativism으로서 형태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전의 원초적 사고일 뿐이다. 그의 모태공간 역시 형태학을 유발시키는 차원에서가 아닌 하나의 동기일 뿐이다. 이사고 체계는 엄격한 규범들과 상호 접합대였을 때 새로운 차원의 힘을 발산하는 것이다.

법원 청사의 초기안 스케치에는 이미 형태를 결정짓는 많은 그의 시어들이 산재하게 들어 있다. 나머지는 조율이 필요할 뿐 거의 결정적이다. 필연성을 지닌 그의 다이어그램적인 형성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 오게 된 것이다. 그의 깊은 관념성이 실제로는 아주 형식상의 논의를 주조로 한 실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서구적 발상으로 보아야 그의 이 다이어그램적인 형태학은 가장 낙후된 사고에서 유발된 것으로 마치 그의 문예극장이나 미술관의 체계적인 브루탈리즘의 초탈되지 못한 형태로 중·저급의 비평적 논의에 대상이나, 그의 사상만큼은 한국 현대건축의 묘종관 역할을 담당했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사실이다. 여타의 그의 작품이 형태학적 측면에서 하나의 조소적 조형성에 연속적인 세기를 가다듬는 동안 다의성보다 오히려 견고한 조형성이 강하게 두드러지는데 법원청사 역시 그와 같은 조형적 의미의 견고한 매스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의 건축에 있어 또한 강렬한 의미를 회화적 암시와 장소적 리얼리티에 앞선 선례의 사실들의 집약된 암시성이라 할 수 있다.

3. 의도적, 비의도적 형태성

장소성에서 비롯한 사고로서 장소 자체에서 환기된 형태감은 오히려 판상구조의 부정형 구조가 프리즘적인 측면과 다소 불명확한 공간론의 기법으로 색출되어지나, 법원청사의 경우는 거의 비의도성 기능의 분화와 집적이



①

① 모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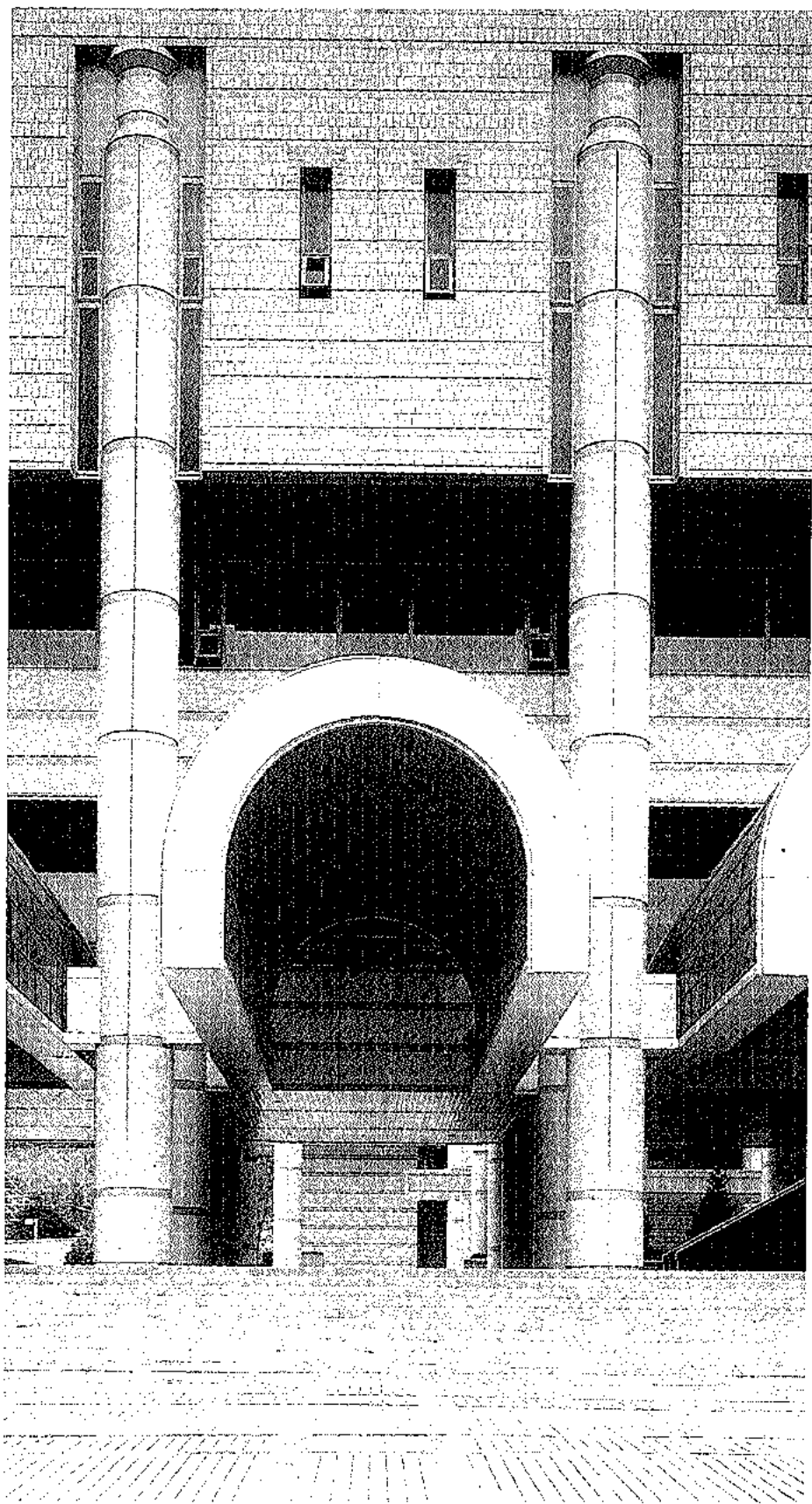
② 부출입구 캐노피와 벽면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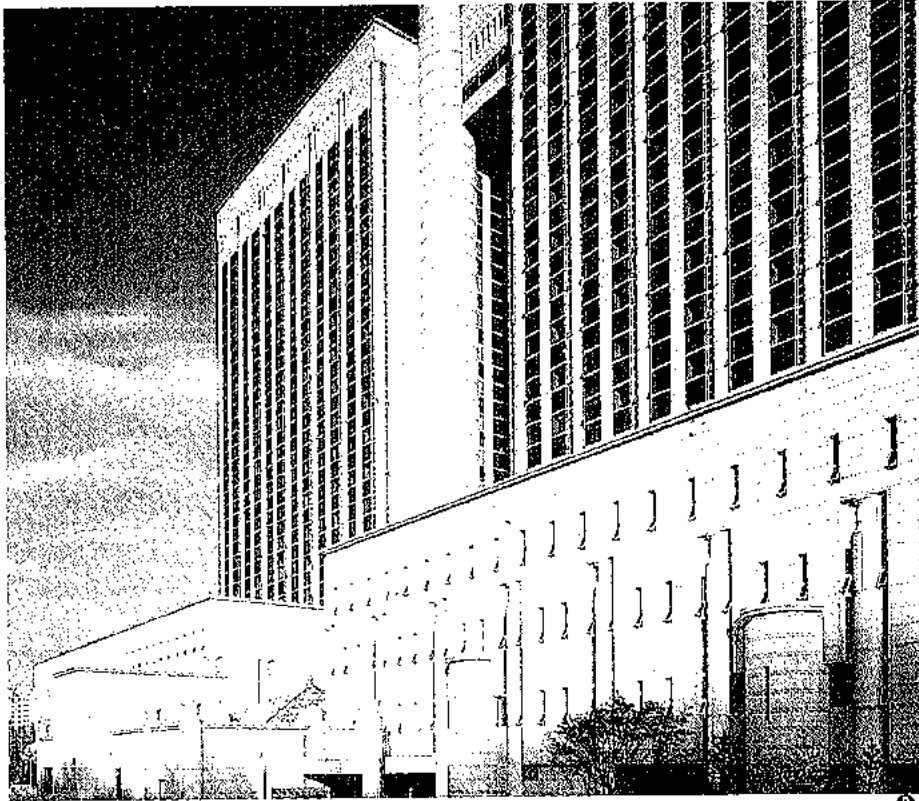
여기서 잠시 우리 건축계의 영원한 신화로 존재할 김수근 건축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가 채 완성시키지 못한 점, 이전에 그의 건축은 이미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그가 흔들려 깨운 모든 이론들, 즉 모태공간, Negativism, 궁극공간등의 배경들이 새로운 차원의 제3의 세계성과 결집을 시도하려 하지 않았나 싶다.

도출한 메스의 집합이다. 지금 우리는 많은 관공서 건축의 현상에서 자주 건축가의 비의도적인 형식 채용을 목격하게 하는데 이러한 극심한 태도는 안내서에 충실히 따른 계획으로 단속되고 마는 것이 적어도 문제로 지적되어진다.

법원청사의 비의도성은 이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형태의 명료함과 더불어 주 기능의 세심한, 그러면서도 극히 단순한 조직적 해결로 각기 기능적 상징성을 실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비의도성이라면 대형건물의 성격상 볼륨을 증시하는 기초적 계획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다만 애호하는 형식적 언어와 분열하여 집적되는 유기성은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지켜진다. 즉 이전의 마산 양덕성당이나 경동교회, 그리고 예술의 전당 현상안, 동아일보등을 통해서 보면 형태적 視語의 지키려하는 의도가 분명 최초의 스케치에서 결과로까지 평형을 이루고 있음에서 이다. 배치상의 문제에 있어서 테헤란로의 동서축이 그대로 적용되어 저층 기반부는 이를 장축으로 받아 들이고 남북으로는 강렬한 파열음이 나는 분절을 시킴으로서 사방향의 축개념을 뚜렷히 한다. 축의 성격은 외례이 신화적인 것이어서 우리에게 강렬한 기초적 배치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대응개념이기도 하고 대립적 개념이기도 하다. 강남은 강북에 대해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점으로도 남이며 강북은 마찬가지로 북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주안점은 축이 오리엔테이션의 우주성에 핵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양적 사고의 기본이라고 여겨진다. 샌프란시스코와 그리드식 도시계획과 구름을 살린 조합형 도시계획 형태인 강남은 한남대로의 남북간 주축과 테헤란로동의 동·서축이 가장 명료한 축선을 동·서·남·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법원청사는 이와같은 커다란 도시적 축에 따르고 있다. 그것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정신적 주체를 정선하는 작업이며 의도적인 수공과 기능에 앞서 도시적 입장과 통념을 실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의미와 형태, 장소와 입지등의 상관관계를 함축하는 규범을 따른 것이다. 김수근은 많은 스케치를 남겼는데 특히 화선지 위의 먹이 번지면서 생겨나는 선의 자연성을 그늘 즐겨 했던 것 같다. 선의 상첩으로 얻어진 형태는 뚜렷하지 않은





③ 배면의 저층부와 고층부 벽면상세
④ 주출입구 부분에서 본 외벽 상세

대형의 통일적이며 단편적인 이 건축물의 중심으로 질서를 확립키 위해 남은 일이란 주변의 크고 작은 환경의 주체들이 지녀야 할 이념이 변화될 장소의무한한 변화를 인식하고 광범위한 집합체로서 그 지역이 갖는 복합적이며 특수한, 고립되지 않는 세계를 표명하여 소도시로서 기억되는 특수한 성격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기능보다는 환경을 수렴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선상에서 그러나 분명한 형태감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형태들은 독립적이며 기억을 환기시키는 유기적 실체로서 극화된 모습들이고, 자립형(Sacred form)들이다. 어찌보면 법원청사 역시 이 범주에 속하며 특히 양시로 본 스케치는 형태의 자립적인 개별성을 성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의도된 일관성은 내용적인 기 안내서의 비의도성을 수용하는 총합체로 구축된다.

4. 정식(定式)에 따른 규칙성

법원청사라는 이미지에 따른 균형이나 정형, 균제등의 규범에 관하여 이미 대략 설명이 되어진 것으로 안다. 법원이라는 명칭의 해석에서 유추된 형태의 대귀는 하나의 균제로 정리되어 혼란림 없는 완벽한 규칙성에 따른 정형에 이른다. 신고전주의의 알레고리가 작용된 입면의 주된 개념은, 열주의 규칙적인 배열, 필로티, AHU원형 Tower, 저층부와 같은 원형기둥의 돌출, 저층부를 분절하는 주출입구의 Vault. 이러한 것들이 사실 모든 장식적인 처리로 이루어진 점은 형태적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 저층의 기단 역할을 하는 장식의 벽면은 오히려 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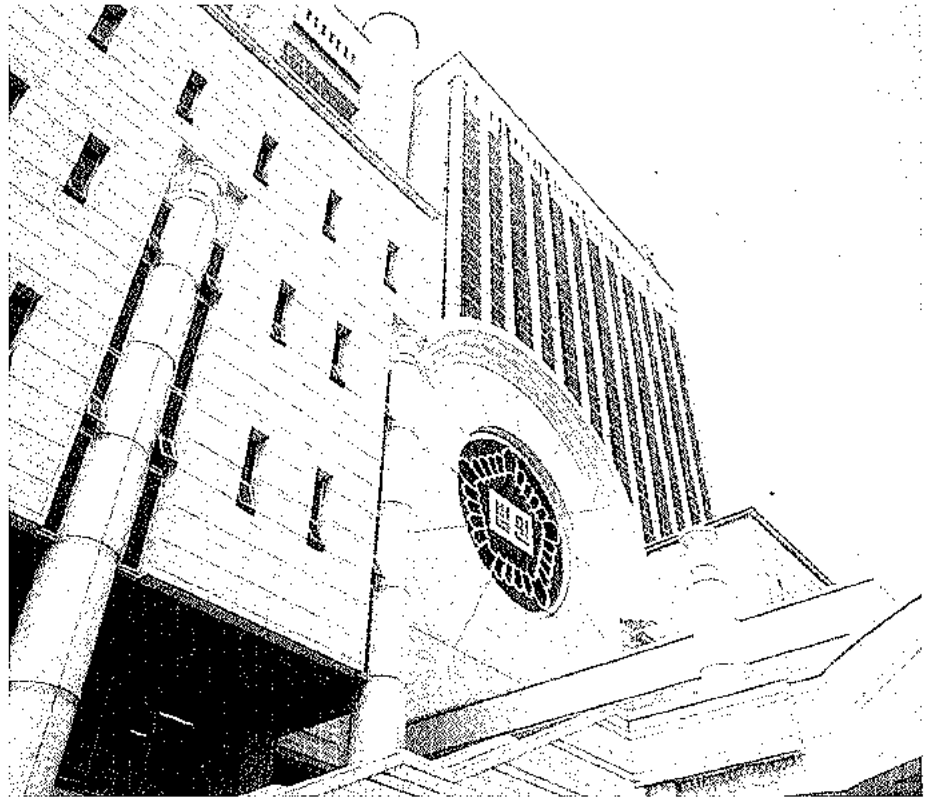
나뉘어 지는 것보다, 그리고 주두의 극심한 장식이 갖는 우화적인 성격과 접속되는 것보다 단순한 Wall의 이미지가 더욱 강한 본래의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는 알도로시의 갈라라테제 아파트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 열주를, 그것도 각형 열주를 알고 있다. 베니스에 근접한 보르고리코 시청사에서도 로시는 고전적인 수법의 열주를 쓰고 있다. 그러나 장식이라고는 그 자체가 장식 일 수도 있지만 요소의 장식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오히려 장식이 들어있다면 그 의미는 반감 이하로 떨어져 비릴 것이다. 신고전주의 역사에서도 구조적 의미나 낭만적 의미중 어느 것으로도 설명이 개재될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하나의 장식성에 있으며 디테일을 만드는 부채들로 창과 기둥, 벽등을 혼합하였고 더하여 등근 계단살을 돌출시켜 표면처리에 있어 하나의 규범을 만든 것이다. 일종의 크라프트맨십이 작용한 표현처리라는 디테일의 조합으로는 일단 잘 조율이 되어진 형태로 보이나 이러한 장식성이 의도적인 권위나 품위등을 표출하고자한 표피적 의도로 상징적 의미의 조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기념비적인 건물이자 상용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건물의 표피적 태도는 가히 절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식성으로 공공건물이 지니는 위화감을 해소하고 친근감있거나 하나의 즐거움을 줄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디자인의 목표일 것이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적 특성은 양식성, 일련의 유형성, 동서양 성격의 혼성, 채집성 등 다양한 다중의 특성을 지닌 여타의 대도시의 성격과 같다. 따라서 정합 보다는 부정합의 성격을 많이 띄고 있다. 알핏 법원청사의 완벽한 절충이 균제는 정합의 형태이나 상당한 요소의 하나의 규범속에서 절충되어져 있다. 그러한 요소들은 수평과 수직을 강조하는 조형성, 수직적요소를 심화로 더욱 강렬한 위용성을 나타내려는 표피적 태도, 더 높이 치솟아 오르기 위한 유연한 형태의 원형 샤프트, 아트리움을 연출하는 출입구의 보울드, 관류하는 필로티, 고전적 규범인 열주의 등분포, Wagner적인 건축기술의 수용, 하이테크등에 대한 의식, 도시적 차원의 축의 개념성 채용, 신건축소재에 대한 기술적 도입등 많은

이유들을 접합하는데 커다란 기교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많은 요소들이 실상은 상당히 규칙성을 지니게 됨으로서 일시에 판독이 가능하고 유니트의 반복됨이 수평, 수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정한 비례에 따른 군체가 엄정하게 갖추어 진 상태이다. 저층 기반부의 5층 규모는 실제 훨씬 낮게 느껴진다. 오히려 수직성을 높이는 형태로 형식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의 형식은 하나의 기조가 되는 단조인 저층으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여 급속도로 빠른 일단계의 상승을 하고 다시 과열된 중앙부로 모아지다가 결국 원형 샤프트의 매끄러움에 집점이 된다.

각기 요소는 요소대로 강렬히 표현적이나 전체적인 형식의 규칙성에 따르기 때문에 결코 현란하지 않은 합체로서의 결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들을 뛰어넘는 다른 사고가 다른 사고의 유발됨이 필요로 하는데 이 형식상의 조합이나 규칙성, 정형의 논리성등이 뛰어넘지 못한 점은 하나의 도시적 오브제로서만 느껴지는 형태감과 인공 환경의 생성 과정에 있어서 총체되어야 할 의미 생산의 전반적인 기업이 어느 집단적인 언어 구축에만 국한 된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건축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서 몇가지의 점증을 필요로 한다. 그 첫째는 작품의 구성성에서 기능의 분화에 국한된 단순 체계의 구축인데, 이는 세분되거나 대중문화의 수용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배제한 의사불통의 집단성이 심화된 점이다. 단적으로 말해 집단적 또는 집합적인 개념의 통사론적 측면만이 고려된 면모를 지적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도시적 콘텍스트를 통해서 인입되는 기억의 수정작업에 관한 언급의 결여다. 초기 인식된 인지차원의 중대함 때문에 수직타위는 모든 부차적 상황을 모두 잠재워버렸고 무차별 상승을 고려한 것이다. 무언하여 테헤란로 부근의 많은 주변 건물들이 들어차게 되었을 경우를 예상하여 강한 수직성을 도모한 것은 이해적이나 포트만(Portman)적 사고 일 수도 있는 상업주의적 디자인 과업의 방법적 기법이 채용된 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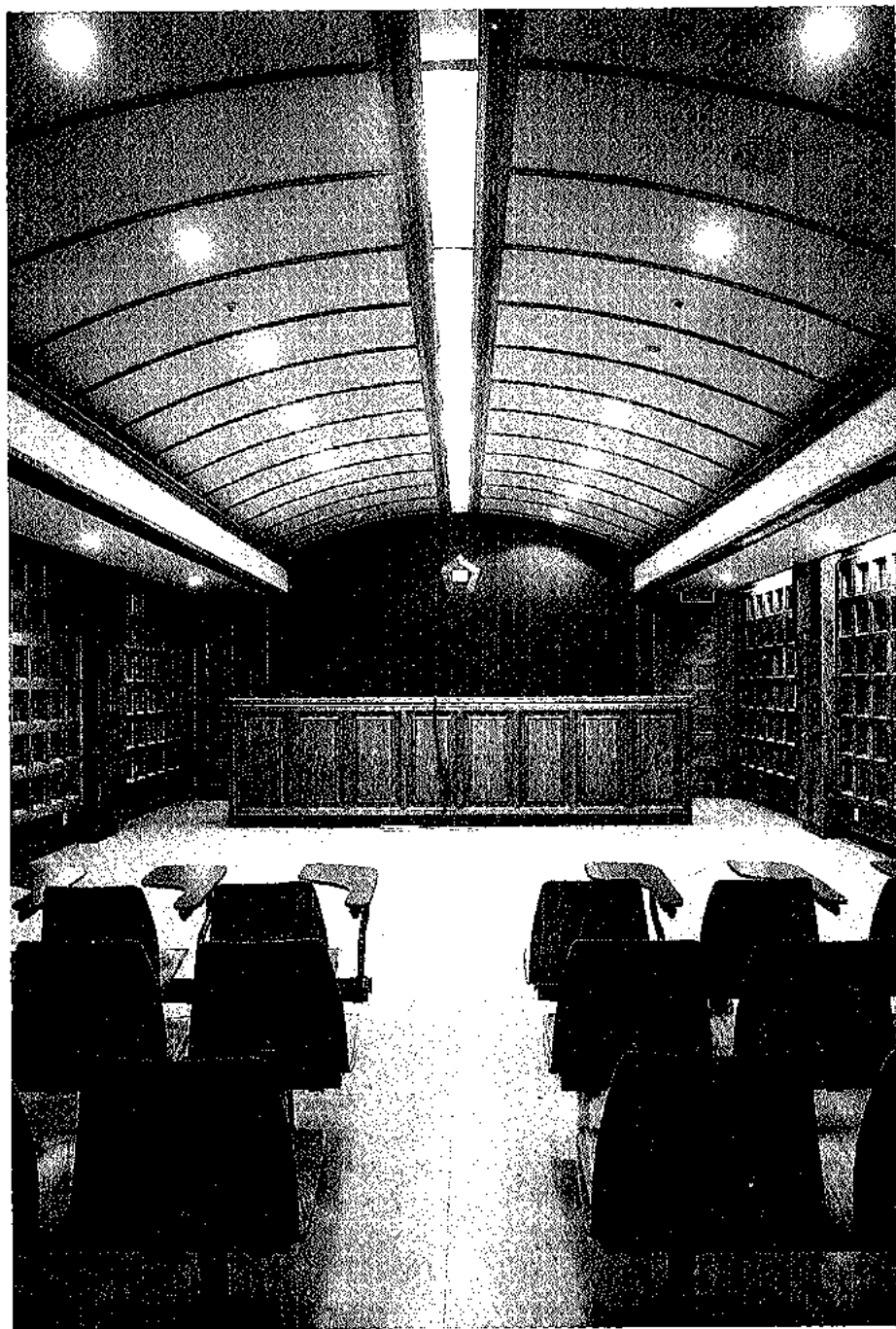
이점에서는 오히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다소 혼돈스런 과정을 겪긴 했지만 이 형태를 근대적 사고의 기억과 포스트 모던적인 논리를 부정하면서도



실상은 표층구조의 형태적 알레고리를 규칙성에 입각하여 채용한 점이다. 표층구조를 통한 기호성의 채용, 이것으로 대중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대중이 정의하는 고급에 대한 향수등을 일깨우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스트적인 환희의 일부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이를 수긍하거나 부인하지 못하는 중성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철저한 Wagnerian식의 사고에 입각했다면 고전적 규범과는 철저히 분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청사에 수용된 Icon은 법의 성전을 미화하는데 수사학적 기호를 잠입시킨 것이다. 따라서 풍부하고 권위적이며 둔탁하지 않은 가벼움 등으로 집약되는 기호들이 우리의 감수성을 이완시킨다. 러시아의 구성주의자들은 예술을 공장으로, 거리로 고집어 뒀고 고급에 대한 향수보다는 기술과 야망기조에 대한 새로고 영웅적인 민주사회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실패가 부른 결과는 대중문화의 채용이었고 신흥종조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풍자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후 서구는 소비사회적인 면모로 동양은 관료주의의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해 가면서 근대주의에 등을 돌리게 된다. 여기서 도시적 콘텍스트는 사실 원천적인

건축가의 중심상을 되돌려 놓은 만큼 또는 관행의 국수적 태도를 바꾸기에는 미약하였다고 본다.

세번째는 검증코드는 은유에 대한 문제이다. 건축은 여타의 예술이나 문학처럼 실랄한 풍자를 해본적도 없다. 따라서 오늘날 겪는 건축가의 예술집단에서의 소외는 분명 이와같은 사회참여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도 누구하나 그 작가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유치한 풍자따위는 욕을 먹을 뿐이다. 한때는 치솟는 건물의 높이에 따라 건축가의 능력에 순위가 매겨지기도 했다. 작금에서도 이것은 남아 있으리라 본다. 한국현대건축은 수년동안 서구의 백년에 해당하는 변화를 압축 수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완전한 경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視聽를 통한 채용에 의한 것이지만 대단한 건축의 매머드 마켓트를 구축하였다고 본다. 여기서 수용된 서구건축의 풍자성은 대단치 않은 것이나 관심을 유발하고 문화센터 등의 건물에 적절히 유용되고 있다. 사실 앞장에서 암시성 논의를 하면서 다루지 못한 법원청사의 은유의 문제는 아주 심불탁한 중앙부의



- ⑤ 법정 내부전경
- ⑥ 횡단면도
- ⑦ 4층 평면도
- ⑧ 2층 평면도
- ⑨ 중층 평면도

갈라짐과 샤프트, 아트리움의 긴 보울트등의 형태적 요소들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실 이 은유성은 건축의 본질을 제3의 객체와 접합시키면서 다양한 측면의 양성으로 인식되는데 근대주의자들은 이 은유적 차원을 거부하였다. 우선 은유에는 기능성이 없으며 개별적이고, 건축이 아닌 다른 예술 차원 즉 문학이나 문자등으로 모호한 성격을 지닐 까닭이었다. 건축은 유기적인 성향을 지닐 때 더욱 암시적인 은유를 내포한다. 아니 내포한다기보다는 시점과 이를 대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해야 옳을 일이다.

형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이 메타포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중적인 차원에서 은유는 건물의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원청사의 중앙부의 상징적인 4개의 원형기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매스의 분절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는 연결 브릿지등 마치 그것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은 등등의 은유성을 내포하면서 특이한 제3의 명칭을 유발케 되는 단위적 의미를 갖게 된다. 현대 건축 논의에 있어서 은유의 문제는 부정적 시각도 긍정적 시각도 갖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근대주의자에게 있어 이러한 픽션은 무용의 것이었으나 건축을 기호의 체계로 인식하는 논쟁적인 측면에서는 이 픽션화에 상당한 다의성을 부여, 부추기고 있는 입장이다. 법원의 경우는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은 면모를 지닌다. 내외쪽으로 모두 Balance를 유지하려는 의도대로, 형태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정형을 최우선으로 한 점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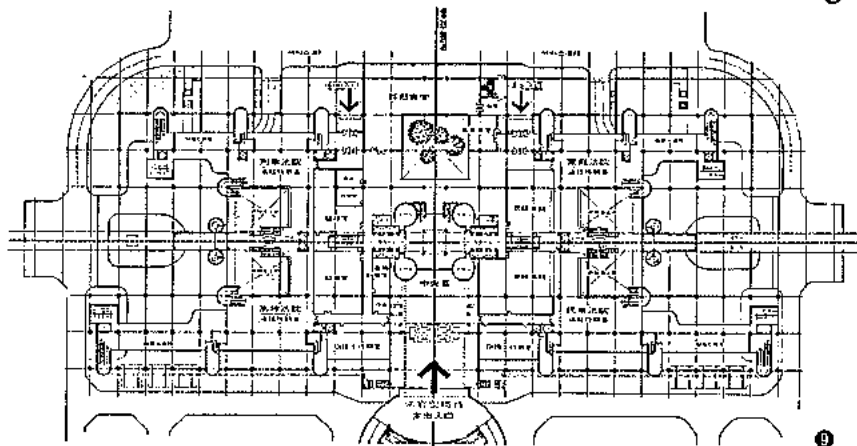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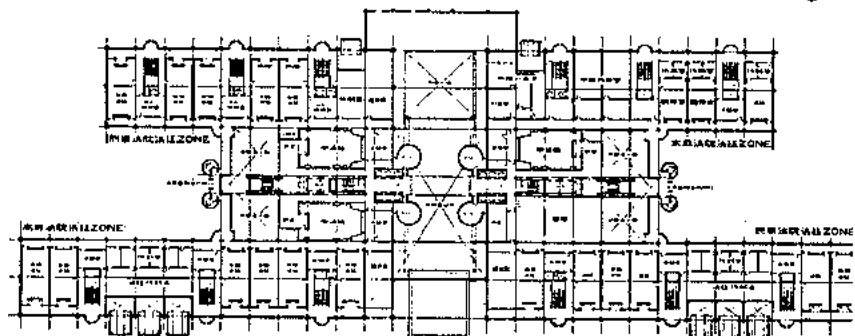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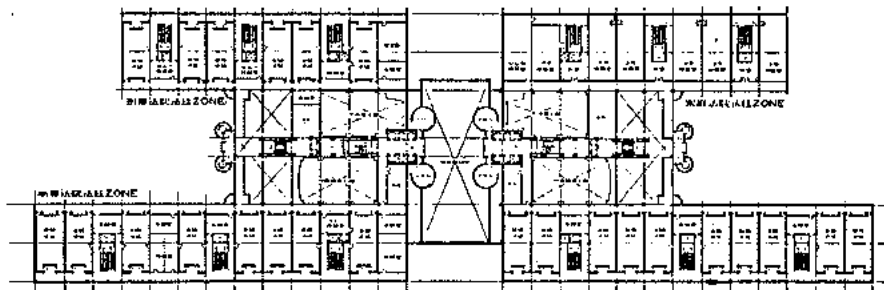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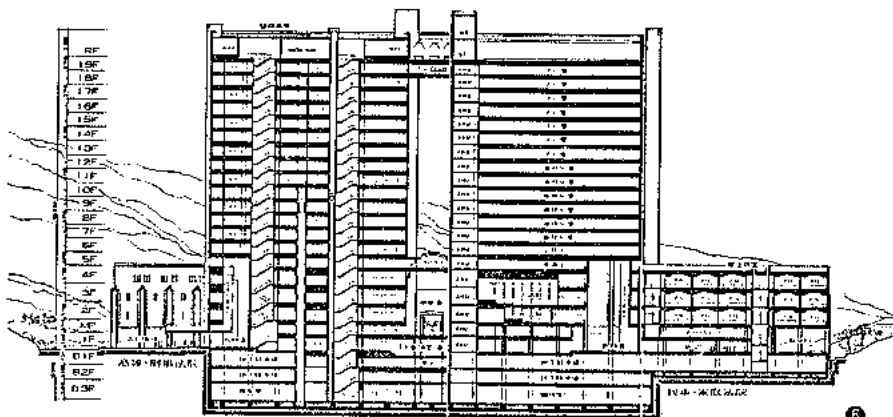
5. 질서의 회복—결

설계자의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풍부하게 또는 안타깝게 탐구하는 매체는 역시 완성된 건물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될 때가 아닌가 싶다. 공간을 자신의 울타리로 치고 그 특수한 환경에서 건축을 보려했던 설계자의 세계는 보편성에 대한 관념보다는 특수한 상황을 연출하는 데 더욱 많은 고심을 하였지 않았나 싶다. 그의 건물은 하나같이 환경에 보편성을 참고하기 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회복케 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녔다. 억제되는 속에서 자유롭게 헤쳐나가는 경지의 터득을 그는 일찍 하였다고 본다. 풍부함의 크기를 알았고 그의 기억을 특별한 상상과 다양성에

접목시켜 뒤쳐지지 않은 현실적 가치의 도덕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데뷔하면서부터 좋은 무대에 서슴없이 출현하였다. 지금 그 호흡이 맞어진,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다. 남겨진 상황은 숨겨진 연결과 새로운 매듭을 위해 크고 많은 호흡을 필요로 한다. 그의 Dogma로 부터의 계층적 복속이나 탈피를 위한 시도들이 새로운 틀을 겨냥하여 끊임없이 탐색되어질 것이다.

이 거대한 법원청사를 마주 대할때의 인상은 정좌함이다. 한치의 자세도 흐트리지 않고 바로 한 자세에 사실 실증적이고 가가 질린 면도 없지 않다. 서울의 시각적 진행방향을 바꿔놓은 정도와 높이는 이미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을 진입하면서 인지되는 것이다. 마치 새로운 준법정신을 고취하려는 듯한 인상도 없지 않다. 정형의 곧바른 자세는 관행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저급한 가치들을 일체 배제한 상태이고 새로운 시각적 분출을 보여주고 있다. 직선형으로 확산되는 평면적 배열을 지닌 저층은 기능적인 해결을 위한 하나의 Collective Form을 택하고 있으나 몸체를 이루는 중앙의 코스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개의 Court를 형성하여 빛이 따라 들어오는 밝음과 열주에 행각에 드리운 그림자들이 양적으로 규모에 풍부함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체험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 대형의 스트러칭은 아직 의외성을 연출하기에는 너무 경직된 형태를 지닌 까닭에 단순형태의 충동적인 충격만이 강한 인상으로 부각된다. 기념비주의자의 전통도 서려있다. 이는 하나의 시각을 통일하려는 지배적인 사고에서 유발된 것으로, 단편적이며 축상구상등의 통념적인 사고의 절대성등이 사실 다시 재고되어야 한 문제로 남는다.

대형의 통일적이며 단편적인 이 건축물의 중심으로 질서를 회복키 위해 남은 일이란 주변의 크고 작은 환경의 주체들이 지켜야 할 이념이 변화될 장소의 무한한 변화를 인식하고 광범위한 집합체로서 그 지역이 갖는 복합적이며 특수한, 고립되지 않는 세계를 표명하며 소도시로서 기억되는 특수한 성격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기능보다는 환경을 수렴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譯者：韓東洙(現在 臺灣
大學建築 與成鄉研究所)
筆者：林洙(北京清華大學教授)

開拓者の 발자취

中國建築家 梁思成의 一生과 業績

*The Foot Prints of
a Pioneer*
The Life of Master
Shin-Cheung Liang

이 글은 본래 1987년 3월
10일부터 중국의
『建設報』에 연재방식으로
실렸던 것을筆者林洙여사의
부탁에 의해서 臺灣의 건축잡지
『建築師』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1989년 2, 3월호에
연재한 것을 간추려 번역한
것이다. 필자 林洙는
梁思成의 두번째 부인으로
현재 북경의 청화대학
건축학과에 근무하고 있다.

1989년 10월 중국건축학회·중화대학
건축학과등은 梁思成의 탄생 8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연합집회를 열어 그의 일생을
소개하였다. 한장 한장의 사진에는 이 저명한
건축학자가 걸었던 길이 기록되어 있었고
황제자손의 꾸밈없이 순수한 마음을 더 더욱
반영시켰다. 그는 학식이 넓고 학문을 함에
있어서 근엄하였으며 용감히 개척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에 대한 일치된
평가인 것이다. 또한 국가와 민족이 위중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그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양사성의
일생에 대한 소개는 특별히 깊은 감명을
받는다. 이것은 한편의 문학작품도 아니요
전기또한 아니며 단지 양사성이 생전에
기술한 것과 그가 남긴 筆記·書信 등에
근거를 두고 정리해 나온 한가지의 자료인
것이다.

세기의 혁명가

양사성은 廣東省 新會縣 茶坑 사람인 梁啟超의
장남으로 1901년 4월 20일 日本의 東京에서
태어났다. 1898년 戊戌政變이 실패한 이후
그의 부친은 일본으로 도망하였는데, 이 아기의
출생은 양계초부부에게 즐거움과 동시에 번뇌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이 어린아기가 정상인과는
달리 두 다리는 벌어져 있었으며 발끝은 서로 마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치료에 애를
썼는데 한 일본외과의사의 조언으로 바르게 교정이
되었다. 양사성의 생모는 청나라 禮部尙書
李瑞藻의 여동생 李惠仙이다. 그녀는 명문 집안의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스스로 詩書를 숙독하였고
문화적 수양은 높았으며 자녀의 교육은
엄격하였다. 서모 王桂芬은 원래 양사성 어머니의
친정집 몸종으로 집안의 일을 모두 도맡아
하였으며 부인이 의도한 모든 일의 충실한
집행자였다. 이 서모의 양사성에 대한 정성은
지극하였으며 그는 바로 그녀의 신변에 의지하여
자라났던 것이다.

1906년 양계초의 전 가족은 橫濱 順善의 한
華僑의 별장인 怡和山莊으로 옮겨와 살았다.
이곳은 산을 뒤로 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서
파도와 뒷산의 소나무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까닭에 양계초는 이 산장의 이름을
雙壽園으로 바꾸었다. 양사성의 어린시절은 바로
이런 곳에서 보냈다. 그의 부친 양계초는 비교적
일찍 서방의 근대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중국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봉건 가정식의
가르침 방식을 쓰지 않았다. 그는 양사성에게
자애로운 아버지이자 엄격한 스승이었으며
친구이기도 했다. 양사성은 아버지로부터 고상한
품격의 인간됨을 배웠고 두 어머니로부터의
자애로운 보살핌을 받아 어려서부터 열정적으로
활발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고 용감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중국과 서양을 배우다

양사성은 아버지가 주관하는 華僑子弟學校,
橫濱大同學校幼稚園 및 神戸同文學校初小에서
계몽교육을 받았다. 華僑子弟學校의 애국주의
교육은 그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으며 어린

마음 속에 일종의 강렬한 민족자존심을 심어 주었다.

1912년 양사성은 부모를 따라서 일본에서 귀국하였는데 귀국 후 북경의 匯文學校와 崇德學校高小에서 공부하였다.

1915년부터 1923년까지 8년간 양사성은 북경의 청화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다. 維新運動 후에 일본의 사회와 부친 양계초의 영향은 그로 하여금 다른 소년보다 더욱 일찍이 근대문명을 접촉하게 하였다. 이런 까닭에 입학 초기에는 단지 생기발랄한 소년에 불과했으나 그후 선생님과 친구들의 주목을 받는 우수한 청년으로 변하였던 것이다. 이 청화학습기간에 그는 점차적으로 다방면의 재능을 나타내었는데, 학업이 우수한 것을 제외하고 취미도 매우 넓었다. 그는 체육을 좋아하였는데 학교 운동회에서 높이뛰기 일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봉도 뛰어났으며 축구의 健將이기도 했다. 이것은 그가 훗날 고건축 조사에 종사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殿堂梁柱와 高塔尖刹을 기어오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음악을 좋아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음악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다. 동시에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를 배웠으며 校軍樂隊의 隊長과 第一小號手를 겸하였고 長·短笛에 뛰어났다. 그가 가장 좋아한 것은 역시 美術로서 재학시절에는 교지의 미술편집위원으로 추대되었고 교지를 위해서 寫生·速寫·漫畫와 각종의 표지그림 등을 대량으로 그린 적이 있었다.

양사성의 또다른 특징의 하나는 냉정하고 민첩한



①

정치적 두뇌로 친구들은 그를 칭하여 「정치적 두뇌를 가진 예술가」라고 칭할 정도였다.

5·4운동 시절에는 그가 청화학생 가운데의 지도자였고 의용군과 愛國十人團 중의 중견분자였다.

이 청화시기에 그와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친구로는

陳植, 吳文藻, 吳去非, 黃白漱, 徐宗崙 들 수 있다. 그는 또 이 시기에 徐宗崙, 吳文藻 두 친구와 함께 「世界史綱」을 번역하였는데 그의 부친이 이것을 교정 본 후 商務印書館에서 출판되었다.

양사성은 청화학교에서 중등교육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단단한 국어, 영어, 서방 기술과학과 인문과학의 훈련을 받았다.

1923년 5월 7일 그는 불의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미국으로의 유학을 1년 연기해야만 했다. 그는 스스로 1년 낙후된 것에 대해 매우 조금해 하였으나 그의 부친은 이 기간 동안에 국학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여겨 양사성에게 그것을 공부하도록 가르쳤다. 이리하여 이 일년동안 두터운 국학의 기초를 다듬게 되었고 건강을 위해 동계체력훈련도 강화를 하였다.

1918년, 양사성은 부친의 친구 林長民(학자, 시인, 정치활동가임)의 딸 林徽音(후에 梁의 아내가 됨)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영국 런던의 여자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내의 한 친구로부터 建築家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그후 양사성과 알게 되면서 양사성도 그녀의 영향에 의해서 건축을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1924년 6월 양사성은 상처가 회복된 이후 임휘음과 함께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으로 유학의 길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 펜실바니아 대학 건축학과에서는 여학생을 받아 드리지 않아서 임휘음은 어쩔수 없이 미술학과에 지망하여 건축학과와 과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건축학의 성적이 뛰어나게 좋아서 1926년 그녀는 건축설계과목의 시간조교로 채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시간강사로 승격이 되었다.

1927년 6월 양사성은 뛰어난 성적으로 펜실바니아 대학 석사학위를 획득했고 임휘음도 똑같이 뛰어난 성적으로 이 대학 예술학원 학사 학위를 획득했다. 이 때를 전후로 해서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한 중국학생으로는 楊廷賢, 陳植, 童寯, 譚垣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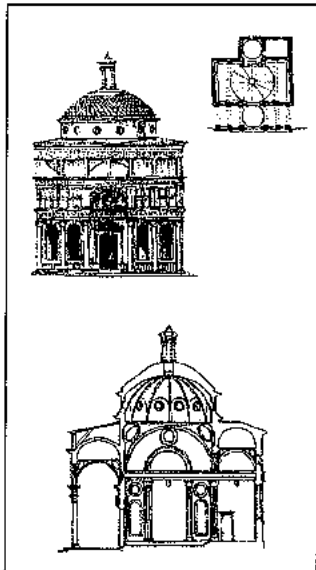
양사성이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은 매우 고생스러웠으나 이는 한결을 더 나아가 그의 근엄한 治學精神을 형성하게 했다. 그는 서방문화와 建築史에 특별히 흥미가 있어 수업을



②

① 양계초의 가족사진. 좌측이 양사성, 그 옆이 부친 양계초

② 청화학교 간행의 「체육」의 표지를 위한 그림



3



4

듣는 것 이외에도 많은 책을 읽으며 저명한 고건축에 대하여서는 열성적으로 깊이 연구하였고, 관련된 여러 참고자료를 읽었으며 또한 옛사람들의 이러한 건축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였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박물관은 구미각국에 이름이 날 정도로 유명하였는데 박물관의 소장품중 중국의 고대문물이 특히 대량으로 있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임휘음과 종종 이들 문물을 냉철히 감상하였으며 중국의 불상과 漢·唐代의 冥器와 古代의 銅陶器 사이에서 배회하였다.

1920년대의 전 미국 건축계는 절충주의 방식이 지배적이었고 펜실바니아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든 건축의 외형설계는 반드시 일종의 고대의 형식을 취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그리고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는 이미 적지않은 미국의 건축대가들이 건축에 대한 창작적인 견해를 발표하고 있었다. 양사성은 이러한 대가들의 견해를 읽었으며 그들의 논점들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그의 건축설계작법은 구도가 간단하고 소박하며 실질적이고 화려함이 없었다. 동시에 그는 건축의 기능과 형식이 절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형식은 단지 아무런 변화없이 고대의 건축외형의 敎學方法을 모방할 수 밖에 없고 회의를 탄생시킬 뿐이니 이것은 設計人才이면서 畫匠인 사람을 배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이러한 마음을 그의 부친에게 말씀드렸다. 그의 부친은 편지를 써서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요 몇년 명칭한 작업에만 전념하여 네가 畫匠으로 변할까봐 두렵다. 네가 이런 감각이 있으니 너의 학문은 곧 진보가 있을 것이다. 規定의 틀은 巧를 추구하는 일종의 도구이다. 규정의 틀을 충실히 배운 뒤에 손재주를 점차 도모하여라. 대미술가와 대문학가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부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너의 학문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있다. 1~2년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상식을 공부했으면 한다. 특히 문학이나 인문과학 방면의 부분에 대해 애쓰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배우는 바가 너무 전문적인 관계로 생활이 단조롭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내가 근래 2년동안 너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종종 다른 장조의 감각을 느꼈으며 네가 점차 고독하고 편벽된 길로 들어설까 두렵다. 나는 네가 돌아와서 나를 만날 때 여전히 3, 4년 전의 활발하고 생기있는 아이이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나는 곧 만족할 것이다.우리 학문하는 사람들은 학업이 곧 생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업의 내용이 충실히 확대되는 것과

생명의 내용이 충실히 확대되는 것은 정비례를 이룬다.」

이러한 부친 양계초의 가르침은 양사성 일생의 학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부친은 또 양사성이 펜실바니아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25년에 그와 임휘음에게 한권의 새로 출판된 고서적도본 「營造法式」을 보냈다. 그러나 이 책은 양사성에게 하나의 큰 즐거움을 준 동시에 막대한 실패와 고뇌를 가져다 주었다. 왜냐하면 이 예쁘고 정밀하며 아름다운 巨著는 천사와 같았으나 이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이 거작을 연구하고 중국건축의 발전사를 연구하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당시 중국건축과 그것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학술계조차 관심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양사성과 임휘음은 펜실바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Paul Gret 사무소에 가서 한 여름동안 일을 했고 그해 9월 임휘음은 예일대학에 들어가 무대미술을 공부하였으며 양사성은 하버드 대학원에 들어가 中國宮室史의 박사논문과 이 연구의 부산물인 中國彫塑史를 준비하였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각국의 학자가 쓴 이 방면의 연구성과를 열독하고 분석하면서 자신의 연구작업은 전면적으로 서적에 의지해서 자료를 찾을 수 없음을 발견하고 하버드 대학을 떠났다.

1928년 그와 임휘음은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결혼을 하였다. 결혼후에 그들은 반년 동안 구라파를 여행하였는데 그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양계초는 여행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였다. 그들은 구라파에서 과거에 단지 책에서만 보았던 고건축을 참관하였고, 촬영하고 速寫·寫生하였으며 서방문화유산의 精華를 심각히 받아들였다. 고건축을 참관할 때에도 그들은 당시에 한창 유행하던 新建築運動에 유념하였으며 많은 박물관을 참관하였는데 주로 전문연구관에 수장된 중국의 석벽화와 기타 문물을 보았다. 그는 서방국가의 고건축에 대한 과학적인 정리와 보호를 보고 또한 조국의 국보가 대량으로 팔려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더욱 중국의 고대건축을 연구하여 민족문화를 진흥하리라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 J. K. Fairbank는 양사성과 임휘음이 받았던 교육을 이렇게 개괄하여 설명하였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았던 인사들 중에서 그들은 가장 심오한 두가지 문화를 수양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통의 중국고전문화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심오한 학습과 폭 넓은 여행을 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중국과 서양의 기초 위에



자기의 심미안으로 흥미와 기준을 배워서 익힐 수 있게 하였다.」

젊은 主任

양사성과 임휘음이 귀국하기 전에 양계초는 이미 그들의 직업을 위해서 장래의 계획을 해 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 적당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東北大學의 교수와 清華大學의 교수에 관해서 비교를 하여 동북대학의 교수가 될 것을 권고하였다. 왜냐하면 동북대학의 건축사업의 정도는 지극히 희망이 있고 청화대학은 너무나 편안하여 사람을 게으르게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양사성도 최종적으로는 동북대학으로 가서 건축학과를 세우는 일을 택하였다. 그가 귀국하여 瀋陽으로 올 때 동북대학의 공대학장 高楷冰이 정거장에서 직접 그를 맞이하였고 건축학과와 설치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동북대학은 이미 한 학급규모의 학생을 모집하였지만 무슨 교육을 설강해야 할 지도 모른채 그가 돌아와서 진행하여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중국내의 대학에는 아직 건축학과라는 전문학과를 설치한 곳이 없었다. 나이가 겨우 27세인 양사성은 동북대학의 건축과 주임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짊어지고 중국북방에 첫번째 건축학과를 세웠고 이와 동시에 南京의 中央大學에도 같은 과를 세웠다. 동북대학의 건축학과가 처음으로 문을 연 첫해에는 그가 학과장이 되었고 그의 부인 임휘음은 그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또 한명의 건축학 교사였다.

양사성은 매사에 노력하는 그의 친구

童 寯·陳植·蔡方蔭등을 교사로 초빙하여 최고 수준의 교사진을 구성하였다. 동북대학에서의 3년간은 양사성으로 하여금 중국의 건축교육 사업이 견고하고 중요한 일보를 내딛고 매진하게 하여 중국건축교육의 장시자가 되게 하였다.

그는 동북대학의 건축학과를 창립할 때 자연히 그가 졸업한 펜실바니아 대학의 교학체계를 기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외국에서 배운 것을 모두 이식해 오지 않았다. 양사성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당시 팽배하여 있던 질충주의적 건축설계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新·舊文化의 교체시기에 처해있었으므로 털끝만큼의 꺼리낌 없이 펜실바니아 대학의 교학상의 많은 틀을 타파해 버렸다. 그는 건축설계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新建築을 창작하도록 해 주었고 자기 민족의 문화유산 속에서 영향을 받아 그것을 흡수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건축설계라는 주요한 이 과목을 가르친 것이 이외에 「건축사」, 「중국조소사」 등의 과목도 직접 강의하였다.

그는 항상 스스로 중국건축사를 연구하겠다는 결심을 잊지 않았으며 모든 放學과 조금의 여유있는 시간까지도 이용하여 「營造法式」을 다듬었고, 瀋陽의 清代 北陵을 추측하여 그려내기도 했다.

1929년 그와 처 임휘음, 진식 그리고 채방음은 서로 합작하여 「梁·林·陳·蔡 營造事務所」를 설립하였고 吉林大學의 全體計劃(Master Plan)과 세 동동의 教學樓宿舍 등을 설계하였다. 그는 이 처녀작 중에서 현대적인 部材를 써서 중국건축의 특징을 유지하는 건축을 설계하여 보았다.

1931년 6월 그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동북대학을 떠났고 같은 해 9월 9·18사변으로 동북대학은 문을 닫았다. 동북대학의 건축과는 비록 3년이란 짧은 기간 존속하였지만 劉啟平·劉鵬典·張鐸·趙正之와 같은 학문에 성공한 건축학자와 훌륭한 건축가를 배출하였다.

이 시기에 양사성과 종종 내왕이 있었던 사람으로는 陳植·童 寯·蔡方蔭·劉崇樂·徐宗漱·傅慶·彭開熙·卡彭·陳雪屏등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젊은 사람들이었다.

새로운 길

대략 1929년 走啓鈴이 宋代的 營造法式 초본을 발견한 이후 두차례의 영인이 진행되어 중국의 영조를 연구하는 흥미를 탄생시켰는데 주계검은

③ 1924년 펜실바니아 대학 재학시 건축사 수업시간의 작품

④ 양사성의 30년대 속사작품

⑤ 1929년 가을 동북대학에서 : 劉崇東, 傅慶, 陳植, 蔡方蔭, 梁思成, 徐宗漱

예술의 감상은 특히
보는것을 중요시 해야
한다. 천편의 책을 보는
것보다 원화를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나으니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또한 이것으로서
건축연구의 지침을 삼으니
그는 오래 되지 않아서
자신의 학문의 길을 열게
되었다.

자기의 돈으로 中國營造學社를 발기하였다. 학사는 곧 북경의 珠簾子胡同七號住宅에 세웠는데 그후 天安門 안의 서쪽 千步廊으로 옮겨졌다. 초기에 입사한 사원은 대부분이 주계검의 과거 막료로서 대부분이 國學者들이었다. 1930년 주계검은 미국이 지배하다 돌려준 康款의 중화교육문화기금 이사회(약칭 中基會)에 보조를 신청하였는데 中基會 이사 가운데 하나인 周胎春(양사성이 처음 청화에 들어갔을 때의 총장이자 朱의 옛 막료)은 영조학사에 현대건축학과의 전문인재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경관의 보조가 성과를 얻지 못할까와 걱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양계초로부터 양사성이 중국건축을 연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양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영조학사에 오도록 하였다. 양사성은 주태춘의 설득에 의해서 동북대학을 떠나 1931년 9월 영조학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북경의 北總布胡同三號에 있는 조용한 四合院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길을 열었다. 영조학사에서 그는 구마 건축학의 지식을 빌어서 중국건축사 연구에 이용하리라고 뜻을 세웠다. 이러한 사상과 연구방법은 그의 「答一篇古建調查」와 「蘇縣獨樂寺山門考」에서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近代治學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로서 실물이 이론을 뒷받침해야 하니 百聞而不如一見이라는 속담이 적합한 과학적인 방법인 것이다. 예술의 감상은 특히 보는 것을 중요시 해야 한다. 천편의 책을 보는 것보다 원화를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나으니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또한 이것으로서 건축연구의 지침을 삼으니 그는 오래 되지 않아서 자신의 학문의 길을 열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중국건축의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투어 실지조사를 하였고 고대건축물의 전부 혹은 세부를 측량하였으며 사진을 찍는 방법과 寫生의 방법으로 기록하였으니 이것은 중국인이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실물로서 중국건축을 연구하는 시작이었다.

양사성은 또한 고대를 이해하려하는 웅당히 근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여겨서 宋代의 法式研究는 清代 工部の 「工程做法」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이러한 巨作을 읽어서 이해하려하는 이 계통의 老匠師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북경의 故宮과 기타 고건축을 교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老木匠인 相文起와 老彩畫匠인 祖鶴州를 찾아뵙고 두분을 스승으로 삼았다. 1932년 그는 기본적으로 清工部工程做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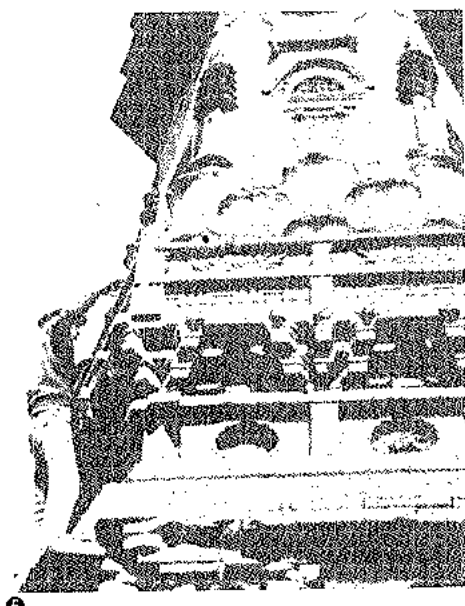
이해하였고 清式營造則例(1934년 출판)을 썼다.

그는 중국의 고건축은 절대로 대도시에서 찾아 볼 수 없으니 유일한 가능성은 외진지역에 남아 있는 고대의 宗教建築 뿐이라고 여겼다. 1932년 그는 地方志의 기록에 근거를 두고 야외조사의 초보적인 계획과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1932년부터 그는 조사대를 조직하여 매년 두번씩 각 省, 市, 縣으로 보내 중국건축의 실례를 찾았다. 이후에 발견한 正定 隆興寺, 趙州 大石橋, 大同 善化橋와 華嚴寺, 應縣 木塔과 佛光寺 등등은 모두 중국건축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양사성과 그의 학사 동인들이 조사를 다니던 1930년대의 중국은 교통이 아주 낙후되어 그들이 탔던 버스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 거의 없는 답답한 강통차로서 비좁은 것은 견딜 수가 없으며 가장 큰 일은 가는 길이 험없이 구불구불하여 승객은 차를 밀고 가는 것이지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나무바퀴의 마차나 당나귀, 말등을 종종 타고 다닐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이 묶는 곳은 작은 여관이나 절에 불과했으며 이(飢)와 함께 자기가 일쑤였다. 이러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일하는 것 외에 또다른 정경이 있다. 應縣의 木塔을 측량하고 그럴 때 사진을 찍기 위하여 양사성은 손에 철근을 붙잡고 두발을 허공에 매단채 기어올라 갔는데 그 때의 날씨는 춥고 철근의 차가움은 뼈속까지 자극해와 번번 떨리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또 불광사를 조사할 때 촬영도중 박쥐가 날아다니고 추위는 참기 어려우며 작업의 고봉스러움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으니 그 고생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양사성과 그의 부인 같이 이튿날 집안의 자체가 이렇게 자신을 잊고서 일에 헌신적으로 몰두하였던 것은 그들이 조국의 문화에 대한 정열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자신도 잊어버리는 작업정신 또한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이다.

양사성과 그의 동료들이 비록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적지않은 중요한 발견을 하였지만 가장 이른 목구조의 실물은 여전히 초기에 조사한 蘇縣의 獨樂寺와 正定の 文廟였다. 그러나 雲崗, 龍門의 초기石窟 중에서 이미 魏晉南北朝 시기의 殿堂의 台基, 柱, 闌額, 斗拱, 지붕, 門龕, 勾欄, 踏步, 藻井 등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반드시 唐代의 목구조조 실물을 찾아볼 수 있다고 믿었다. 결국 그는 五台山 북쪽의 南台의 끝인 豆村 부근에서 唐代에 축조된 佛光寺를 찾았다.

1931년에서 1937년까지 6년간 양사성과 학사의 동인들은 수백개의 고대건축과 수많은 초기의



조각상, 석물을 조사 연구하였다. 그는 현장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촬영을 하였으며 과학적인 분석으로 조사해낸 것을 대량의 참고문헌으로 정리해 냈고 장교한 건축도면을 그려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처음으로 인식되어 발견되고 감정된 것으로 그것들의 역사적인 가치와 예술적인 가치도 처음으로 학술계와 예술계에 소개된 것이다. 1932년 그는 國民政府中央研究院 語言研究所 通訊研究員의 직책과 歷史語言所의 정탁에 의한 고궁의 복원 및 浙江 宣平縣의 元代 建築인 延福寺의 조사임무를 받아들였다.

이 기간에 양사성은 주요한 조사보고서와 학술논문을 수십편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 편의 전문저서 「清式營造」를 완성하였고 「建築設計參考圖集」 10권을 주편하였다. 또한 영문으로 여러편의 논문을 써서 국외에 발표를 하였고 새로운 시대의 建築家가 진실로 중국전통건축을 이해하고 공동으로 중국을 위하여 新建築을 창조하며 모방·답습의 길로 떨어지지 않기를 희망하였다. 양사성 자신도 이러한 시도를 하였는데 北京의 王府井大街의 仁立카페트회사와 北京大學 地質館 및 여학생 기숙사는 바로 이 시기의 작품이다. 그 중 仁立주식회사는 신건축 위에 權衡比例를 응용하였고 중국건축의 詞彙로서 민족의 品格을 재현해냈다.

이 북경의 영조학사 시기에 양·임 두사람과 자주 왕래한 사람으로는 학사의 동인 외에 金岳霖, 張奚若부부, 陶孟和부부, 錢端升부부, 美國人學者 J. K. Fairbank부부 등으로 梁思成부부는 이들과 잘 아는 좋은 친구로 맺어졌다.

고난의 항전시기

1937년 일본의 침략으로 북경이 함락되자 영조학사도 해산이 되었고 양사성도 북경을 떠나 長沙에 잠시 머물렀다가 1938년 1월 昆明에 도착하였다. 이 여정에서 임휘음은 폐렴을 앓게 되었고 양사성은 1936년부터 척추의 연조직 경화증을 앓기 시작하였는데, 통증으로 등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는 그에게 철사로 만든 조끼를 만들어 주었다. 여정이 고된 관계로 곤명에 도착한 후 그도 심한 관절염과 근육의 경직증세를 얻었으며 척추의 고질병도 악화되었다.

이 때 미국의 많은 대학과 박물관에서 그에게 미국에 와서 일할 것을 청하였으나 그는 「나의 조국이 재난에 처해 있으니 나는 조국을 떠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중단된 영조학사의 작업은 다시 곤명에서 회복되었다. 그러나 북경의 영조학사 사장이었던 주계검이 북경에 있었으므로 학사의 사장은 어쩔수 없이 양사성이 대신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학사의 위치는 중앙연구원 歷史語言所의 도서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곤명 북쪽 교외의 龍頭村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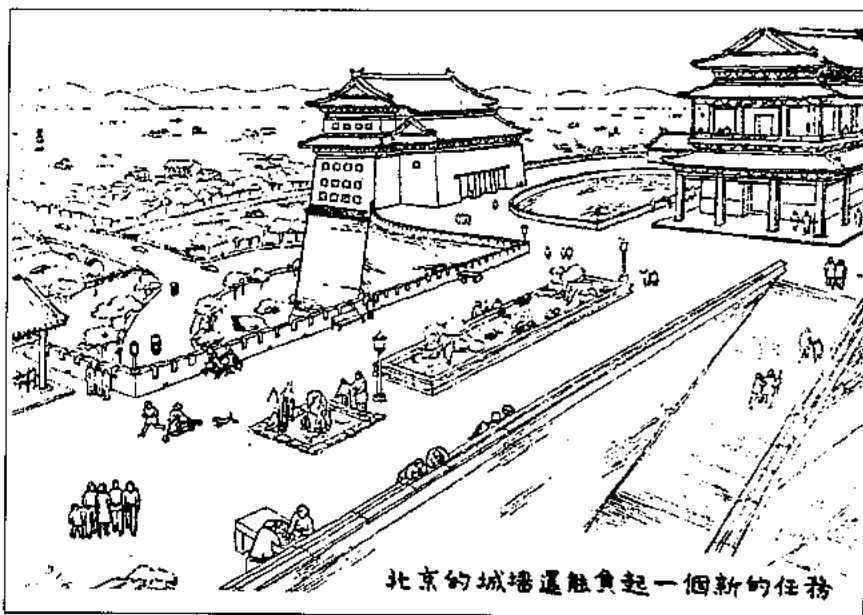
1939년 매우 곤란한 상황하에서도 양사성은 많은 대열을 이끌고 중국의 서남쪽으로 설치조사를 떠났는데 이는 학사의 최후의 야외조사가 되었다.

1940년 영조학사에 대한 보조가 끊어지자 양사성은 매년 학사의 경비를 따내기 위해서 重慶의 교육부나 재정부에 가서 구걸을 하였다.

⑥ 30년대에 양사성이 天寧吉塔에 올라가 측량하고 있는 모습.

⑦ 1947년 뉴욕에서 그가 설계한 UN빌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⑧ 1950년 병중에서 임휘음과 國徽 설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9

항일전쟁 이후 그는 자신의 예리한 눈빛을 사회로 돌려서 국제건축흐름의 새로운 동향에 주의를 하였는데 그러한 그의 관심은 거대한 중국인민의 주거문제에 영향을 주었고 戰後의 도시건설에까지 생각을 미치게 하였다.

게다가 아내의 병이 악화되어 약을 구하러 이러저러 뛰어다녀야 했으며 자신도 어깨의 통증이 심하게 발작한때다가 치주염까지 생겨났다. 이 시기에 영조학사는 역사어언소를 따라서 四川지방의 南溪李莊으로 옮겨갔는데 이곳의 여름은 고온다습하여 전디기 어려웠으나 그가 도면을 그릴 때는 땀방울이 유산지 위에 떨어져야만 비로서 작업을 멈출 정도로 열중하였다.

1942년 그는 국립번역관의 위탁을 받아 한권의 중국건축사를 썼는데 이는 첫번째 중국건축사로서 1952년에 출판되었다. 이때 아내 임희음은 병으로 쓰러진지 이미 여러해가 되었지만 이 책의 글자마다, 귀절마다 교열을 보고 원고를 보충하였으며 게다가 宋·遼代의 문헌수집까지도 책임을 졌다.

1944년 그는 또 외국의 독자를 위하여 영문으로 「圖像中國建築史」(영문으로는 「The Pictorial History of Chinese Architecture」)를 썼다. 1946년 그는 이 원고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출판을 준비하였으나 곧 바로 출판을 맡아줄 사람을 찾지 못한 채 아내의 병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는다는 전보를 받고 황급히 귀국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원고와 사진은 그의 친구 Fairbank가 있는 곳에 두고 왔는데 그 후 1978년 Fairbank의 부인 Wilma Fairbank가 청화대학 건축과를 방문했을 때 비로소 이 원고가 30여년간 유실되어 있었음을 알았고, 이 부인의 노력과 林洙·傅熹年·孫增壽 등의 협조하에 미국서락주식회사의 沈堅白 부인등의 자금도움으로 1984년 MIT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였다. 그리고 이 책은 1984년 미국건축서적 출판상을 획득하기까지도 하였다.

대략 1940년을 전후로 해서 양사성은 영조법식의 조건을 이미 계통적으로 정리하였는데 1940년 이전에는 주로 판본, 문자의 교열이었고, 1940년 이후에는 諸作制度的 구체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영조법식 주석에서 말하기를 「내가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번역작업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문을 白話로 번역하고 詞句, 述語, 名辭에 주석을 덧붙이고 고대의 정확하지 않고 분명치 않은 圖樣을 현대에서 통용하는 工程圖로 바꾸는 것이다. 이외에 많은 法式文字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써여 있지만 처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빨리하도록 그림을 보충하였다.……」라고 하였다.

양사성은 영조학사에서 10여년의 작업을 하면서 학술적인 성취 이외에도 많은 중국 고건축의 연구인원을 배출하여 이후 중국고건축연구의 가장 기분이 되는 기틀을 이룩하였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실지조사에서 그는 중국민족문화의 우수한 유산에 깊은 인식과 자부심을 얻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민중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항일전쟁 이후 그는 자신의 예리한 눈빛을 사회로 돌려서 국제건축흐름의 새로운 동향에 주의를 하였는데 그러한 그의 관심은 거대한 중국인민의 주거문제에 영향을 주었고 戰後의 도시건설에까지 생각을 미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그는 한권의 책을 써서 서구의 도시발전 중에 생겨난 병폐를 지적하고 중국의 도시발전의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제시를 하였다. 또한 그는 한사람에 침대하나(一人一床)라는 구호를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항전승리이후 모든 도시에는 도시계획의 기구를 설치해야하고 계획적인 인제의 양성을 해야한다고 호소하였다.

청화대학 건축과의 탄생

항일전쟁 승리 직전 양사성은 戰後의 초토화된 국토를 부흥시키는 원대한 작업에 깊은 감회를 느꼈다. 당시 영국이나 소련 등의 국가는 전쟁초에 바로 전후의 부흥계획에 착수하였으나 중국은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인제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것을 본 그는 이 급박한 시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각 대학은 건축과를 지원하여 인재를 조성해야 하며, 이 인재들이 금후 수십년 내에 전국민들의 주택 및 도시의 개선과 생활수준의

9 양사성은 북경의 성벽을 진력을 다해 보호하려고 했다. 이것은 그가 북경의 성벽을 이용한 설계방안이다.

10 양사성이 최후로 설계한 楊州 廣濟紀念堂(1963년)

제고를 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교인 청화대학의 梅貽琦교장에게 이 대학내에 건축학과와 설립을 건의하였고, 그의 건의는 받아들여져 1946년 건축과의 탄생을 보았다. 이 때 그는 이 대학 건축과의 학과장에 임명되었고 아울러 미국에 가서 「戰後 미국의 현대건축교육」을 살펴보려는 계획을 승인받았다. 또한 이와 동시에 그는 예일대학의 초청을 수락하여 중국미술사(그 내용은 건축과 조각의 두 부분을 포함한다)를 강의하였다. 1947년 미국의 보스턴 대학은 그에게 중국건축연구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여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1947년 2월 당시의 중국정부는 그를 유엔빌딩 설계고문단의 중국측 고문으로 파견하여 양사성은 유엔빌딩 설계방안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유엔빌딩설계 고문단 중에는 현대건축의 권위있는 인물들이 많이 운집했는데, 유명한 사람들로 프랑스의 Le Corbusier, 브라질의 O. Niemeyer 등의 대가가 있었다. 여기서 양사성은 이러한 대가들과 건축이론, 건축교육 등의 문제를 토론했을 기회를 얻었고 동시에 F. L. Wright, Gropius, E. Saarinen 등의 저명한 건축가들을 방문했다.

이 때 북경이 공산군에 의하여 점령당하자 많은 친구들은 그가 미국에 남아서 가족을 불러들여 살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는 「공산당도 중국인이다. 그들도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고서 가어 귀국하였다.

미국방문에서 귀국한 이후 그는 시야를 單一建築에서 都市建築으로 돌리고 건축의 범위를 한棟의 주택에서 인류전체의 體形環境으로, 작은 규모의 것에서 도시전체 및 하나의 지역에 이르는 큰 것에까지 넓혀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건축가의 임무는 인류의 생활을 위한 정치, 문화, 생활, 상공업 등 각 방면의 무대를 만드는 것이고 건축은 사회에 봉사할 해야되며 사회를 위해서 생활 및 작업상 편안하고 시각상 아름다운 체형환경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이론의 실현을 위해서 建築科는 개체건축을 설계하는 건축가를 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체형환경을 계획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建築工程科는 營建科로 그 명칭을 바꾸었고 建築組와 市鎮計劃組의 두가지 전공을 설치했다. 그 뿐만 아니라 민홍날을 위해서는 營建大學을 세워 그 밑에 建築科, 市鎮計劃科, 造園學科, 工業藝術科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문적인 건축교육에 있어서 그는 학생들에게 폭 넓게 보고, 건축학 주변의 학문에 관한 수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엄격한 정신적 수양을 요구하였으니 그의 교육사상은 理工과 人文의 결합이고 博而精의 수양과 훈련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인 방면을 상당히 중요시하여 공사현장을 실습장 삼아 설계와 실무를 동시에 중요시하였고, 창조력이 있는 현직의 건축가를 초빙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의 교과과정과 실제건축과의 접촉을 유도하였다.

그는 영건과의 교과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1)문화와 사회적 배경, (2)과학과 공정, (3)표현기교, (4)설계과정, (5)종합연구의 5개 방면이다. 그는 전통적인 과정 이외에 건축 및 계획을 전공에서 구별하여 사회학, 경제학, 토지이용, 인구문제, 조소학, 정원학, 市政衛生공정, 도로공정, 자연지리, 市政관리, 주택기계설비, 공장설비, 도시설계개론, 전체강연, 현장조사 등의 과정을 더 개설하였다. 그러나 그가 만든 이러한 교학계획은 1952년까지만 실행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의 고등학문기관은 대부분 소련의 교학계획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9년 9월 양사성은 南京政府에 의해서 中央研究院 院士로 선임이 되었다. 이 시기에 그와 친밀했던 사람은 영조학사의 동인을 제외하고 張奚若 夫婦, 金岳霖, 沈孟和 夫婦, 李濟, 趙元任, 羅常培가 있으며 미국에 있을 때는 Clarence Stein, W. Harrison 등의 건축가가 있다.

미국방문에서 귀국한 이후 그는 시야를 單一建築에서 都市建築으로 돌리고 건축의 범위를 한棟의 주택에서 인류전체의 體形環境으로, 작은 규모의 것에서 도시전체 및 하나의 지역에 이르는 큰 것에까지 넓혀서 인식하게 되었다.

註

*여기서 市鎮計劃은 都市計劃과 같은 뜻이나 비교적 그 대상 범위가 작은 계획이다.



11

1949년 이후

1948년 북경의 교외에 위치한 청화대학은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되었으나 북경은 여전히 공산군의 포위 속에 있었다. 어느날 저녁 공산당은 청화의 지하당 조직을 통해서 양사성으로 하여금 軍用地圖 위에 북경시내의 가치 있는 고건축은 모두 표시하게 하여 북경을 공격하더라도 이러한 고건축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크게 놀라게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는 북경에서 발생할 전쟁(이 전쟁은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을 말함)이 장차 고대문물들을 파괴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그는 단번에 공산군에 접근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한 파괴를 면하기 위하여 八路軍의 요구에도 응했다.

1950년대초 그는 격동의 마음을 품고서 도시계획학자 특유의 민감성으로 북경의 도시건설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북경이 새로운 중국의 수도가 되어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발전을 맞이할 것이라 여겨 이를 위한 원대한 발전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예견하였다. 이로 인해서 그는 북경의 건설문제에 대한 적지 않은 견해를 발표하였는데, 1950년 2월 그와 棟占祥이 공동으로 계획한 「中央人民政府中心区位置의 건의」 속에서 舊北京城의 역사가치를 밝히 옛 城廓의 보호를 전제로한 건설계획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各城과 고적의 보호를 위해 여기저기로 다니며 호소를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에게겐는 봉건유산을 보호하려는 완고파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그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견해는 이해되지 않은 채 소련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改建을 위주로 한 계획이 실행되고 말았다.

또한 그는 1949년 가을부터 1950년 여름까지 그의 아내 임휘음과 함께 中華人民共和國의 國徽를 도안하였는데 이는 1950년 6월 23일 개최된 全國政協 第一回 2次 全体會議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어 인민국가의 새 휘장이 되었다. 또한 북경 시내 천안문 광장 앞의 인민영웅기념탑 건축설계 책임자로 임명되어 충실히 이를 수행해 내었다.

새로운 중국의 新建築참조

양사성은 시종일관 중국의 新建築 창작에 주의를 기울였다. 해방초(공산당이 대륙을 석권하고 난 이후를 가리킴) 그는 소련의 건축이론인 「민족의 형식, 사회주의적 내용」을 배웠고 1953년 첫번째 과학자 대표단으로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의

도시건설의 업적, 특히 도시계획과 건축의 민족화 문제를 보고 들었다. 귀국후 그는 적극적으로 중국의 신건축은 옹당히 중화민족의 품격을 계승해야 한다고 제창하고 건축설계중 서양화의 경향이 존재함을 반대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는 전문인원과 간부들에게 「중국건축사」와 「중국의 건축유산과 전통」을 강의 받도록 하였고 대중들에게 중국 전통건축의 지식을 보급하였다.

그는 신건축에 대하여 「건축은 본래 민족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민족문화중 가장 중요한 표현의 하나이다. 새로운 중국의 건축은 반드시 민족의 우수한 전통 위에 세워져야 한다……진정으로 毛澤東時代의 새로운 중국의 정신을 표현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건축 또한 중화민족의 존엄과 독립적인 표현을 가져야 하며 전면적인 서양화의 관점을 반대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품격을 지닌 건축은 어떻게 창조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공짜로 公式와 같은 해답을 찾아낼 수는 없다. 모든 창조는 이론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실천을 거쳐야 비로소 해답을 점차 찾을 수 있다.……우리는 반드시 유산 속의 우수한 전통을 창조적으로 응용해야 하고 동시에 타민족의 쓸만한 것을 받아들여 중요한 것은 형식에 있지 않고 그 방법과 방향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원초적인 가치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그는 전국적인 성격을 띤 학술기구의 필요성을 느껴 그의 지도하에 중국건축학회가 결성되었고 부이사의 직책을 맡았다.

비판

1955년 4월 아내 임휘음이 죽고 이해 2월 양사성은 대표적인 資產階級 唯美主義의 復古主義 建築思想家라고 인식되어 그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다. 북경시에는 「批梁」 사무실이 생겼고 96편의 비판문장이 씌여졌으나 실제로는 10여편만이 발표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양사성본인 에게나 건축계에 별해무익한 것으로 오히려 깊은 토론의 연구를 얻지 못했고 運動方式로 학술문제를 처리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을 뿐이다.

모든 것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1949년 이후 양사성은 바쁘고 무거운 자신의 직책 이외에도 50년에서 60년대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소련, 체코, 폴란드, 서독, 브라질, 스웨덴,

프랑스, 멕시코 등의 국가를 방문하여 학술교류를 촉진하였다.

한사람의 교육가로서 그는 학생을 사랑하였고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열정적이면서 엄격하였다. 비록 그는 일이 바빠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첫번째로 하고 학생들의 기본실력 양성과 기초과목의 강의를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1학년 학생의 「건축개론」과목은 항상 직접 강의하였으며 학생들도 그의 집에 와서 함께 토론을 하곤 했다.

그는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 진정한 애국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1959년 그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그 후 국가의 건축사업에 관심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숫자의 인민생활에 관심을 두었다.

영원한 전진

하나의 박식한 학자로서 양사성에게 가장 고귀한 것은 그의 새로운 사물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용감한 탐색, 백전백승의 정신, 시대에 따라 전진하며 영원히 멈추지 않는 전진하는 태도이다. 40년대 초 그는 처음으로 體形環境이론을 내놓았으며 도시계획을 중시하였고 항일전쟁 이후 내집마련의 건설목표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화대학에 市鎮+動이라는 새로운 전공을 설치하였다. 해방이후 그의 건축창작에 대한 이론적 사고는 호된 비평을 받았지만 그는 그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아버지가 가르치던 격언 「절대로 어제의 나를 비판한다고 오늘의 나를 주저하지 말라」를 거울 삼아 오히려 「우리는 탐색과정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평을 받는 것 또한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환영해야 한다. 이러한 비평을 받은 잘못은 단지 자그마한 잘못에 불과하다. 만약 약간의 비평을 받았다고 움추러들거나 혹은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곧 국가의 기본 건설에 영향을 줄 것이고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건설에 영향을 주어 그 완성을 지체시킬 것이며 창조 발전 중의 잘못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였다.

1961년 그는 「건축창작 중의 몇가지 중요문제」라는 글을 발표하여 건축의 예술 특성, 미의 법칙 형식과 내용, 부제의 예술성, 전통과 혁신등의 문제에 깊숙히 들어가 연구하였고 「인식-분석-비판-계승-혁신」이란 논리를 세웠다. 말년에 「拙匠수필」 속에서 건축은 건축 〇 (사회과학 〇 기술과학 〇) 미술이라고 칭하였다.



지식을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다.

양사성은 줄곧 인민들에게 건축지식을 보급하는 일을 중시하여 각종의 월간잡지의 원고청탁에 기꺼이 응했다. 글을 쓸 때는 깊은 지식과 알은 지식을 모두 소개하였으며 생동적인 언어와 통속적인 문자를 써서 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1962년 3월에는 전국과학자 좌담회가 廣州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周恩來와 棟毅가 중요한 강연을 하였다. 그 중 棟毅는 영조법식의 과학적 연구작업에 관해 이야기를 하여 양사성을 깊이 감동시켰다. 그후 그는 조국에 바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지식뿐이라 여겨 자신의 모든 지식을 조국의 미래 주인인 학생들에게 바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는 줄곧 건축은 문화의 유기적 부분이라고 여겼으며 고건축은 더욱더 우리 중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고건축의 보호와 유지 작업에 대한 이론을 충실히 하였으며 西安의 小雁塔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대책을 심사할 때 「고건축의 보호는 그것의 수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리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整舊如舊」의 네자로 하였는데 이는 고건축의 복원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되었다.

1963년 그는 중국불교협회 趙僕初의 위탁을 받아 楊州 鑑真紀念堂을 설계하였으며 1966년 「영조법식주석」의 원고를 완성하였다. 이 위대한 학자는 문화대혁명 중 끝없는 굴욕과 아픔을 당한 채 1972년 1월 9일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한평생 정력과 시혜를 조국에 바친 학자이면서 선생님이 이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⑪ 40년대 극단적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하에서도 여전히 학술에 전념하고 있는 양사성. 영조법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⑫ 1959년 양사성과 학생들이 함께 찍은 사진



韓國開化期の 外人館(4)

A Study on the Foreginer's Residence in Korea

Mo. 木浦

古來로 木浦營 또는 木浦鎮이라 불리웠던 목포는 신라말기부터 水軍鎮營이 있었으며, 이조시대에는 水軍 萬戶를 두어 萬戶廳이 있어 군사 및 물자집산의 要港이었다.

목포영은 청·일전쟁직후 고종32년(1895년, 乙未) 윤 5월 7일 칙령 111호 「各道 外營 兵丁解放에 관한 件」에 의거 폐지되었으며, 같은 해 행정구역이 元羅州牧 務安縣에서 분리되어 무안군에 속하게 되었다.

목포항은 원래 지형상 농민들이 집단거주하기에 적당하지 못한 곳으로, 진영의 관리와 유달산 倭軍들의 생활근거지로, 혹은 海·陸軍이 교차하는 교통상의 요충지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1897년 10월 1일 목포항이 개항되었다. 청·일전쟁 직후 전라도에 무역 및 通漁港으로서 개항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일본은 목포항을 선정,²⁾ 조약 및 협정 형식이 아닌 한국정부의 자주권없는 자체선언방식에 의한 개항과 더불어 같은 해 10월 16일에는 진남포 및 목포 각국조계장정에 조인하도록 하였다.

정식 개항이전부터 목포에 入植한 일본인들은 조계가 지닌 지세의 특수성때문에 교생이 대만했다고 한다. 조계의 1/3은 갯벌(泥土)이고 1/3은 험한 砦山이며 평지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水畚이었기 때문에 매축 또는 징지에 지가의 10~20배가 들었으므로, 근소한 자금만 가지고 몸뚱이만으로써 무엇인가 개척해보려고 건너온 것이 일인거류민들의 대다수였으니, 초창기에는 토막을 짓거나 砦穴을 파서 雨露를 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약간 자금 사정이 나은 자라 할지라도 바라크를 세워 생활의 본거로 할 수 밖에 없었다.³⁾ 당시 조선민가의 방 하나를 임차하는 것은 극히 상류층의 것이며, 동절기에 야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무역잡화상점 역시 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점포, 웅집실, 침실 및 취시장을 겸용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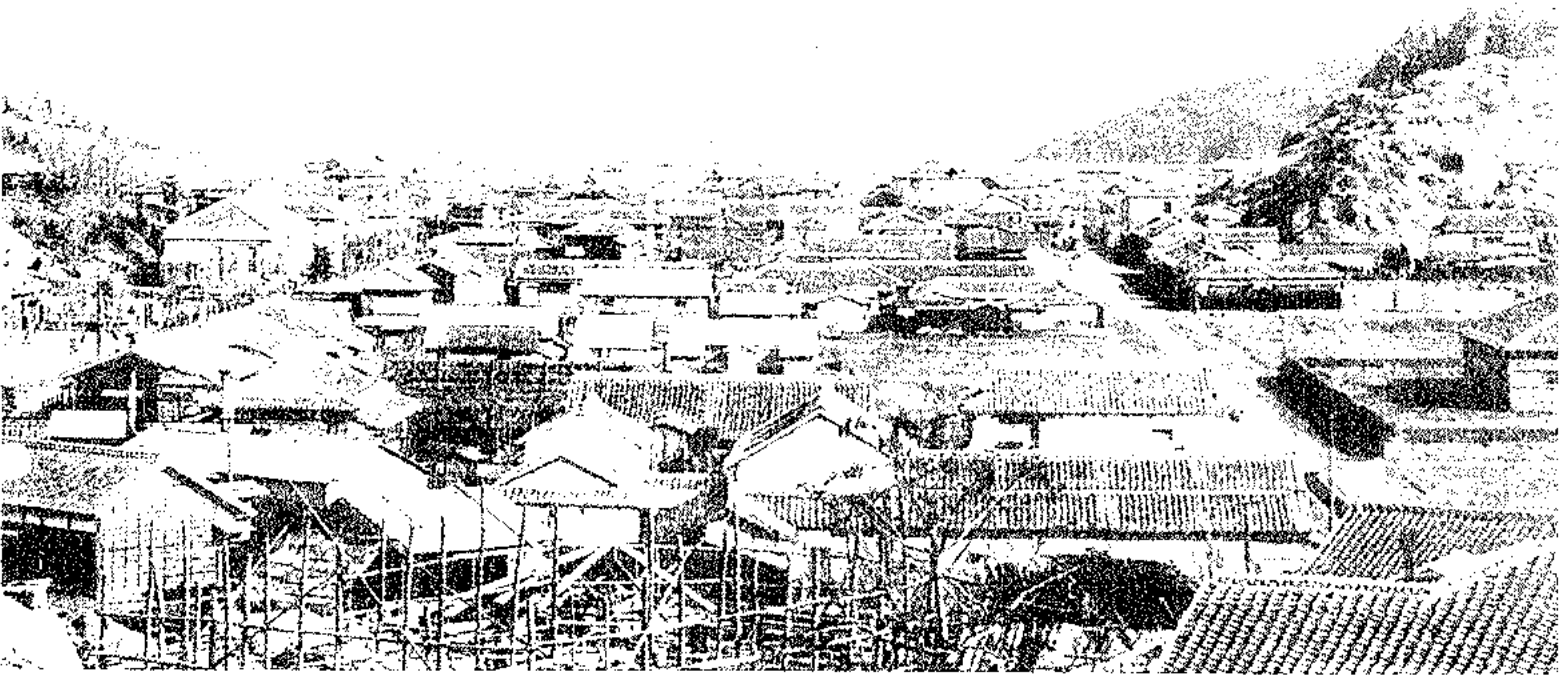
조계내의 토지는 당시 한국정부의 총세무사 영국인 브라운(Brown)에 속해 있었던 화란인기사 스테덴(Staden)에 의해 측량되었다.

현재의 儒達·西山·萬戶·榮海·務安·

金 泰永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by Kim, Tai-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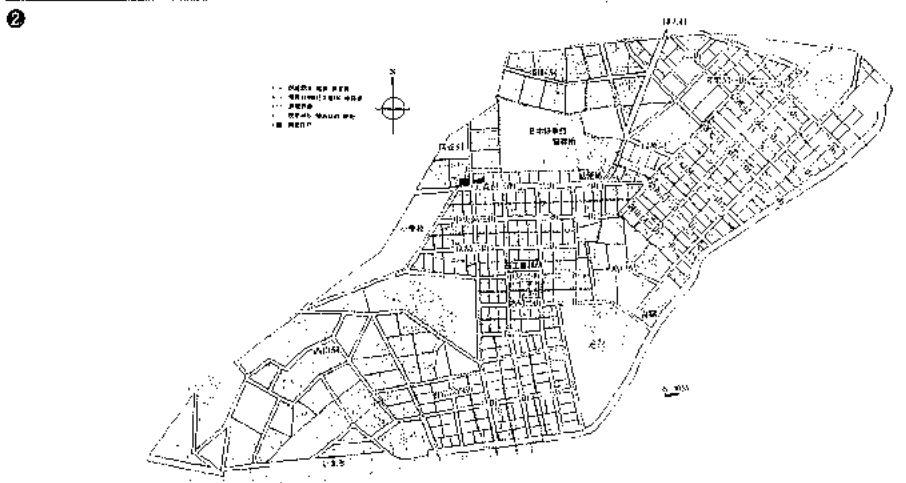
東明洞 일대에 위치하였던 각국 조계는 전체 토지면적 726,024㎡(약 22만평)을 차지하였으며, 章程 제2조에 의거 조계를 甲·乙·丙 3등급으로 나누었다.

- 甲지구(1등지) : 혼락·전답 또는 매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만조점이상의 저지구(112,700㎡, 150개 필지)
- 乙지구(2등지) : 고지지구(hill lots, 342,815㎡, 115개 필지)
- 丙지구(3등지) : 매립을 요하는 해빈지구(216,854㎡, 253개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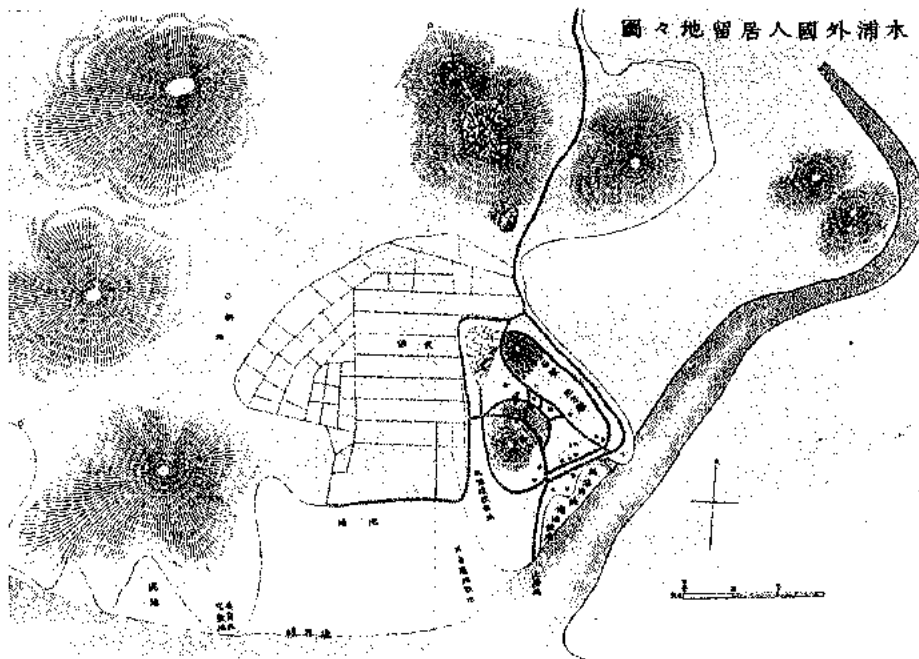
그리고 장정에 최초로 삽입된 제3조는 각 지구마다의 소유별 최대 및 최소면적 제한을 두어, 갑·병지구의 地所는 500~1,000㎡, 을지구 지소는 1,000~5,000㎡로 한정하였다.

또한 도로는 8, 10, 12, 15m 4등급으로 나뉘어졌으며,⁵⁾ 맨처음 개척된 산쪽 방향의 측후·유달·대의 및 서산동의 주택지이외에 대의동(당시 영사관동)에는 관청가, 그리고 해변축조가 진행되면서

대의·중앙·수강동이 접하는 일대(당시 동해안 및 영사관동)에 무역상, 한인촌과 연결되는 무안동 도로변(당시 무안동)에는 잡화상들이 줄비하게 늘어섰으며,⁶⁾ 그 후 해벽공사가 점차 완료되면서 점포·창고가 시가지의 윤곽을 형성하였다.



① 개항기 목포항 각국 거류지 사진(1910년) (원내는 現存하는 건물로 필자가 실측조사한 곳)
 ② 목포항 각국조계 평면도(1911년 3월 31일 현재)
 ③ 개항기와 현재의 지적 비교도(목포항 각국 거류지, 필자그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8년 10월)



개항이후 거류지의 확장과 철폐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외동(대화정, 당시 住吉町)과 서산동(旭町)에 일본인들 최초 거주
- 1899년 6월: 해벽축조공사 (대외동, 목포대의 동·서암, 무안동 일대)
- 1901년 5월: 해벽공사의 진전 (거류지의 모습이 드러남)
- 1904년: 竹洞 遊廓 公許
- 1909년: 목포·광주간의 국도개통
- 1911년 4월~1913년 5월 15일: 학계·목포간 철도 개통
- 1914년: 호남선(대전-목포간) 및 경원선(경성-원산간)개통
- 1914년 1월: 거류민단제도 폐지

목포각국거류지구 명세도²⁾ (1914년, 축적 1/6000) 및 1911년 3월 31일 날짜의 목포각국조계평면도³⁾에 구획된 거류지의 토지구획과 지구할당은 현재의 지적선과 거의 그 패턴을 같이 하고 있다. 개항기와 현재의 지적비교도에서와 같이 도로 및 지구구획은 당시와 변경이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건물층에서 개항당시의 사진에서 나타난 건물유형과 똑같거나, 비슷한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잔존함을 볼 수 있었다. 옆도표는 1988년 3월 현재 목포항의 각국조계내에 위치하고 있는 해방이전의 건물을 파악해 본 것이다. 이들 건물은 개항당시의 사진으로 미루어 당시의 건물유형에 준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건물중 일부는 아직도 서류가 미정리된 채 일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도 있었다.

건물명칭	현위치(가-번지-호)	년대	구조(평수)	현존유무	비고
일본영사관	대의동 2-1-5	1904	이층벽돌 (180)	현존	현, 목포시립도서관
경찰소				무	
우편국	대의동 2-1-6		일층벽돌	?	
상공회의소	중동 2-1	1911.3	이층목조	무	일층: 상공회의소 이층: 공회당(62평)
소학교	유달동 8	1913. 11			현존하는 대강당은 1929년 신축

연월	구분	한국인	일본인	청국인	구미인	계
1897		2600(520)	206(45)	-	-	2,806(565)
1902		3,655(790)	1,045(266)	45(22)	10(5)	4,755(1,083)
1907		5,205(1,078)	2,851(733)	77(26)	6(3)	8,139(1,840)
1912		7,645(1,846)	5,323(1,350)	150(41)	10(5)	13,128(3,242)

1988년 3월 현재				
行政洞	法政洞	全體建物棟數	解放以前建物棟數	備考
儒達洞	*1	959	215	
西山洞	*2	1962	293	
萬戶洞	*3	1489	186	
榮海洞	*4	1231	126	
務安洞	*5	685	170	
東明洞	*6	-	25	

- *1. 大義洞 1·2·3街(117), 中央洞 1·2·3街(52), 萬戶洞一部(1), 儒達洞(45)
- *2. 西山洞(228), 금호동(65)
- *3. 京洞 1·2街(30), 仲洞 1·2街(28), 錦洞 1·2街(16), 柳洞(30), 海岸洞 1·2街(28), 壽康洞 1·2街(31), 萬戶洞(16), 港洞(7)
- *4. 榮海洞(12), 幸福洞 1·2街(41), 祝福洞(13), 寶光洞(22), 福萬洞(38)
- *5. 湖順洞(29), 務安洞(72), 常樂洞 1·2街(69)
- *6. 東明洞 1~6地(6), 光洞 1·2·3街(19)

註

- 1) 순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조각, 1984년 p. 272.
- 2) 같은 책, p. 294.
- 3) 목포지편찬회, 木浦誌, 1914년, pp. 33~42.
- 4) 구한국조약회찬(하) 「진남포 및 목포 각국조계장정」, pp. 311~317 참조.
- 5) 목포부, 목포부사, 1930년. p. 884.
- 6) 「한국안내」 1902년, p. 287년.
- 7) 木浦誌에 게재되어 있음.
- 8) 在朝鮮外國人民留地平面圖, 조선총독부, 1911년.

Mo-1 D동 연립주택

위치/대의동 3가 2번지 5·6·7·8호

작성년대/1910년 이전(건축물관리대장 1935년)

건물규모/구조: 목조기와 일층

5호: 58.51㎡(17.7평)

6호: 63.80㎡(19.3평)

7호: 64.80㎡(19.6평)

(주택 30.41㎡, 상점 34.39㎡)

8호: 65.45㎡(19.8평)

(1층 51.24㎡, 2층 14.21㎡)

보존상태/2번지 8호의 건물면적 51.24㎡가 원래의 규모로 추정되며, 그 이외는 증축부분.

개항기 목포항 각국거류지의 사진에 나타난 건물과 동일건물인 대의동 3가의 4가구 연립주택(棟割長室)은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후년의 증축부분과 전면 채양이 3자 정도 더 나와서 室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외에 구조체의 기본골격과 외관 및 지붕형태는 동일하다. 현재는 5·6·8호는 주택, 7호는 전면에 상점(음식점 및 정육점)이 딸린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항 당시의 건물규모는 대략 6×9m 크기로 추정되며, 방하나의 크기는 2.4×3m(다다미 약 5.5조) 정도이고, 침실 뒤편으로 복도를 끼고서 부엌과 화장실(개항 당시에는 우물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이 있으며, 뒷마당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다.

도로와 면하여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는 대의동 3가 4번지 4호(목조기와 일층, 82.97㎡)와 5호(목조기와 일층, 88.26㎡) 건물 역시 개항 당시부터 있었던 건물로 5번지 5·6·7·8호와 동일 규모의 건물로 2가구 연립주택이다. 그 외에 이러한 유형의 주택은 도로구획된 평지일대, 현재는 중앙로 부근, 특히 중앙로3가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다.

Mo-2 Y동 주택.

위치/유달동5번지 2호

작성년대/1910년 이전(건축물 관리대장 1935년)

건물규모/구조: 목조 기와 2층

일층면적: 97.19㎡(29.4평)

이층면적: 48.26㎡(14.6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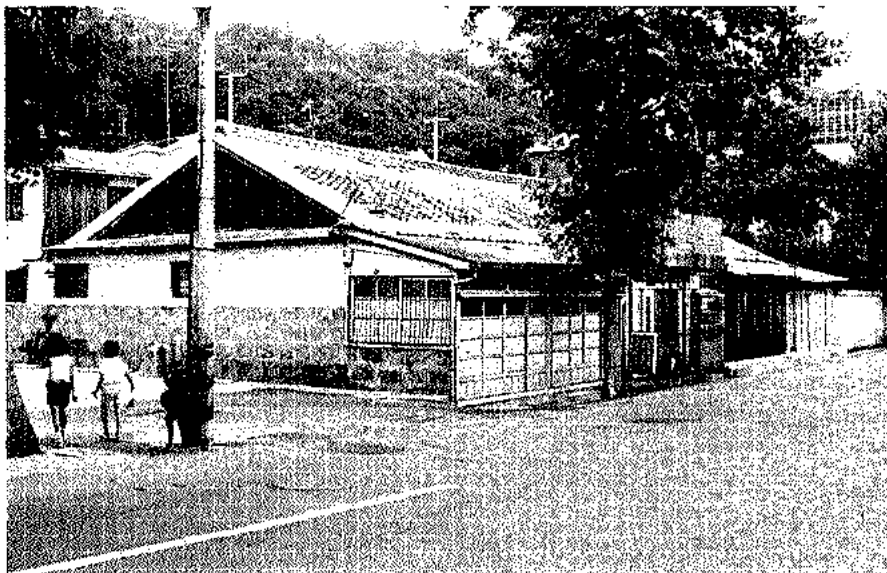
연면적: 145.45㎡(44평)

*참고: 6.61㎡(2.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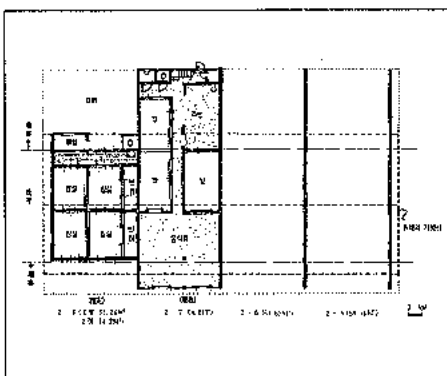
보존상태/일부 증축부분과 내부변경(?)을

제외하고는 구조체·외관 및 지붕형태도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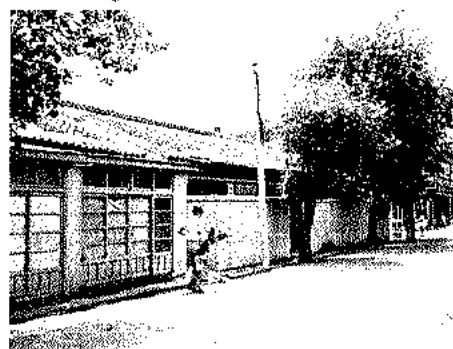
앞의 대의동 4가구 연립주택과 사잇도로를



⑧



⑨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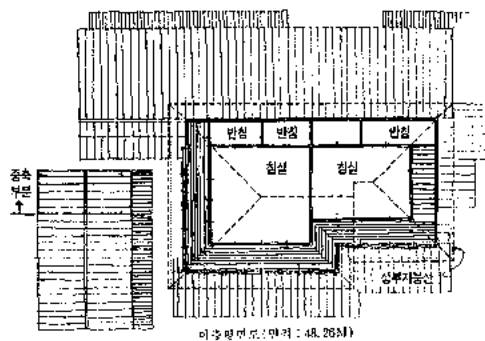


⑪

- ④ 목포항 외국인 거류지도
- ⑤ 개항기 목포항 각국거류지내 주요시설
- ⑥ 개항기 목포항의 인구표, ()는 호수
- ⑦ 목포항 외국인거류지내 해방이전 건물동수
- ⑧ 외관(대의동 3가 2번지 5, 6, 7, 8호)
- ⑨ 대의동 3가 2번지 5, 6, 7, 8호 일층평면도
- ⑩ 대의동 3가 4번지 4, 5호 2가구 연립주택
- ⑪ 중앙동 3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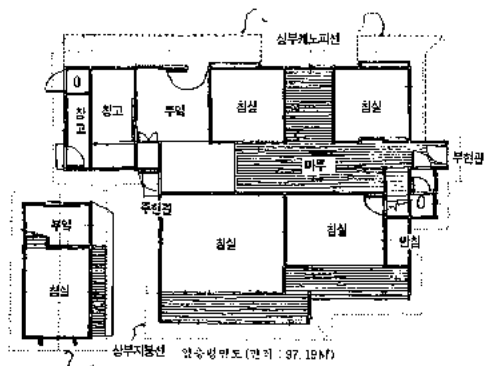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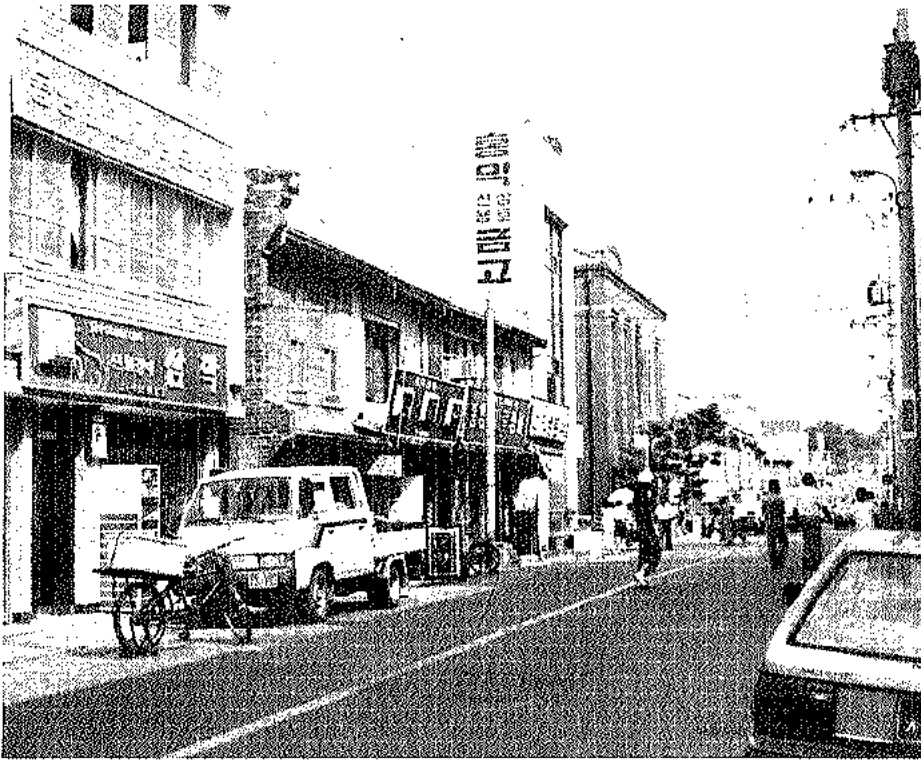
15



16

(유달동 5번지 2호)

- 12 전경
- 13 배면
- 14 정면
- 15 이층 평면도
- 16 일층 평면도



17

끼고 마주하고 있는 유달동에도 개항 당시의 사진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건물이 있다. 1920년대에 들어서 일식 고급주택이 세워졌던 유달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일식 단독주택 이외에 유달동 및 내의동 1가에도 몇 동 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주택은 당시의 건물형태 뿐만 아니라 대지경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개항당시 2개동의 주거용건물과 창고건물(?)이 그대로 있다. 현재는 좌·우측 2개의 주·부현관이 나 있으나, 당시의 사진을 보면 대문이 우측, 현재의 부현관쪽에 있어 부현관이 주출입구이었을 것이다. 문턱이 높은 현관이 바로 인접하여 화장실과 계단이 있으며, 침실은 비교적 커다랗다. 일층에 4실(다다미 6조 3실, 10조 1실), 이층에 2실(다다미 6조 1실, 10조 1실)과, 한편 지붕으로 된 창고가 본 건물에 붙어 있다. 별동의 건물 역시 다다미 6조의 장방형의 침실 1개와 부엌, 다락방이 있다. 평면의 전체구성은 중복도이고, 전면의 남쪽에는 비교적 폭이 커다란 발코니가 침실을 끼고서 형성되어 있다. 후면부의 개구부는 격자창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는 당시의 난간에 연하여 알루미늄 새쉬창이 세워져 있다.

Mo-3 S동 점포주택

위치/상락동 2가 5번지 14·26·27·18호
착공년대/(건축물관리대장 1945년 이후)
건물규모/구조 : 목조기와 이층

연면적 :

보존상태/타개항장의 점포주택과 동일한 건물로
신축년도는 용도변경할 때 재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타개항장의 건물과 마찬가지로 목포항 역시 무역·잡화상의 점포주택들이 무안동과 동해안일대(수강·영해·행복·보광·북만·광동)에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대지와 건물형태로 보아 완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상락동 2가 5번지의 이 점포주택은 타개항장의 건물과 마찬가지로, 실의 구성과 구조 및 설비방식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유형이다. 일층 점포, 이층 주택으로 하나의 건물이 4개로 분할되어 있는 이층 연립주택이다.

점포딸린 주거용 건물이 목포항에도 많이 있으나, 이와 같은 하나의 지붕아래 나뉘어 있는 유형의 건물로는, 무안동 5번지 12·15·17·18번지의 이층 목조건물(호당 단위면적 일층40㎡/이층 20㎡), 상락동 2가

17 상락동 2가 5번지 14·26·27·18호
18 무안동 5번지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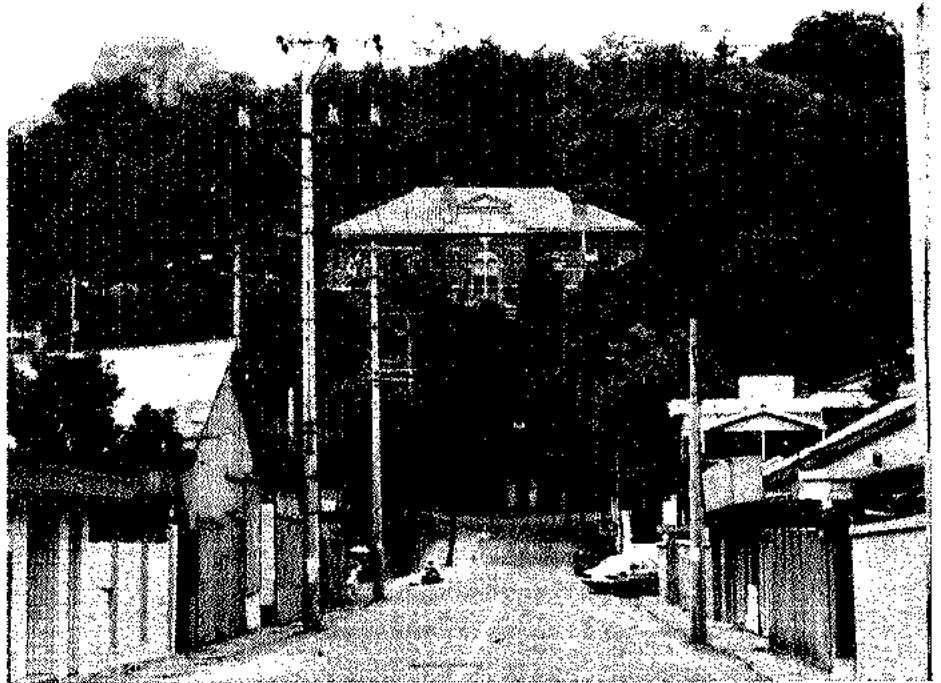
18

8번지 5·6·7의 이층 목조건물(호당 단위면적, 일층 47㎡/이층 36㎡), 수강동 1가 6번지 일대 등에 분포되어 있다. 그 이외에 동해안 및 무안동 일대의 점포딸린 주택과 서산동의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순수한 주택들 중에는 당시의 건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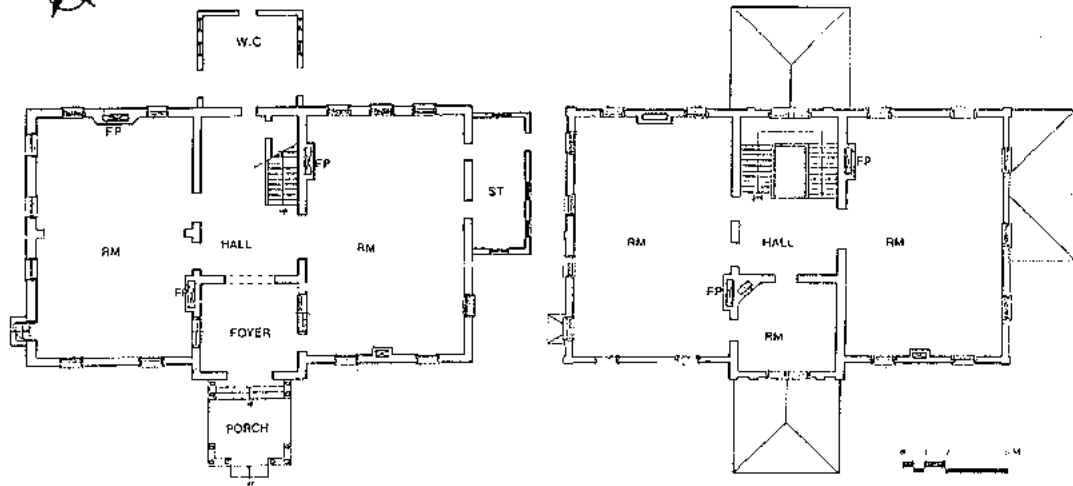
한편, 목포조계내 대의동의 일본영사관(31,351㎡, 약 9,400평), 서산동의 러시아영사관(19,311㎡, 약 5,852평), 만호동의 영국영사관(12,475㎡, 약 3,781평)부지가 설정되었지만, 목포에 영사관 건물이 세워진 것은 일본제국뿐이었다. 이 일본영사관(현 목포시립도서관)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 이것은 1904년 제정러시아 정부가 영사관 건물로 착공하였으나 러일전쟁후 일본정부가 인수하여 일본영사관으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왔으나, 이를 확인할 문헌이나 자료는 전해지지 않으며, 다만 일본측에 의해 완공되었다는 물증이 1984년 화장실 개축때 발견되었다고 한다."



19



20



21

22

이 건물은 현재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이층 벽돌조(일층면적 : 291.75㎡, 이층면적 : 252㎡, 연면적 : 543.75㎡)의 르네상스에 준한 주택형식의 건물로서 재료·시공등에서 매우 정교한 건물이다.¹⁾

전체적으로 평면과 입면에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현관부분에 목조 포오치를 설치하고, 포와이에(Foyer)를 거쳐 중앙홀에 닿으면 계단이 있고 좌우측에 7.8×11.5m(27.13평) 크기의 실이 있으며, 각 실에는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창고와 화장실이 본 건물에 부가되어 있다.

전면 파사드(Facade)는 정중앙의 돌출부분과 벽면의 정연한 개구부의 배치, 그리고 지붕의 박공장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1914년 목포부청사로 사용되다가 해방후에는 목포시청사로, 197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목포시립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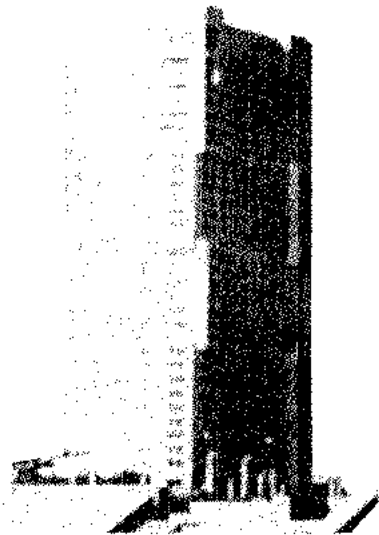
그외에 주택형식의 공공건물로는, 개항초기의 경찰서·병원·거류민단역소·상업회의소·우체국등이 있으나, 문헌이나 자료가 닿는 대로 소개하기로 하겠다.

註

- 1) 미지정문화재 건축물-실측조사 보고서로 대한건축학회, 1987년 p.19
- 2) 윤일주, 한국개화기의 양옥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2년 8월, p.37.

목포립도서관

- ① 정면상세(미지정문화재보고서 P.19)
- ② 중앙동 2가에서 바라본 목포시립도서관
- ③ 1층평면도 (미지정문화재 보고서 P.20)
- ④ 2층평면도



호텔 건축의 공간구성과 배분에 관한연구(Ⅱ)

A Study on the Space Organization
and Program of City Hotel in Korea

全東勳/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Jun, Dong-Hoon

2. 現代의 호텔動向

1. 利用客 動向

1) 宿泊需要의 성장 요인

1979년 세계적인 미래학자 허만칸(Herman Khan)은 “오는 2,000년대에는 관광이 세계 제1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고, 1985년 서머셋 워터스(Sommerset Waters)는 그의 저서 [The Big Picture]에서 “오늘날 관광은 세계 GNP의 11.4%를 점하는 세계 제1의 산업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원은 2차대전 이후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하여 개인생활이 풍부하게 되어 이로 인한 대중사회가 旅行, 外食市場을 급성장하게 하는 기반을 이루게 하였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보너스)와 노동시간의 단축은 여가시간의 활용을 증대시켰으며, 1)生活意識의 급속한 現代化, 2)生活 價値觀의 多樣性, 3)經濟, 社會활동이 활발해지며 業務, 旅行需要의 增大, 4)이동 수단의 간편화에 따라 숙박산업의 총유효수요는 국제적으로 급진전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고속 경제성장과 국제화현상, 88 서울올림픽을 기하여 그 수요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宿泊需要의 動向

세계적 추세는 여행의 대중화시대로, 새로운 여행 형태가(서구에도 일본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세계적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여행의 총량은 증가되며 절약형 여행시대로 변모하면서 大衆化 旅行時代로 정착되고 있다. 오늘날의 여행형태는 多樣化, 個性化된 行動樣式의 변화로 숙박시설에 대한 選好度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고도성장으로 과반수 이상이 증상층 계급의식을 갖게 되어 과거의

고급호텔이 오늘날 서민을 위한 안락한 호텔로 이용된다. 즉 각종 가족모임, 비즈니스 레스토랑 등과 같이 오늘날의 고객 利用動機는 多樣化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高級化되는 경향이 경제성장과 함께 나타난다. 또한 객실부에 있어서도 과거의 고정 개념적인 침실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식(Twin, Double, Studio...)이 자유롭게 선택된다. 또한 호텔의 대중화에 따라 질과 양이 모두 변화되어 고객의 선택폭이 커질뿐만 아니라 보다 계층을 넓게하는 방향으로 순환되어진다. 또한 세계관광성장추세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1985년 이후 관광인원은 전년대비 4.1%에서 1986년에는 4.6%로 증가되었고 관광수입은 4.2%에서 9.5% 늘어나 인원증가에 비해 수입 증가폭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1인당 관광비 지출금액이 9.5%가 늘어난 것을 알수 있다. (〈표2-1 세계관광의 성장추세 표2-2 지역별관광 객수 참조〉)

2 建築 動向

1) 호텔建築 計劃의 定着

호텔기업운영은 80% 이상의 시설투자와 인적자원의 서비스라는 商術이 추가된 기업으로서 건축이 상품성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존재가 된다. 따라서 건물의 설계나 시설의 좋고 나쁨이 호텔상품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호텔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되는 공용의 장소이므로 環境施設側面과 社會文化的側面에서 건축의 역할이 강조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경쟁이 격화되어 과다한 자본투입으로 경영적 측면에서 무리가 수요자에게 높은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게 된다는 부담을 안게 한다.

그러므로 호텔건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정하여 호텔건축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국제 관광호텔 기준법

(2) 설비기준을 선정한다. 호텔건축이 사회의 공공성을 지니고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표 2-1) 세계관광 성장추세

년도	관광객 (천명)	성장율 (%)	관광수입 (백만불)	성장율 (%)
1950	25,282		2,100	
1960	69,296	10.7	6,967	12.6
1970	159,690	11.6	17,900	6.5
1980	284,107	3.7	101,410	21.7
1981	287,334	1.1	103,006	1.6
1982	286,010	0.5	97,386	5.4
1983	292,258	2.2	97,458	0.1
1984	312,289	6.8	100,800	3.4
1985	325,000	4.1	105,000	4.2
1986	340,000	4.6	115,000	9.5

자료 : WTO '87

(표 2-2) 지역별 관광객수

년도	아프리카	미주	동아시아 태평양	남아시아	구주	중동	세계
1975	4,654 (2.2)	42,963 (20.1)	7,804 (3.6)	1,557 (0.6)	153,869 (71.8)	3,520 (1.6)	214,357 (100)
1976	4,425 (2.0)	44,350 (20.1)	8,628 (3.9)	1,712 (0.8)	157,818 (71.5)	3,786 (1.7)	202,719 (100)
1977	4,561 (1.9)	47,347 (19.8)	9,451 (4.0)	2,056 (0.9)	170,570 (71.0)	4,203 (1.8)	238,188 (100)
1978	4,912 (1.9)	50,341 (19.6)	11,106 (4.3)	2,233 (0.9)	183,543 (71.6)	4,186 (1.7)	256,320 (100)
1979	5,188 (1.9)	53,267 (19.8)	12,084 (4.5)	1,805 (0.7)	191,555 (71.3)	4,891 (1.8)	268,790 (100)
1980	5,744 (2.1)	56,070 (20.1)	13,153 (4.7)	1,303 (0.7)	196,504 (70.4)	5,569 (2.0)	278,943 (100)
1981	7,214 (2.5)	53,889 (18.8)	21,731 (7.5)	2,421 (0.8)	196,459 (68.3)	6,133 (2.1)	287,847 (100)
1982	6,676 (2.3)	51,111 (18.0)	22,983 (8.1)	2,377 (0.9)	195,012 (68.4)	6,960 (2.4)	285,125 (100)
1983	7,126 (2.4)	51,215 (17.5)	26,947 (9.2)	2,489 (0.9)	198,459 (67.9)	6,052 (2.1)	292,298 (100)
1984	7,520 (2.4)	52,357 (16.8)	31,509 (10.1)	2,485 (0.8)	211,792 (67.7)	6,526 (2.1)	312,289 (100)
1985	8,000 (2.4)	53,500 (16.5)	34,000 (10.5)	2,500 (0.8)	220,000 (67.7)	7,000 (2.1)	325,000 (100)
1986	8,800 (2.6)	55,850 (16.4)	39,500 (11.6)	2,550 (0.7)	227,500 (66.9)	6,000 (1.8)	340,000 (100)

관람자료 '87

위한 방법으로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질적향상을 도모한다. 외국 방문객 증대와 관광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점차 객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시설, 설비 및 특히 공간면에서 점차 확대되어지는 현상을 보여(Single 13~20SQM, Twin20~30SQM)객실의 수준상승 현상이 나타난다.

(3)한편, 호텔투자의 태반이 건물과 설비에 투자되어 건물의 효율이 즉 투자효율의 척도로 나타나게 되므로 유효율(매장면적비)에 초점을 맞추는 설계계획을 중요시하고, 공공부분의 증대와 공간구성의 특징으로 건축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4)합리적 건축계획이 호텔기업에 필요하므로 호텔사업의 특성상, 설계의 우열이 기업의 우열을 결정짓는 현상이 되므로 설계에 큰 비중을 둔다.

2) 도시再開發과 호텔

도시를 재개발할 때 호텔시설이 포함되는

것은 현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호텔건축이 도시와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국민의 일상생활이 都市文化로 定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都市化現狀과 호텔시설의 開放化로 공공적 성격의 개방된 공간이 도시민에게 제공됨으로써 각종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도시적,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2)호텔施設機能과 都市機能의 一致 인간의 기본 생리적 욕구인 宿, 食, 集會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적이 호텔에는 기본적 시설로 되어 있다. 오늘날 宿은 여행목적의 달성을 수단으로, 食은 즐거움의 일부로서, 집회는 사교적 욕구보다도 더욱 고차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되고 있다. 오늘날 호텔의 부대시설은 시민에게 문화적 서비스기능, 유통 서비스기능, 건강관리 서비스기능, 비즈니스 서비스기능으로 상담, 회의, 전시, 정보 및 심리적 충족을 줄 수 있는 기능으로 개발되고 있다.

(3)호텔시설의 公共的 性格

호텔의 로비나 통로는 가로나 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유로운 출입공간으로서 도시의 이미지와 문화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대도시는 물론 소도시에서도 사생활의 충족과 문화의 이미지를 갖춘 성격으로서 지방 도시호텔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4)都市行政 側面에서의 要求

도시의 신진대사는 사회환경, 경제환경 등의 변화로 도시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재개발은 도시공간의 활성화, 상업시설의 확충, 도시공간의 효율화, 도시공동화의 방저라는 관점에서 호텔기능과 도시기능이 일치된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민간자본을 유도할 수 있어 호텔 입지형성에도(기업적 측면)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호텔의 複合化

(1)複合의 種類

복합화는 두개 이상의 업종이 시설기능을 병합한 건물로서 투자 회수기간을 단축화하고 대형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시가등의 이유로) 시티호텔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가)사업시설과의 복합형
- 나)역과의 복합형
- 다)사무소 건물과의 복합형
- 라)재개발 건물과의 복합형
- 마)공공 서비스(은행등)시설과의 복합형
- 바)부대시설의 강화형

(2)複合의 理由

- 가)좋은 立地를 선택하기 곤란할 경우
호텔은 입지사업이라는 호텔왕 힐튼의 말처럼 좋은 입지 조건은 호텔기업을 발전시키나, 適地인 高價의 도시입지를 구매하기 곤란하거나 투자의 근거가 적절치 않을 경우.
- 나)高價의 地代費를 早期에 회수해야 할 경우
호텔사업의 특징은 고정 투자액이 크고, 자금회수기간이 길므로 투자효율 측면에서 볼때 생산성이 높은 업종과 적극적으로 복합하여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시도할 때.
- 다)대형화, 고층화로 복합기능이 필수적일 경우.
- (3)複合化의 問題點
호텔은 시설의 사용기능이 부가가치를

형성하며, 건물의 효율은 투자효율과 상관 관계가 대단히 크다. 그러므로 러닝 코스트(Running Cost)보다는 공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효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복합형 호텔에 나타난 일반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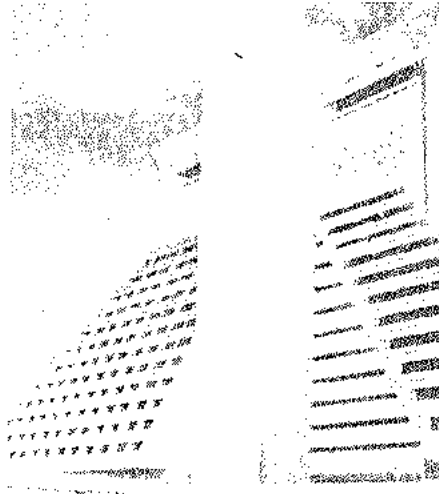
- 가) 고급스러운 外觀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어렵다.
- 나) 호텔 입구(얼굴)를 확실히 나타내기가 어렵다.
- 다) 건물의 空間效率가 단일 업종보다 저하된다.
- 라) 기능별 각 동선, 즉 관리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과 운송기에 대한 투자가 크다.
- 마) 방계법규로부터 설비 공간에 대한 투자가 크다.
- 바) 전문적인 노하우(Know How)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도 복합화에 따른 부가가치가 상회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복합화 호텔은 가능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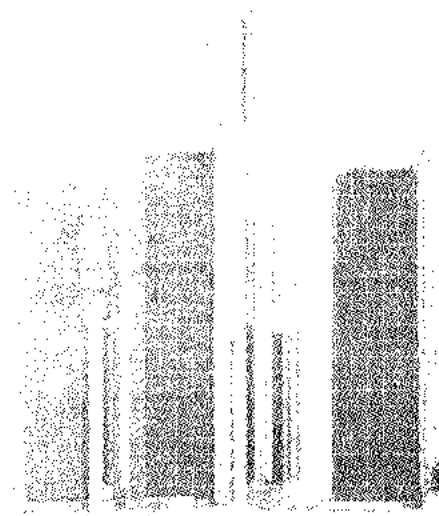
3. 現代의 호텔現狀과 課題

오늘날 호텔이 지니고 있는 현상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 원류는 고대호텔의 발생근원인 업무여행, 휴양여행을 위한 숙박형식(Hotel)과 주거형식(Residential)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전과정은 공적자본에서 주도되던 것이 個人的 資本이 투자되면서 企業化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호텔의 內在的, 外在的 概念은 운영 측면, 이용객의 다양한 行態, 이를 수용하기 위한 建築的 環境構築 및 서비스 등 모든 요소들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각 요소들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1) 시민사회의 사회적 배경변화로서 호텔은
 - 가) 귀족이나 유산계급층의 전용물에서 탈피되고
 - 나) 시설의 標準化, 規格化로 大量化되었으며
 - 다) 관광산업화에 따른 기업이윤 추구화로 형성되고
 - 라) 나아가서는 국민복지시설로도 발전되고 있다.
- 2) 생활형태의 多樣化는
 - 가) 소득의 증대와 생활욕구와 다양화로 레저문화를 개발시켰으며
 - 나) 호텔의 유형을 다양화, 전문화시켰다.



컨벤션 호텔



복합용도 호텔

3) 교통수단의 발달은

- 가) 여행의 편리성으로 호텔건축의 표준화와 세계화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 나) 호텔 수요증대로 다양한 이벤트(Event)를 호텔건축양식의 특징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호텔건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할이 변천되는 것은 개념의 변천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호텔의 유형은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다양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호텔건축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대 호텔건축이 지니는 건축적 봉사와 이윤추구라는 관점을 상호조화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이 요구된다.

III. 都市호텔의 建築構成

1. 概說

현대적 의미의 도시호텔은 미국의 도시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로서 1790년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등장되었다. 유럽의 인(Inn)¹⁾과 미국의 시포트인(Seaport Inn)²⁾은 새로운 형태의 안락한 객실과 프랑스식 음식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사업적 접촉을 위한 장소로서 이용되었다. 180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유형의 대규모 호텔은 주요 미국도시에 확산되었다. 1829년에 완성된 보스턴의 트레몬트 하우스(Tremont House)는 173개의 객실, 최신의 공공편의 시설과 실내욕실, 출입문자물쇠, 전기, 엘리베이터, 전화, TV, 텔레타이프 등이 시설되었으며, 그 이후 각 도시의 상징으로서 대규모 호텔건축이 건설되었다.

세계1,2차 대전 이후 대중여행의 붐에 따라 새롭고 대규모적인 호텔이 창조적인 시장성 개발과 도시개발이론에 의해 복합용도로 구성되었다. 또한 새로운 “旅行地”로서 도시호텔은 시민과 여행자를 위한 특색있는 장소로 인식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도시호텔건축의 사회적 역할, 방향 및 計劃性 特性을 고찰함으로써 도시호텔이 지니고 있는 建築的 特性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도시호텔 役割과 方向

1. 社會, 文化的 側面

1600년대 초기 골라스고우의 대주교는 “죽기에 가장 좋은곳”으로 호텔을 언급하였고, 심리학자이며 호텔 경영자인 르네하트(Rene Hatt)는 다운타운호텔을 “Happy House”로 정의하면서 “그 행복은 정신과 육체의 행복이다”라고 하였다. 안락한 침실 그리고 먹고, 듣고, 보고 좀더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은 호텔사업교육에 있어서 기본정신이 되었다. 따라서 호텔은 문화적 모임과 사회적 행사의 중심체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가 그 지역의 문화를 접촉하는 장소의 역할도 하였다. 또한 지역시민에게 공개되는 사회, 문화적 장소로서 도시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건축의 상징물 역할을 하였다.

2. 政治, 經濟的 側面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 호텔은 도시와

국가의 政治的 活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예를들면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테헤란 등에 있어서 국제적 위기가 절정기일 때 인터콘티넨탈 호텔(Intercontinental Hotel)은 외교관과 압력단체로 인하여 호텔주변이 혼미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전달을 위한 안락한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회의장소, 각종 정치적 모임, 외교적인 회의, 정부방문중인 고위층의 숙박장소로서 선택되었다.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호텔은 사업체 간부와 기술자를 초대하는 장소로서 계획되며, 이것은 동시에 미래의 여행자 증가와 고용증대의 副次的 目的으로도 計劃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호텔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막후협상의 장소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歷史的 場所로도 부각되고 있다.

3. 도시호텔의 方向

많은 도시에서 도시당국과 호텔은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19세기초 최초의 화려한 호텔에서부터 1980년대 최근의 混合複合用도에 이르기까지 도시는 호텔개념을 좀더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미국의 보스턴에서는 몇몇의 다운타운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새로운 호텔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호텔경제를 자극하고 있다. 도시호텔은 도시의 영빈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도시생활자의 증가되는 욕구에 부하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Happy House"로서 계속되어지고 있다.

도시의 명성은 호텔의 스카이라인(Skyline)과 밝은조명, 미술품 또는 초대형 돔과 같은 역사적 건축에 의해 상징화되므로* 호텔은 건축적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냄으로써 존재의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아트리판트의 하이아트 리젠시(Hyatt Regency)호텔과 퍼취트리(Peach Tree), 프라자호텔은 규모와 초현대적 표현에서, 또한 보스턴의 마리오트 롱 와트(Marriot Long Wharf)호텔은 주로 보스턴 시민들의 전통적인 선호에 의해서 그들 도시의 우수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뉴욕 타임스퀘어(Time Square)의 마리오트 마퀴스(Marriott Maquis)호텔은

완전한 근린생활 시설의 성격을 재구성하고 있다.

오늘날 도시호텔의 방향은 그 지역도시 상황에 따라 특성있게 적응되어 구성되어지면서 사회적 봉사기능으로서의 환화와 기쁨을 제공하고 안락함과 긍지를 심어주는 가장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건축으로 그 역할이 규정되어 진다.

3. 機能構成

1. 機能計劃

호텔건축계획의 단계로 보면 호텔사업이 경쟁적인 성격 때문에 機能計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계획에서는 空間計劃과 經營計劃으로 나누어 계획되어야 한다. 위치에 다른 마케팅, 경쟁적 질적수준, 경영특징, 레스토랑의 개념설정, 직원구성, 예산등의 계획으로 필요공간의 요구, 시설의 요구, 재정 및 경영사항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호텔기능계획을 수립하여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텔을 기능별로 나누어 볼 때 총체적 계획으로 공간계획의 기본사항을 보면 객실수 : 식음부 좌석 : 집회연회부 좌석 = 10 : 13 : 40로 나타났으며 주차장은 실당 1.5대로 책정된다. 현금수입 및 지출내역의 통계로는 수입부에서는 객실 50%, 식음 45%, 통신 기타 5%이며 지출부에서 각부별 지출은 객실부 13%, 식음부 35%, 통신기타 3.2%이고 관리부의 지출은 14%, 고정지출은 15.3%로 나타나며 그 세부내역은 <표3-1> 호텔의 수입과 지출비에 표시된다.*

1) 機能推定計劃

호텔의 기능계획에서는 이용고객의 목표설정이 중요하다. 이 목표설정에 따라 호텔기능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정계획된 기능은 운영능력(인적, 물적)과 경영방침이 뒤따라야 하며 이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구체적인 機能構成과 호텔의 성격이 결정된다.

즉, 호텔이란 상품화 구성의 설정은 숙박부, 식음부, 집회연회부, 기타수익부(점포, 스포츠, 레저)로 나누어지며, 각기 시장조사, 시장조사 상황분석, 위치, 고객 목표설정이 호텔의 구체적 기능계획이 설정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능력과 경영방침의 합리적 판정으로 결정된다. (표3-2 참조)

(표 3-1) 호텔의 수입과 지출

내 용	%
수입	
객실	50.76
식, 음	25.38
음료	20.3
전화	2.54
기타	1.02
합계	100
부분별 지출	
객실	13.2
식, 음	35.53
전화	3.05
기타	0.02
합계	51.98
전체경영수입	48.02
분류안정경영지출	
관리적/일반적지출	5.58
마케팅	2.54
에너지	4.61
재산관리/유지비	2.34
합계	14.52
전체경영여유	33.50
고정비용	
순 재산세	4.06
재산보험료	0.51
재배치를 위한 예비비	3.05
관리비	7.61
합계	15.23
부채서비스와 세금을위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18.27

2) 서비스 施設決定計劃

호텔은 각종서비스를 위한 시설로서 개발자와 건축가 그 밖의 전문가와의 토의로서 시설결정계획을 한다.

(가)고객서비스 시설 : 주차시설, 손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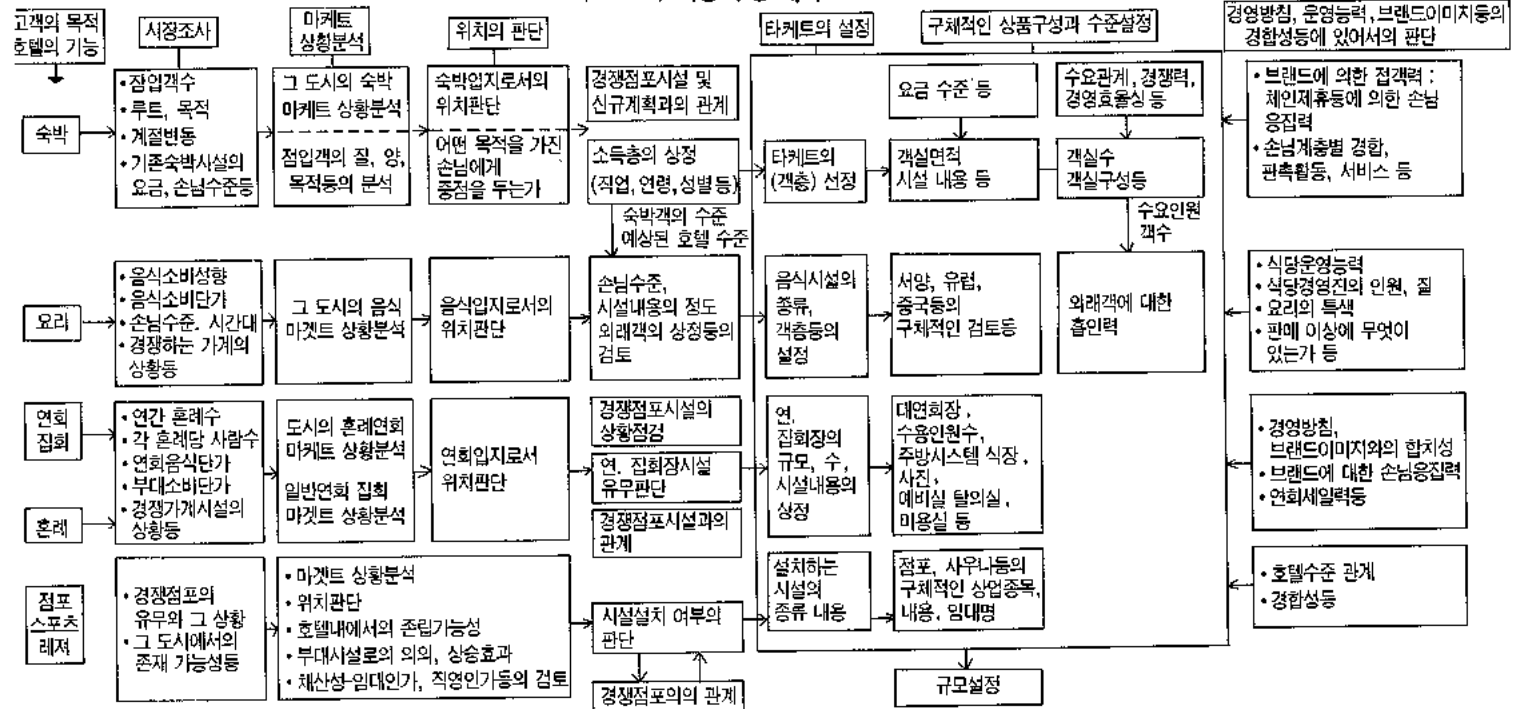
운반, 후르트데스크시설, 객실음식서비스, 식당서비스, 레크레이션, 객실통신, 객실쾌적성, 객실안전시설

(나)종업원 관리시설 : 종업원 출퇴근, 유니폼, 종업원 후생시설, 종업원통로, 자료정리, 음식준비시설

(다)물품처리시설 : 반출입공간, 세탁, 쓰레기청소, 수직운반시설

로 구분하여 시설관계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과 호텔 내부공간을 분석하여 결정한다. 그 내용은 <표3-3> 서비스시설결정계획에서 설명된다.

(표 3-2) 기능 추정 계획



(표 3-3) 서비스 시설결정계획

분류	종류	내 용
투숙객 서비스	주치장	보이, 오너 주처
	수화물 운반	투숙객, 종업원, 서비스 엘리베이터
	프론트데스크 수속	컴퓨터, 종종류, 신용, 안전
	객실음식 서비스	시간, 메뉴, 운반, 접시
	레스토랑 서비스	시간, 서비스유형, 외부유형
	레크레이션	시간, 공공, 어린이에게 개방, 안전성, 라카
	객실커뮤니케이션	전화, TV, 메세지시스템 작업
스테프	객실편의시설	여분의 리넨
	투숙객 안전성	시스템, 화재대비절차
	종업원 출입구	시계, 안전
	종업원 유니폼	유출, 세탁
	종업원 시설	카페테리아, 라운지, 레크레이션, 주벽
	스태프 커뮤니케이션	급사 살림시스템
	데이터과정	저장, 계산, 전화
물품취급	계산통제	지수통제, 낙하안전, 밀폐된회로 TV
	음식준비	집중, 분산
	저장면적	쓰레기, 통제, 구입으로부터 분리된 수납
	세탁	실내, 객실 세탁물, 시간
수작동선	쓰레기, 화물	저장, 냉장, 컴팩션, 유리, 캔세척
	수작동선	리넨, 음식레스토랑, 쓰레기/리넨 슈트

(표 3-4) 건설예산비율

예산목록	(%)	내 용
일반건설	60~65	빌딩, 부지정리, 일반적사항
가구, 고정물, 장비	14~16	객실, 공공공간, 관리사무실 안내판 키친, 바아정비 부대시설(프론트오피스설비운반, 운반차, 라카, 목사기) 세탁기, 도자기, 유리그릇, 살림도구, 유니폼 전화, 컴퓨터, TV안테나, 음악, 안전성, 특별한 오디오/시청각 장비
개발비용	7~16	모든기사, 조정기사, 인테리어, 키친
건축기사급료		
디자인컨설턴트		
급료		
가중정비비		
개발가급료		
프로젝트스태프		
공사기간중보철료		
세금		
법률, 승인, 조사		
공사기간중의 비용	8~10	
개장경비와 작업경비	3~4	트레이닝, 예비개장지물, 사무소, 광고, 발가, 준공식
토지	포함되지 않음	
전체	100	

3.豫算計劃

호텔기능계획의 마지막부분은 예산계획이 된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투입예산과 수입관계에서 호텔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건축가와 디자인하는 그 범주내에서 더 좋은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전체

프로젝트의 비용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객실당 2만5천달러~15만달러) 그러나 호텔기업이 경쟁적인 입장이므로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호텔건설 비용이 객실당 10만달러~15만달러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출내역별로 지출계획을 설정하여 (표 3-4)와

같은 비율로 집행된다.

(표 3-4) 건설예산비율에 나타난 비율은 총체적 통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의 특징과 지역적 배려에 따른 차이는 그 호텔건축의 특성 또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다.

2 宿泊機能

호텔은 주로 여행자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이 주된 기능요소이므로 숙박기능은 호텔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숙박시설이 객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공용공간, 기타 서비스공간과 원활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며 특히 도시호텔에 있어서는 이용계층이 다양하고 규모도 복합적으로 형성됨으로 현대의 호텔에 있어 객실 이용계층의 파악은 계획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객실타입의 결정과 객실크기, 객실믹스(Room Mix)계획, 객실층구성을 고찰한다.

1) 호텔투숙객 분류

- (1) 업무를 위한 투숙자(Business) 단체
개인
- (2) 여행을 위한 투숙자(Pleasure) 가족
부부
개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특성을 이용하여 그룹과 旅行目的에 따라 客室計画要素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은 (표 3-5) 투숙객 특성에 따른 객실계획으로 계획된다.

2) 客室타입과 客室믹스 (Guest Rooms Mix)

(1) 객실타입

- 싱글룸 : 1인용으로 주로 비즈니스용
- 더블룸 : 2인용 침대가 하나 있어 2인 또는 편안한 취침을 원할 경우
- 투인룸 : 싱글침대가 2개 있는 경우
- 스튜디오 (Studio/Parlor) room : 취침과 업무를 겸할 수 있는 객실(침대가 쇼파로 전용됨)
- 스위트룸 : 하나의 객실에 여러개의 방으로 구성된 객실
- 스페셜 스위트룸 : 귀빈용

으로 나누어진다.

(2) 客室平面

객실에서의 생활존은 욕실공간, 거주공간, 취침공간으로 구획되며 복도쪽에 욕실, 창가에 리빙 스페이스(Living Space), 중간에 취침공간(Sleeping Space)을 위치시킨다. (그림 3-7) 기준객실 생활존, (그림 3-8) 객실면적수치 참조)

(3) 객실크기

기준객실 크기는 공간에 필요한 기구와 생활존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규격은 구조모듈을 형성하게 하는 호텔계획이 중요한 요소이다. 객실의 폭과 깊이는 호텔의 등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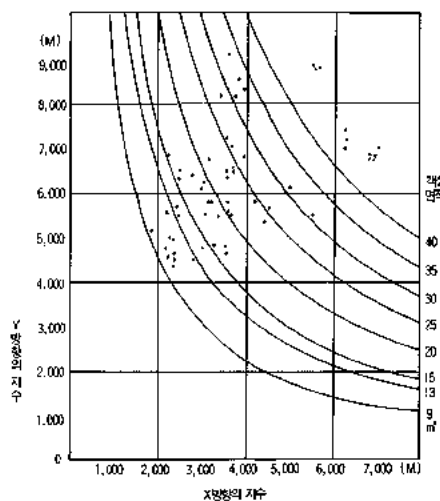
(표 3-5) 투숙객 특성에 따른 객실계획

목적	고객 유형	투숙객특성	여행목적	객실디자인요소
업무	그룹	싱글, 더블점유 2~4 일반채류 75% 남자, 25% 여자(증가) 다소 요금에 무감각	컨벤션, 회의, 협회 판매와 훈련 미팅	킹, 트윈, 더블 베드 탈의실을 갖춘 욕실 좋은작업 공간을 갖춘 라운지
	개인	싱글점유 1~2 일반채류 85% 남자, 15% 여자 요금에 무감각	단체사업 판매 컨벤션, 회의	킹베드 사위기를 갖춘 표준객실 특별한 작업공간을 갖춘 라운지
여행	가족	더블 - 플러스점유(어린이 포함) 1~4 일 체류 예산, 중간요금	가족휴가 관광 스포츠가족활동	더블, 킹소파, 안정된 룸, 라운지 공간과 TV, 관대하고 구획된 욕실 발코니, 데크, 외부접근
	커플	더블점유 1~7 일반채류 큰규모로 중간요금	여행, 클럽, 협회 구경, 영화 스포츠, 주말, 쇼핑, 휴가	킹베드 식사, 작업공간 적당한 창고 구획 된 욕실
	싱글	싱글점유 큰 규모로 중간요금, 젊은 전문인	여행, 클럽, 협회 문화, 예술, 극장, 쇼핑	킹베드 식사, 작업공간 표준욕실

(표 3-6) 기준객실 규격

	실내면적		욕실		전체객실	
	규격(M)	면적(SQM)	규격(M)	면적(SQM)	규격(M)	면적(SQM)
일 반	35X45	16.0	15X15	23	35X62	21.9
중간요금	36X55	20.1	15X23	34	36X66	29.0
일 류 급	41X58	23.8	17X26	44	41X86	35.2
호 화	45X61	27.9	23X27	6.6	45X91	41.8

(그림 3-8) 객실 면적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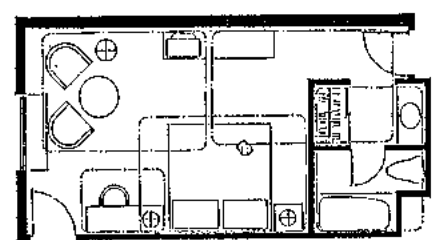


나타내는 기초로 설정되며, 리빙 에리어와 욕실로 나누어 구성되고 규격은 그들의 합계로 나타낸다. 또한 기준 객실의 규격이 국제화되므로 대표적 치수를 (표 3-6) 기준객실규격에서 제시한다

(4) 룸 믹스(Room Mix)

다양한 施行形態 즉 단체, 개인, 가족, 커플, 업무, 여행 등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는 마케팅에서 호텔경영과 호텔특성을

(그림 3-7) 기준 객실의 생활 존(Zoner)



(표 3-9) 스위트(Suit)유형 및 비율

스위트유형	거실(Bay)	침실	키	베이	%
미니스위트	1	알코브	1	15	2
회의스위트	1	1	2	2	3
주니어스위트	1	2	3	3	4
업무스위트	2	2	3	4	1
최화스위트	3	2	3	5	0.5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가 룸 믹스계획이다. 특히 현대의 호텔은 일반여행객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회합을 비롯한 사회, 문화적 행사수용은 호텔의 社會的 役割의 하나이므로 적절한 룸 믹스와 객실의 프랙시빌리티(Flexibility)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룸 믹스는 (표 3-9) 스위트 유형 및 비율과 같이 나타난다.

3) 客室層 構成

(1) 構成要因

객실층 구성요소는 객실통로(수직, 수평)와 서비스 기능인 리넨(Linnen) 및 서비스 엘리베이터, 피난계단등이 있으며 평면계획적 사항으로는

- 호텔경영상 서비스를 위한 효과적인 객실수와 룸믹스
- 호텔건축 구성적 특성에 의한 객실층 유형 선택
- 순 객실면적 구성비
- 객실동선에 있어서 보행거리와 피난계단 위치
- 엘리베이터 위치
- 객실에서의 경관
- 설비덕트, 파이프 스페이스 배려

(2) 基準層 平面形式

평면형식을 객실의 연결형식과 기준층 평면형태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면

- 선형식 - 편복도, 중복도로 분류되며 형태구성 특성에 따라 직선, 곡선, 윗선, 교차, 방사선형으로 나누어진다.
- 탑형식 - 원형,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 아트리움 - 아트리움, 변형 아트리움

으로 되며 그 구성형식에 따라 객실수, 객실규모, 순객실면적비, 계단 및 복도 등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면 다음 (표 3-10)과 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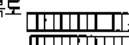
3. 共用機能

1) 機能構成

공용공간은 호텔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機能構成과 面積構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로비, 식당, 라운지, 집회 및 연회장, 오락, 휴식기능 등을 포함해서 매우 다양한 공간과 시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유형에 따른 특장을 이해하고 호텔성격에 맞는 공용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용공간을 위한 계획의 중심적인 모든 대상물은 로비주위에 집중된다.

이러한 배치는 호텔이용자들이 쉽게 다양한 시설물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공용공간은 주로 1층의 주요부분을 점유하며 2층 또는 지하 1층으로 연장하여 저층부에 위치하게 하고(특히 도시호텔) 전망을 위해 상층부에 일부시설을 배치한다. 객실은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적인 공간인 반면에 공용공간은

(표 3-10) 기준층 분석

객실층형태	객실층 객실수	크기 FT(M)	객실률 (%)	복도 (SQM)	페리미터	비고
편복도 	Varies 12-30 +	32X any length (10)	66	80 (7.5)	22~24	수직적 코어는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경제적
중복도 	Varies 16-49 +	60X any length (18)	70	46 (4.2)	1.6~1.8	두개의 계단 계획을 위한 복도는 막 다른 복도 200 ft(61m)형성
윗선형 	Varies 20-40 +	80X any length (24)	72	50 (4.6)	1.4~1.6	엘리베이터 로비로 인한 복도형
교차 						
사각형 	16-24	110X110 (34X34)	66	60 (5.6)	1.5~1.7	계획상의 문제점은 코어 객실의 접근에 있다. 적은 수의 객실
원형 	16-24	90X130 diameter (27-40)	67	45-65 (4.2-6)	1.05	층당 16개 객실의 적은 직경, 24개 객실의 큰 직경.
삼각형 	24-30	Varies	64	65-85	1.4-1.8	중앙코어는 삼각형으로 인해 충분치 않다.
아트리움형 	24 +	90+	62	95 (8.8)	1.6-1.8	오픈 볼륨은 재미있는 공간. 오픈 발코니를 창출하여 유리 엘리베이터 설치에 이점을 줌. 비상시설 필요. 불규칙한 구성속에서 형성할 있다.

共用, 公衆性을 주제로 하는 사회적, 사교적인 장소로서 호텔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적절한 공용공간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호텔의 특성을 갖는 건축적 이미지로서 해석되어 결정되며, 각 共用空間構成은 로비, 식사로, 집회, 연회, 오락, 주차공간으로 분류한다.

도시호텔에 관하여 논하면 레크레이션공간과 식음공간이 적게 나타난 것은 도심에서 주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한 관점에서 나타난 것이며 부가적 요건으로 보면 경제성장으로 도시민의 利用率 상승으로 증대되는 현상이다. 로비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적 公開空間으로서 건축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현대 도시호텔에서는 부가적 요건의 추세이다. 그러나 주차시설에 관한 것은 도시의 교통사정으로 인한 행정적 방침에 의해 지역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오늘의 도시건축물 계획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2) 各部 構成 特性

(1) 출입구

고객을 위한 호텔 출입구의 종류는 호텔 주출입구, 집회·연회장 출입구, 레스토랑,

바아, 나이트클럽, 카지노 출입구, 여행버스, 공항버스 출입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출입구는 호텔 이용자가 제일 먼저 대면하는 공간이며, 로비를 통해 각각의 공간으로 연결시켜주는 곳으로 이용자, 종업원, 수화물등의 動線區分을 하여야 한다.

대규모 호텔은 투숙객과 방문객들을 분리하기 위해, 그리고 빌딩을 통해서 불필요한 교통(통행)량을 감소시키고, 레스토랑과 다른 시설물들의 특성을 높이기 위해 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출입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로비

호텔의 많은 퍼블릭 에어리어 중에서도 로비는 손님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다. 그러므로 로비의 주요한 要素構成과 세부디자인은 손님에게 긍정적이며 오래 기억되는 인상을 주는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감명, 기능적인 감명 두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60년대의 대부분의 호텔 로비는 비교적 소규모였으나 70년대에는 컨벤션호텔이나 복합용도 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교회지역에 건설된 소규모 호텔에서조차도 대규모화되었다. 최근에는 호텔전문화와 함께

로비는 특히 더욱 중요한 내부공간으로 변화되었다.

로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출입구, 프론트데스크의 위치, 사무실 입구, 승객용 엘리베이터, 시팅 에어리어(Seating Area), 통행로, 판매장소, 고객화물을 위한 종업원 대기, 보조기능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호텔 로비에 대한 계획의 요구사항은 호텔의 유형과는 비교적 관계가 없다.

로비는 主要 通行空間으로서 프론트데스크, 엘리베이터, 식음, 출입구, 회의나 연회시설, 레크레이션 시설등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연결시켜 주도록 되어야 하며 또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

(3)食·飲 部分

일반적으로 레스토랑과 카테일 라운지는 호텔 로비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 호텔 음식서비스는 大衆들의 選好度變化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1970년대 중반에 와서 증가된 경제력의 분위기속에서 호텔산업은 진보된 레스토랑과 라운지경영에 대한 마케팅으로서 식, 음 판로가 객실과 집회의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식, 음부의 적절한 계획을 위해서는 시장분석을 하고 여행객과 도시민에 대한 취향결정을 하는 것이 호텔 식, 음부시설계획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食·飲部의 효과적 계획을 위한 목록과 호텔규모에 따른 식음부의 규모로 나타내는 그 기능계획과 규모를 규정한다. (표3-13) 호텔규모에 따른 식음부 규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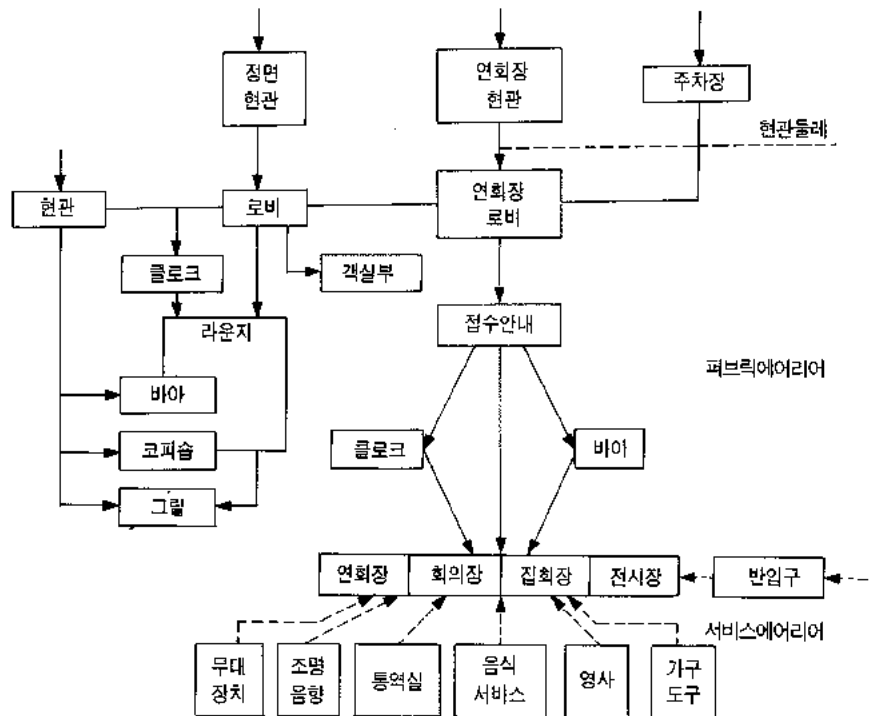
(4)集會 및 宴會부분

집회장, 연회장, 리셉션과 전시공간을 포함하며 도시 호텔에 있어 중요한 시설이다. 1세기 전에 중요한 시민사회 모임을 수용하기 위해 소개된 호텔의 집회 및 연회시설은 최근에 와서 단체와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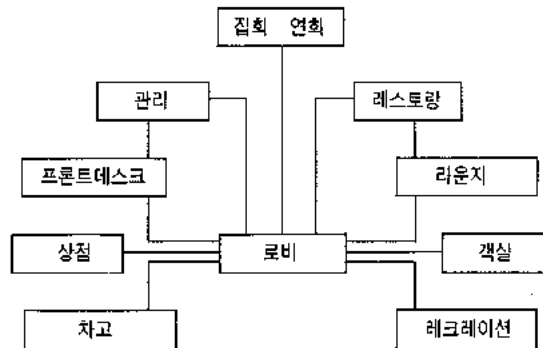
단체는 다양한 소규모 공간을 요구하고 협회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집회시설을 요구하며 세미나와 작업 그리고 전시공간을 위한 소규모 공간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 조직체들도 다양한 회의, 연회, 환영회 등을 위해 호텔 집회공간을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호텔 기업가능성(Feasibility)연구는 사업과 사회적

(그림 3-11) 출입구와 각 공간과의 관계



(그림 3-12) 로비와 인접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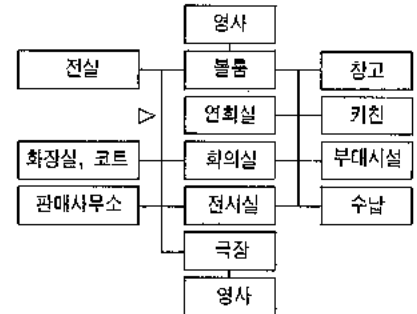
(표3-13) 호텔규모에 따른 음식부의 규모(좌석수)

객실수	200	300	400	500	750	1000
커피숍	150	225	200	200	250	275
전문레스토랑			100	125	175	175
테마레스토랑					125	125
제과점				50	50	75
키테일라운지/바	100	115	125	150	100	150
로비바아		35	50	75	75	100
바아를 포함한 레스토랑			25	25	25	25
오탁라운지					175	225

(표 3-14) 집회, 연회공간의 특성과 규모

공간	용도	호텔	좌석용량	특성
집회장	회의 연회 환영회 전시	일반호텔 휴양지, 일시 체류, 컨벤션	15~20X 객실수 05~15X 객실수 2~25X 객실수	기본성 높은 천정 직접음식제공, 기동없음
집회장전실	환영회 회의등록호출	일반호텔 휴양지 컨벤션	0.2X 집회장 0.25X 집회장 0.25~3X 집회장	모든집회장부근의 화장실, 전화 접근
회의실	회의 연회	일시체류 휴양지 컨벤션	0.2~0.4X 집회장 0.4~0.6X 집회장	A/V설치 음식제공
연회실	연회 회의 환영	일시체류 휴양지 컨벤션	0.2~0.4X 집회장 0.4~0.6X 집회장	기본성 직접음식 제공
회의실	회의 연회	일시체류 컨벤션	0.05~0.1X 객실수	좋은 마무리, 다른 회의실과 분리
전시홀	전시	컨벤션	12X 집회장	전시집근, 높은 천정 높은 천둥
극장	강연 A/V 설명회	컨벤션	0.2~0.4X 객실수	스테레오위치, A/V 설치

(그림 3-15) 연회장 기능 구성도



이용에 대한 다양한 요구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집회, 연회공간의 배합을 제시해준다.

그 특성과 규모, 구성계획을 (표3-14), (그림 3-15)로 나타낸다.

(5)레크레이션 공간

점차적으로 호텔들은 레크레이션 시설물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레크레이션 시설물들은 호텔의 공용공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도시호텔에서 헬스크럽을 포함하여 수영장등에서부터 외부 조깅트랙, 테니스, 골프연습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레크레이션 시설물은 투숙객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호텔 나름의 특징을 부여한다. 따라서 잘 고려된 레크레이션 시설은 투숙객들에게 호감을 줄 뿐아니라 호텔경영에 많은 이익을 제공하며 도심공간에 사교공간을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경영전략으로도 취급된다. 그 시설종류와 호텔유형별 시설과 설치규모를 (표3-16), (표3-17)로 정리하여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3-16) 레크레이션 시설 종류

실내시설	수영장, 선풍풍, 자쿠지(Jacuzzi), 작은풀, 리카움, 사우나, 오락실, 탁구, 당구, 리켓볼, 스쿼시(Squash), 테니스, 조깅트랙, 소규모운동장, 다용도 스포츠코트, 에어로빅 실내골프장.
실외시설	수영장, 선풍풍, 자쿠지, 작은풀(Pool), 테니스, 플레폴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왕복보트, 농구, 핸드 볼, 조깅, 동등트랙, 소규모골프, 경타구역, 골프코스, 피치, 풋볼, 해변수영, 황해보트, 모터보트, 해상, 원더서핑, 스쿠버다이빙, 스노우올 트래일, 낚시, 관광여행 보트, 유리바닥 보트, 스노우스킹, 경마, 스테이트장, 잠수

(표 3-16) 레크레이션 시설기준

종 목	SQM
수영장	75
데크면적을 포함한 전체	225
운동실	56
노틸러스 서킷(Nutilus Circuit)	37
엑스사이클(Exercycle)	4.7
로잉머신(Rowing Machine)	4.7
웨이트머신(Weight Machine)	4.7
에어로빅 교실	75
운동장	225
헬스크럽	
선풍풍/온탕(싱글)	4.7/인
선풍풍/온탕(그룹)	1.9/인
사우나	1.9/인
한증탕	1.9/인
온천(온/냉)	1.9/인
스위스사위	
루우피베스(Bath)	
허벌 램(Herbal Warp)	9.3/인
메세지	9.3/인
마사지	9.3/인
어발소/해어드라이	6.5/인
메니큐어 페티큐어	6.5/인
선풍(Sunlan)	6.5/인
인허레이터(Inhalator)	1.9/인
휴게연적	9.3/인
메디칼/스트레스 테스트	14/인

註

- 1)유럽 인(Inn); 르네상스 초기에 交易와 旅行의 증대에 따라, 육로를 중심으로 代價를 받고 食事와 宿泊서비스를 제공한 숙박시설.
- 2)Seaport Inn; 미국을 중심으로 17세기부터 항구를 중심으로 세워진 숙박시설로 미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상용호텔로서 번창, 현대 도시호텔의 기초를 이룬.
- 3)Walter A. Rutes, "Hotel Planning and Design", PP.48
- 4)"숙박시설", 장국사, 1987. pp.71

자연채광 광원으로서의 천공상태의 추정

Estimating Sky Conditions as Daylighting Source

1. 머리말

自然採光에 관한 설계나 에너지절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天空狀態를 어떻게 가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즉, 자연채광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천공의 최소설계기준이나 혹은 천공의 최저상태를 알아야만 한다. 예를들면, 어떤 사무실의 주광률을 평가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주광률(daylight factor)=실내 임의점의 주광조도÷전천공조도×100(%)의 공식에 따라 전천공조도의 값을 알아야만 주광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주광률을 계산할 때 전천공조도의 값을 보통 5,000lx로 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5,000lx는 담천공이 많이 나타나는 영국 등 북유럽지역에 적합한 값으로서 우리나라 처럼 청천공과 담천공의 중간인 중간천공이 많이 출현하는 곳에서는 이 값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야만 한다. 즉, 전천공조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주광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주광률 분포를 정확히 자연채광과 관련된 에너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전천공조도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천공상태(Sky Condition)를 알아야만 한다.

CIE 標準曇天空(CIE Standard Overcast Sky)과 標準晴天空(CIE Standard Clear Sky)모델은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다(IES, 1981) 지정학적으로 볼 때 특정한 천공상태가 강하게 나타나는 유럽 일부지역(담천공)이나 건조한 열대지역(청천공)은 한가지 천공상태가

계속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북미지역이나 한국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標準天空(Standard Sky)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표준화된 천공상태가 실제의 천공상태를 定型的으로 나타내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채광의 성능으로서 서광율이나 에너지를 평가하고자 할 때 중요한 취약점이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라 천공의 세기와 휘도분포가 변하는 非標準天空(Nonstandard Sky)이 연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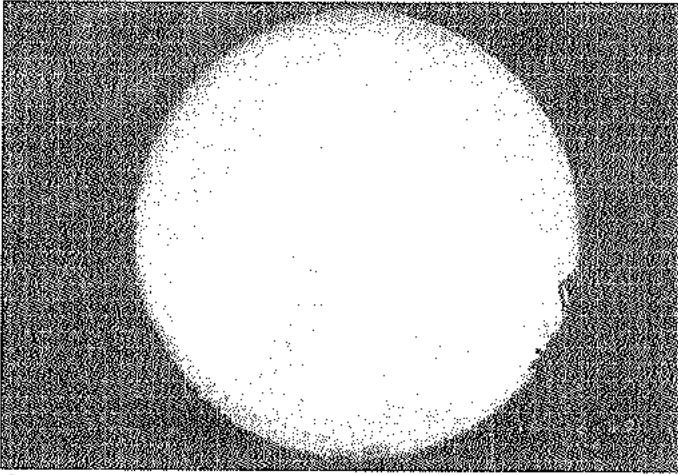
이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천공상태를 나타낸 모델이 있지만, 동적 천공상태가 갖고 있는 의미와 제한점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동안 개발된 자연채광설계용 천공상태의 예측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아직까지 자연채광설계에 적합한 천공상태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천공상태를 고려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한 것이다.

2. 天空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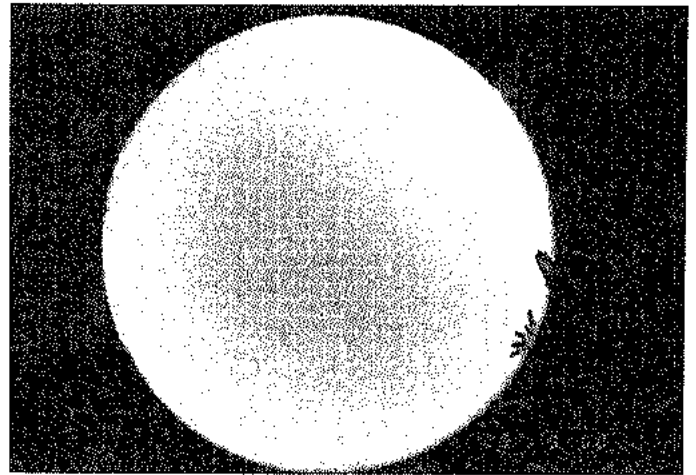
천공은 지구의 공전과 천공상태(구름, 먼지, 오염 등)때문에 항상 변하고 있다. 천공상태는 기본적으로 청천공 Clear Sky, (구름층이 30%미만인 천공), 부분담천공(Partly Cloudy Sky: 구름층이 30~70%인 천공), 담천공(Overcast Sky: 구름층이 100%로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천공)등 3가지로 분류된다. (그림 1참조)

金正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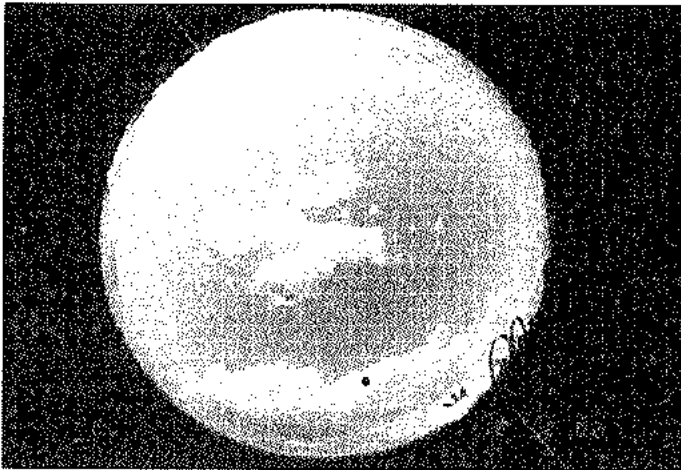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부교수 공학박사
by Kim, Jeong-Tai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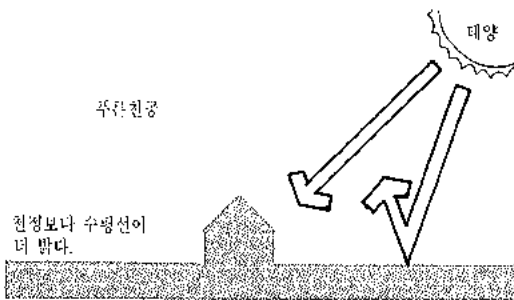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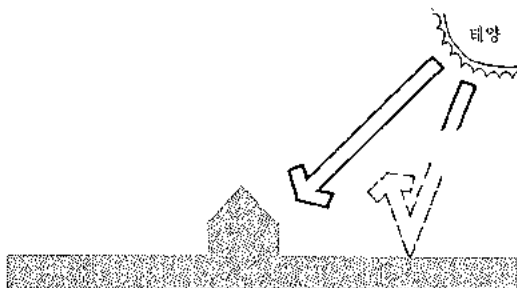
- ① <사진 1> 담천공(구름에 의하여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
- ② <사진 2> 청천공(천공에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
- ③ <사진 3> 부분담(천공에 부분적으로 구름이 나타나 있다.)

④ ⑤ ⑥ <그림 1> 천공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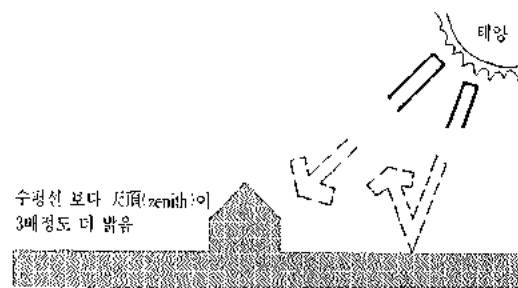
- (a) 청천공(태양이 강렬한 직사광선)
- (a) 청천공(태양이 강렬한 직사광과 천공의 확산광이 생김)
- (b) 부분 담천공(강렬한 확산광이 항상 변함)
- (c) 담천공(확산광이 생김)



④ (a)



⑤ (b)



⑥ (c)

채광의 光源은 태양이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의 直射日光(Direct Sunlight)은 변동이 심하고, 광원으로서는 직접 이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광 계획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사일광을 차폐하고, 다음과 같은 天空光(Sky Light)을 광원으로 한다.

갠 날에 태양으로부터 방사되어 지구에 도달한 빛의 대부분은 직사일광으로서 지표면에 도달하지만, 그 일부는 대기층에서 산란 또는 흡수된다. 산란된 빛의 일부는 직접, 또는 산란을 반복해서 지표면에 도달한다. 이것을 晴天光이라 한다. 흐린 날일 때 빛은 구름에서 확산 투과 또는 반사되어 지표면에 도달한다. 이 중에는 지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구름에서 반사된 빛이 있는데, 이것을 曇天光이라 한다. 청공광과 담천광을 합하여 天空光이라 한다. 또한 직사일광과 천공광을 합하여 양광(Daylight)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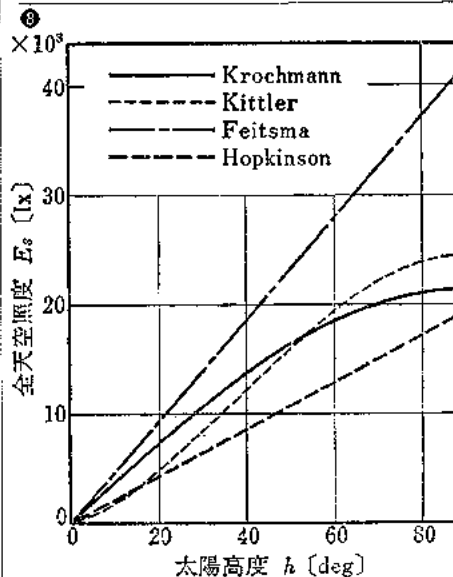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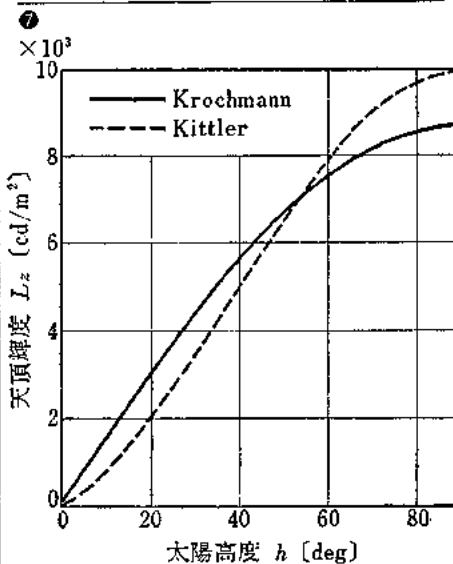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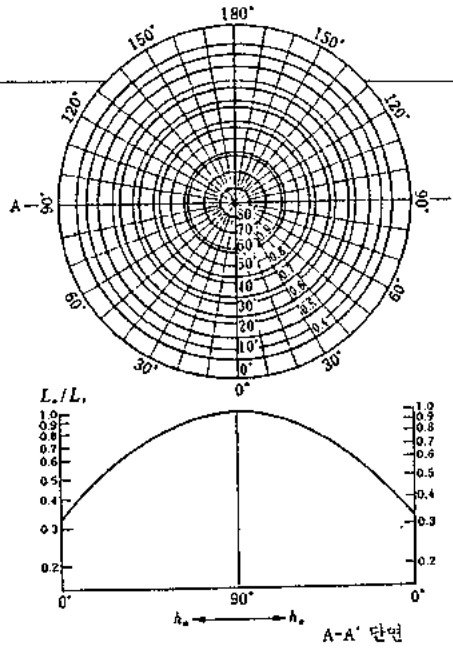
3. 표준천공상태

天空은 均等擴散面이라 볼 수 있으나, 輝度는 균일하지 않다. 따라서, 채광 설계를 위해서는 천공의 휘도 분포를 알아야 한다. CIE에서는 같은 담천공의 휘도 분포 표준으로서 1955년에 CIE標準曇天空을 청천공의 휘도 분포 표준으로서 1973년에 CIE標準晴天天空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어느 것이나 대상이 되는 천공부분 즉, 천공요소의 휘도를 천정의 휘도에 대한 비로 표시하므로, 천정의 휘도를 별도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정의 휘도에 관해서는 각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으나 그 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천공의 휘도 분포에 의해서 조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천공광의 입사를 방해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천정에서 지평까지의 全天空으로부터의 빛에 의한 수평면 조도를 全天空照度라 한다. 전천공 조도는 채광 계산의 주요한 기초 자료이다.

CIE 표준 담천공에서는 천정의 휘도를 L_z 天空要素의 휘도를 L_0 高度를 h 로 하고, 다음 식으로 휘도의 분포를 표시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2)와 같이 된다.

$$\frac{L_0}{L_z} = \frac{1+2 \cdot \sin h}{3}$$



- ⑦ (그림2) CIE 표준 담천공
- ⑧ (그림3) 曇天空의 天頂輝度
- ⑨ (그림4) 曇天空에 의한 全天空照度

이 담천공에 의한 전천공 조도 E_s 는 다음 식과 같이 된다.

$$E_s = \frac{7}{9} \cdot \pi \cdot L_z (lx)$$

天頂의 輝度에 관해서 Kittler의 案은 (식3)과 같으며, 이것을 사용해서 전천공 조도를 구하면 (식4)와 같이 된다. 이때 h 는 태양의 고도이다.

$$L_z = 3990 \cdot \left(1 + \frac{3}{2} \sin h\right) \cdot \sin h (cd/m^2) \quad (3)$$

$$E_s = 9750 \cdot \left(1 + \frac{3}{2} \sin h\right) \cdot \sin h (lx) \quad (4)$$

이것을 다른 案과 함께 표시한 것이 (그림3)과 (그림4)이다.

CIE 표준 청천공에서는 천공 요소의 휘도를 L_0 , 천정 거리를 $\cdot$ ($\cdot = \cdot / 2 - h_0$), 태양과의 角距離를 T , 태양과 천공 요소의 方位線이 만드는 각을 α , 태양의 천정 거리를 z ($z = \cdot / 2 - h_0$)로 하고, 태양 광선의 대기 중에서 산란 특성을 표시하는 T 의 함수 즉, 標準擴散 인디카트릭스 $f(T)$ 와 $\cdot$ 의 함수 $\phi(\cdot)$ 에 의해서 휘도의 분포를 다음 식으로 표시한다.

$$\frac{L_0}{L_z} = \frac{f(\gamma)}{f(z)} \cdot \frac{\phi(\xi)}{\phi(0)}$$

(그림5)는 $f(T)f(z)\phi(\xi)\phi(0)$ 을 구하기 위한 그림이다. 또 이 식에 의한 청천공 휘도 분포의 예는 (그림6)에 표시되어 있다.

Linke의 혼탁 인자 2.25부터 3.25의 대기에 관한 晴天天空의 天頂輝度에 관하여 Kittler는 다음 식을 제안하고 있다.

$$L_z = 300 = 3000 \cdot \tan h (cd/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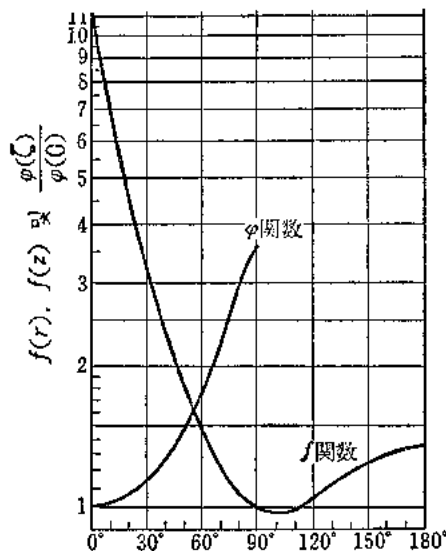
(그림7)은 晴天天空의 전천공 조도를 태양 고도에 의해서 대기 투과율별로 표시한 것으로, 대기 투과율이 크게 되면 대기 중에서 산란되는 빛의 양이 감소하며 전천공 조도도 작게 된다. (그림8)은, 北1/4의 천공광에 의한 수평면 조도 측정값의 4배를 전천공 조도로 하여 일본에서의 年間 전천공 조도의 累積出現率을 구한 것이다.

4. 非標準動的의 動的의 天空의 推定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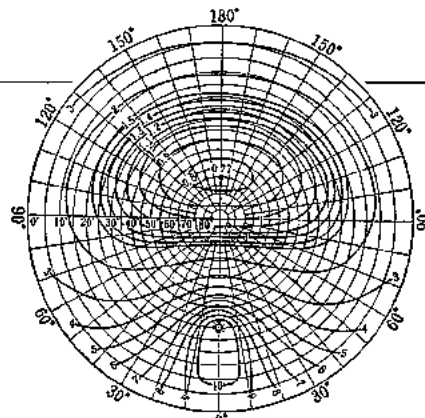
어떤 의미에서 標準天空은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다. 天空輝度分布가 이미 알려지고 공인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천공상태를 고려하지 않고도 자연채광의 설계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 설계안의 일별, 계절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융통성있는 천공표시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動的의 天空모델(Dynamic Sky Model)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융통성을 갖고 있다.

천공의 動的의 特性에 대해서는 여러 조사자들이 제안한 모델이었다. 晝光의 年間 有用性(특정한 실외휘도가 나타나는 시간의 백분율)을 나타냄으로써, 옥외조도를 특정수준이상으로 표현하여 주광의 유용성을 시간과 관련시켜 이해시키기도 한다. (Taylor, 1983; Ruck, 1983; Hunt, 1977)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단지 몇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熱的인 환절과 자연채광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에너지를 쉽게 해석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조명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접근치를 하는데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천공휘도자료의 부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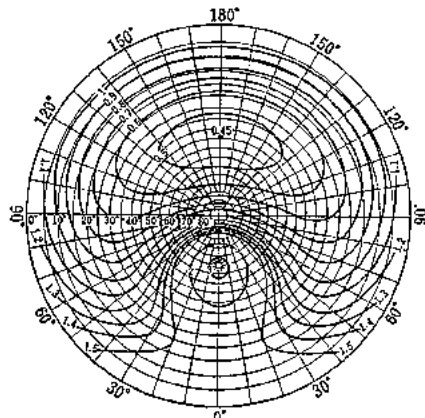
여기에 대한 한가지 대안으로서 비표준 천공용 천공휘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었다. Littlefair(1981)는 많은 수의 천공을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가중치를 줌으로써 평균천공휘도분포(Average Sky Lum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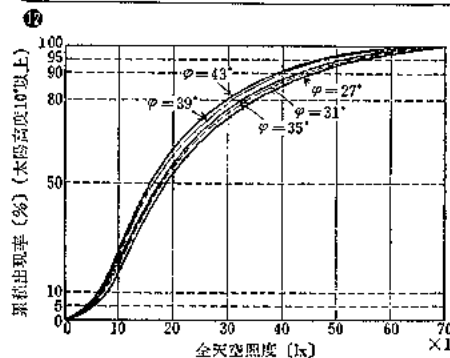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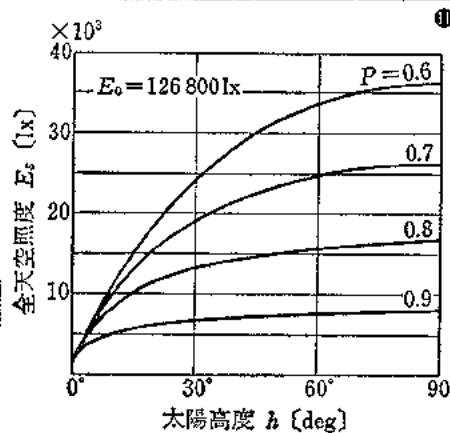
⑩



(a) 태양 고도가 30°일 때



(b) 태양 고도가 60°일 때



⑬

- ⑪ (그림5) f 함수와 ϕ 함수
- ⑫ (그림6) CIE 標準晴天空의 輝度分布
- ⑬ (그림7) 晴天空에 의한 全天空照度
- ⑭ (그림8) 全天空光에 의한 水平面照度の 累積出現率 推定値(伊藤・大野)

Distribution)라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러나 이것이 표준천공모델보다 더 천공을 잘 나타내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비슷한 성격으로서 Nakamura와 Oki(1983)는 평균천공(Mean Sky)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청천공과 담천공사이의 중간정도 상태를 천공휘도로서 표현한 것이다. 또한 Pierpoint(1984)는 다양한 이론과 실험적으로 측정된 자료를 조합하여 부분담천공 휘도분포(Partly Cloud Sky Luminance Distribution)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천공휘도모델은 시간별 기후데이터 정보와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시간과 관련된 자연채광 성능을 고려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열적문제와 자연채광해석을 통합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분석도구들은 많이 증가하였고 또 세련되었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데 컴퓨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기후데이터가 요구되었다. 그 결과 북미의 많은 도시들에 대해서 特定時間別 氣候資料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후데이터와 같은 정보들은 지난 25년동안 많이 증가되었지만, 아직도 자연채광용 정보들은 확실하게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재 시간별 기후데이터의 일부인 일사량 자료로부터 추출되고 있다.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제안된 것은 일사량과 주광휘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관관계들은 천공을 청천공이나 담천공일 경우로 가정한 것들로서 천공휘도분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천공의 구름량은 천공의 휘도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천공의 구름량은 직사일광뿐만 아니라 천공의 밝기 강도를 감소시킨다는 것(Dave, 1977; Dogniaux,

1975; Nagata, 1983)이 증명됨으로써 천공의 구름량을 고려한 동적 천공상태의 추정방법이 연구 되고 있다.

천공에 구름이 있으면 직사일광이 감소되어 천공의 휘도특성이 변화된다. 구름이 천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全水平面의 日射量の 擴散比가 유용한 자료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구름비(Cloud Ratio:CR)라고 하는데 일사량 자료만 가지고도 천공의 구름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일 CR이 약 1.0이라면 천공은 담천공으로서, 천공이 확산일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CR이 약 0.1이라면 청천공임을 알 수 있다.

CR은 기존의 기상자료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데, CR은 천공의 구름량이나 혹은 천공의 대기투과 정도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유용한 기상자료가 있다면, CR로서 어느 순간의 대략적인 천공휘도를 나타낼 수 있다. CR은 시시각각 변하는 천공상태를 연속적으로 측정해야하므로 다음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시시각각 변하는 천공의 다양한 구름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動的 天窓狀態를 알 수 있다.
- ②CR은 넓은 범위의 기상 상태에 대하여 대기의 減少測定單位로서 사용가능하다.

따라서 CR은 천공의 구름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CR은 실제의 천공분포를 완전한 천공모델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천공표현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①천공은 동일하다. 즉 전체 천공에 나타난 구름층은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 ②천공은 等方性이다. 즉 천공은 모든 방향으로 항상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맑고 푸른 천공에 나타나는 불규칙한 구름은 위의 두 가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적인 상태의 천공휘도분포는 사실상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 상세하게 취급하기에는 정당성이 부족하다(Dave, 1977)

만일 이러한 제한적인 가정 요소들을 받아들인다면, 연속적으로 변하는 동적천공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시간별 천공휘도도 나타낼 수 있다. 이 점에서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제안된 것은 일사량과 주광휘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관관계들은 천공을 청천공이나 담천공일 경우로 가정 한 것들로서 천공휘도분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천공의 구름량은 천공의 휘도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천공의 구름량은 직사일광 뿐만 아니라 천공의 밝기 강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천공의 구름량을 고려한 동적 천공상태의 추정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CR만이 구름량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Dogniaux(1975)는 Linke의 混濁因子를 大氣減少指數로서 제안하였다. 반면에 Nagata(1983)는 대기의 직접투과율 제안하였다.

사실 Linke의 혼탁도와 Nagata의 대기투과율은 천공의 청정도를 측정하는데는 유효하지만, 구름이 있는 천공에서는 사용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태양에 대해 수직으로 측정하였을 뿐 태양 이외의 나머지 천공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들을 기존의 기상자료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용할 때에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5. 서광조도와 서광 유용성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시간별 서광조도는 시간별 기후데이터로부터 보통 두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 ①태양고도와 천공상태(청천공, 담천공)를 수평조도 및 수직조도와 상관관계시키는 것이다(Gillette와 Pierpoint, 1984; Kimball과 Hand, 1922)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우리들이 시간에 따라 느끼는 천공의 구름량을 연속적으로 가정하지 못하고 있다.
- ②보다 직접적인 수법은 發光效率(luminous efficacy) 어프로치를 이용하여 조도를 太陽放射束과 상관관계시키는 것이다. 즉 자연채광에 응용하기 위해서, 光效率를 光束(luminous flux)과 방사광속의 比로 정의하는 것이다.

NBS(National Bureau of Standards)에서 수년간 시간별로 천공을 측정한 결과 주광의 발광효율은 CR과 비슷한 상수를 갖고, CR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기 감소량의 영향도 약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Gillette와 Treado, 1985).

천공휘도의 추정은 이보다 약간 더 복잡하다. Gillette(1983)는 항상 변하는 천공을 변수로서 고려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상태기법을 고안하였다. 여기서는 구름비에 따라서 두가지 천공상태사이의 평균값을 시간별로 구하였다.

천천공과 담천공상태의 휘도값을 標準天窓方程式과 晴天輝度率로부터 구하는 방법도 문헌고찰을 기준으로 제안되고 있다. 아마도 천공의 휘도분포를 정확하게 시간별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動的 非標準 天窓(Dynamic Nonstandard Sky)상태를 수치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1980년 이전에 영국에서 자연채광 계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데이터는 NPL(National Physical Laboratory)에서 측정한 1933-1939년 사이의 런던 태딩론지역 자료였다. 이 자료는 IES의 "Technical Report NO.4: Daytime Lighting in Buildings"(1972)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료가 만들어진 이후, 1956년 Clear Air Act 때문에 특히 런던 內州部地域의 대기조건은 변하였다. 예를 들면 런던 도심부에 있어서 12월 한달동안 평균적으로 맑게 해가 비치는 시간은 1958-1967년사이의 값이 1931-1960년 사이의 값보다 평균 75%나 증가하였다고 Jenkins(1969)는 밝혔다. 비록 런던의 外州部와 시골지역은 런던 內州部만큼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12월 이외의 달(月)을 고려할 때, 이 자료는 디자이너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천공자료를 제시한 것이 Hunt(1979)이다. 이것은 1964-1973년사이의 10년 동안 Kew와 Bracknell지역에서 나타난 옥외 총조도(태양과 천공으로 인한 빛)와 擴散水平照度(천공만에 의한 빛)를 구한 것이다. 1977년말까지 영국에서 실외 총조도는 Lerwick 등 6개 지역의 값이 측정되었지만, 확산조도는 바로 위의 2개 도시

뿐이었다.

이 자료는 특히

작업시간(09:00-17:00)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그래프와 표로서 나타내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① 10년 동안 매일 측정한 시간별 조도값
- ② 이 조도값은 1분간격으로 60번 측정하여 계산하였음
- ③ 매일의 24시간 값을 수집하여, 월·일·시간별로 나타나는 각 조도값을 빈도수 표로서 나타내었다.

이 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자연채광이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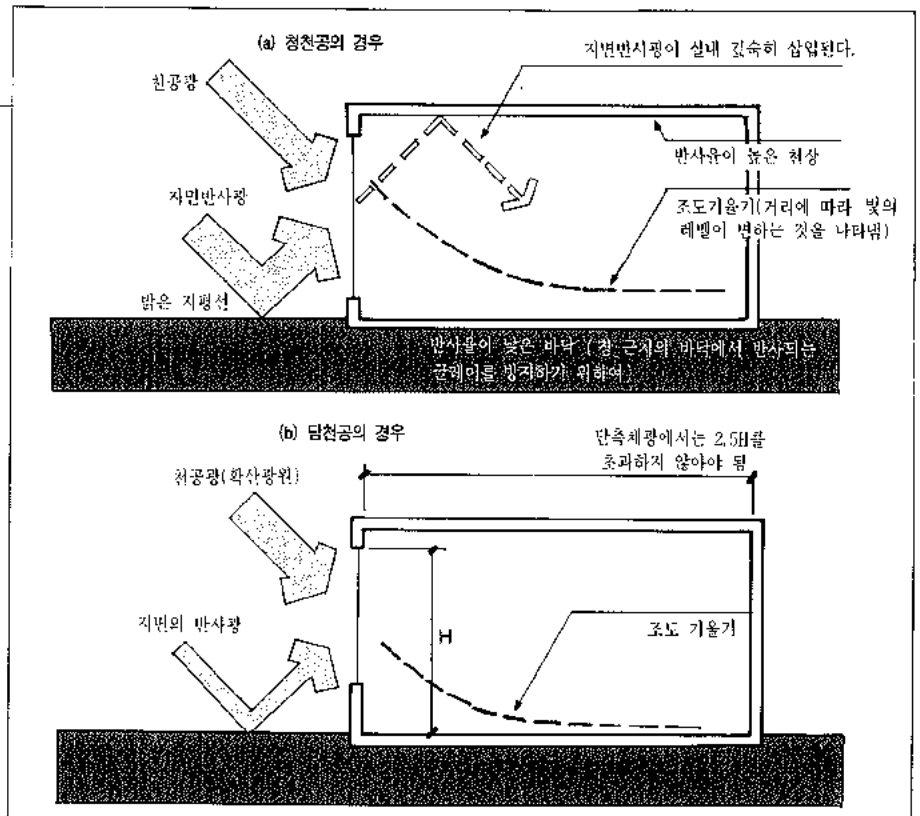
- ① 특정한 조도값이 발생하는 빈도수를 알므로 인공조명시의 수동조절 시스템을 예측할 수 있다(Hunt, 1979)
- ② 특정한 조도값이 초과적으로 발생하는 빈도수를 알므로 인공조명시 光電點減裝置로 인한 에너지 절감율을 예측할 수 있다(Hunt, 1977).
- ③ 누적 Kiloluxhours를 알므로 광전점감장치로 인한 에너지 절약량을 예측할 수 있다(Crisp, 1980, 1983).

그 동안 영국에서 사용한 방법들은 천공모델상태를 이론적으로 계산하거나, 혹은 태양고도, 일사량 및 다른 기상요소들 조도와 관련시켜 통계적인 관계식을 유도하는 것들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 ① 대기모델(청천공)의 계산(Blackwell, Eldridge 및 Robinson, 1954)
- ② 구름량과 조도와 관계의 모델화(Tregenza, 1980)
- ③ 태양고도와 조도와 관계(Hopkinson, Peterbridge 및 Longmore, 1966; Littlefair, 1981; Crisp와 Lynes, 1980)
- ④ 태양방사와 발광효율(Atkins와 Poole, 1936; Blackwell, 1953, 1954, 1966)
- ⑤ 일사량과 조도와 관계(Taylor와 Smith, 1961)
- ⑥ 다른 기상요소와 조도와 관계(Atkins등, 1947, 1951, 1952; Taylor와 Smith,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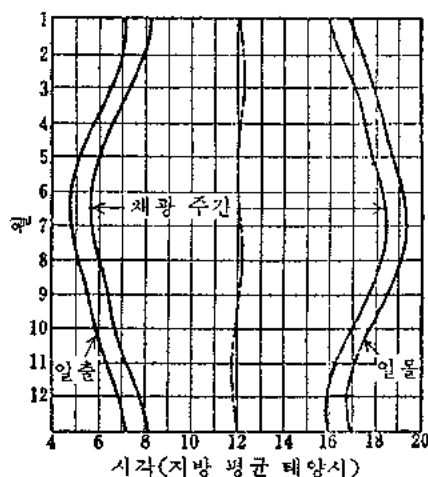
6. 천공상태와 채광방식

주광은 일별, 계절별 변화 같이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구름층, 대기오염 및 기타 기후변화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이 있다.



⑩ (그림 9) 천공상태와 채광방식

⑪ (그림 10) 採光量圖 (북위 35°)



⑫

그러나 천공상태(청천공, 담천공)에 따라 채광방식에 바뀌는 것을 많은 경우에 볼 수 있다.

청천공(구름층이 30미만)은 건축공간에 촛점, 음영 및 질감의 형태를 잘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청천공일 경우 지평성 부분은 천정보다 약 12배 정도 더 밝다. 따라서 주광을 실내 깊숙히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고창개구부와 같은 축창채광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천공(구름층이 100%로서 태양이 보이지 않음)은 지평성 부분보다 천정이 3배정도 더 밝다. 따라서 담천공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주광을 실내에 효과적으로 유입·분포시키기 위해서는 천창채광(예: 천창, 정측창)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것에 대한 자연채광의 설계 예와 설계수법에 대해서는 "Natural Light, AIA Journal, September 1979, pp. 49-93"를 참조하길 바란다.

7. 자연채광 설계용 천공조도

채광계획의 광원이 되는 천공의 휘도는 계절이나 시각, 天候 등에 따라 계속 변동한다. 이에 따라 실내의 빛의 상태도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빛의 광도 그 분포를 계산할 때는 설계용 기준조도가 필요하다.

일출이나 일몰 전후의 태양고도가 낮을 때는 천공 회도가 작게 되어 평면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10° 이상인 천공을 채광에 유효하다고 보고, 그 시간대를 채광주간이 한다. <그림10>은 북위 35°의 채광주간이다. 실제의 채광 계획에서는 건물의 용도나 사용 시간대, 사용빈도 등도 합하여 채광을 필요로 하는 시간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채광설계의 기본개념은 옥외의 최저조도에 대하여 실내에 필요한 최저조도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최저값을 얼마로 하느냐가 큰 과제이며, 주광조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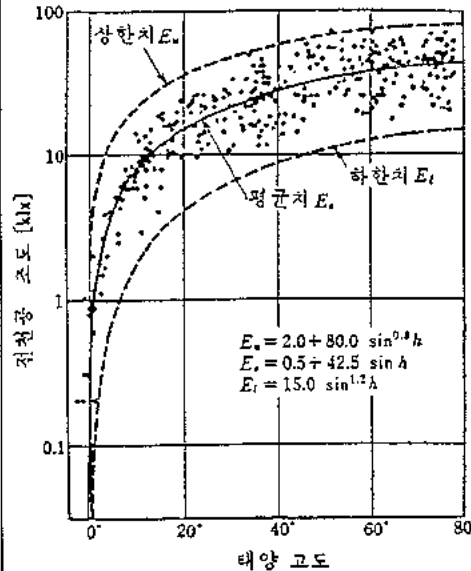
옥외의 전천공조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설계기준은 통계적인 근거에 의한다. 조명의 목적과 허용조건에 따라 10번째 또는 15번째 퍼센타일(Percentile)의 조도가 설계기준으로 사용된다. 그 이유는 이 값이 주광조명시간의 90% 또는 85%를 초과하므로 이 시간 동안의 자연광으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너무 지나치면, 네거티브 조절(커튼이나 블라인드의 사용)이 필요하며 나머지 10% 또는 15%의 시간을 위해 건물내에 충분한 주광을 제공하자면, 다른 관점(열손실 또는 태양열 획득)에서 볼때 파다한 장면적이 필요하게 된다. 사실 10%나 15%의 시간은 행동적응이나 전기조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11>은 한 지역의 각종 천공 상태에 대하여 실험치와 세계각지에서 연구 결과에 의해 태양 고도의 함수로서의 전천공 조도의 상한치와 하한치 및 평균치를 추정한 것이다. <그림12>는 1일의 작업 시간을 8시간으로 했을 때의 전천공 조도의 연간 출현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11>에 표시한 상한치, 하한치, 평균치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표1>을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것을 설계용 全天空照度로 채택하느냐는 설계자의 의도에 달려 있으나 일반적으로 5,000~8,000lx 정도가 직감적으로 적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일본건축학회에서 규정한 자연채광설계용 전천공조도의 기준은 <표2>와 같다.

8. 맺는말

천공상태를 자연채광 설계용으로 추정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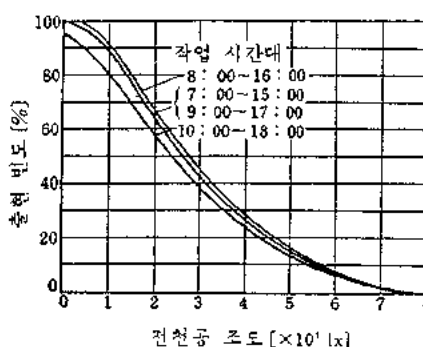
16

<표1> 지역별 자연 채광 설계용 전천공조도

지 역	위 도	조 도(lx)
런 던	52	5,000
하 바 트	43	5,500
멜 보 른	38	7,000
시 드 니	33	8,000
부리스베인	27	10,000
다 린	12	15,000
나이 로비	1	18,000

<표2> 설계용 전천공조도(lx)

특히 맑은날(구름이 많은 정전)	50,000
맑은날	30,000
보통날	15,000
어두운 날	5,000
매우 어두운 날(눈오는 날)	2,000
계획한 천공	10,000



17

자연채광에서 주광률이나 에너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융통성있는 천공모델이 요구된다. 그 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일사량을 주광조도 및 천공회도와 상관시킴으로써 천공의 시간별 경향을 추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즉, 현재 이용가능한 시간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일사량을 주광조도와 상관시킬 때 가장 성공적인 결론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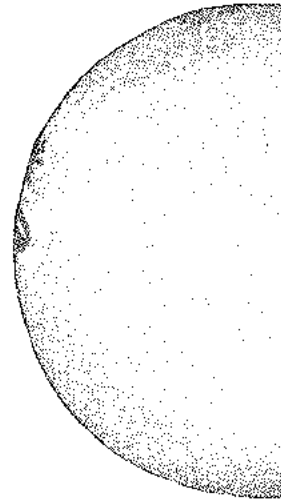
16 <그림11> 전천공 조도의 상한치·하한치 및 평균치

17 <그림12> 전천공 조도의 출현빈도 (북위 35°, 동경 135°)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초기 디자인단계에서는 CIE에서 표준화한 정적 천공(Static Sky; CIE 담천공)상태가 극단적인 천공상태를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화평분포는 실제의 천공상태를 일반화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천공상태를 어느정도 완전하게 대표한 것으로서, 動的인 자연천공상태를 고려하지 않고도 자연채광의 설계대안들을 비교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천공은 靜的 光源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動的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채광에서 주광률이나 에너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융통성있는 천공모델이 요구된다. 그 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일사량을 주광조도 및 천공회도와 상관시킴으로써 천공의 시간별 경향을 추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즉, 현재 이용가능한 시간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일사량을 주광조도와 상관시킬 때 가장 성공적인 결론이 나타났다. 또한, 구름량을 측정하여 CR의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CR과 천공의 저하되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천공의 회도를 평가하는데 Crdms



성공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부분 담천공과 중간천공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어 왔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러한 천공상태의 휘도분포를 제안하였지만 이러한 非靜的 天空狀態를 하나의 간단한 모델로서 실제상황을 묘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비표준 천공과 동적 천공상태를

추정하는 방법들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 현재는 이러한 動的 天空狀態를 다루는 수단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自然採光 設計用 天空狀態의 추정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아 주광율의 평가나 자연채광이 에너지 절약에 미치는 영향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1. IES Lighting Handbook, Reference Volume, Th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New York, 1981.
2. Taylor, S.M., "Regional Variations of Daylight Availability... A Review of Measured Data and Estimating Methods", Lighting Research and Technology, Vol.15, NO.3, pp.151-156, 1983.
3. Ruck, N.C., "Daylight Climate in Australia"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CIE), 20th Session, Amsterdam, August 31-September 8, 1983.
4. Hunt, D.R.G., "Simple Expressions for Predicting Energy Savings from Photoelectric Control of Lighting", Lighting Research and Technology, 9(2), pp.93-102, 1977(Also BRE Current Paper CP32/77.)
5. Littlefair, P.J., "The Luminance Distribution of an Average Sky" Lighting Research and Technology, Vol.13, No.4, pp.192-198, 1981.
6. Nakamura, H. and Oki, M., "Composition of Mean Sky and Its Application to Daylight Prediction"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CIE), 20th Session, Amsterdam, August 31-September 8, 1983.
7. Pierpoint, W., "A Simple Model for Daylighting Conference, Phoenix, February 1984.
8. Dave, J.V., "Validity of the Isotropic Distribution Approximation in Solar Energy Estimation" Solar Energy, Vol.19, pp.331-333, 1977.
9. Dogniaux, R., "The Availability of Daylight", CIE Technical Report NR, Prepared for the Daylighting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CIE), 1975.
10. Nagata, A., "Luminance Distribution of Clear Sky and the Resultant Horizontal Illuminance", International Daylighting Conference, Phoenix, February, 1983.
11. Gillette, G., Pierpoint, W., and Treado, S., "A General Illuminance Model for Daylighting Availability", Journal of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Vol. 13, No.4 pp. 330-339, July 1984.
12. Kimball, H.H. and Hald, F.F., "Daylight Illumination on Horizontal, Vertical and Sloping Surfaces", Monthly Weather Review, Vol.50, No. 12, pp.615-628 December 1922.
13. Gillette, G. and Treado, S., "Correlations of Solar Irradiance and Daylight Illuminance for Building Energy Analysis", presented at the ASHRAE Semi-Annual Conference, Chicago, January 1985.
14. Gillette, G., A Daylighting Model for Building Energy Simulation, NBS Building Science Series 152, National Bureau of Standard, March 1983.
15. McDermott, L.H. and Gordon-Smith, G.W., "Daylight Illumination Recorded at Teddington", Proceedings of the Building Research Congress, Division 3, Part III, pp. 156-161, 1951.
16.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Daytime Lighting in Building", IES Technical Report No. 4, London, IES, 2nd Edition, July 1972.
17. Jeckins I., "Increase in Averages of Sunshine in Greater London", Weather, 26, pp.52-54, 1969.
18. Hunt, D.R.G., "Availability of Daylight",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Current Paper, Garston, Bre, 1979.
19. Hunt, D.R.G., "Improved Daylight Data for Predicting Energy Saving From Photoelectric Controls", Lighting Research and Technology, 11(1), 1979.
20. CRISP, V.H.C. Photoelectric Control of Light... Case Studies, Proc CICC Conf Experience of Energy Conservation in Buildings, Nottingham, 1980.
21. CRISP, V.H.C., "Lighting Controls to save Energy", International Lighting Review, 34(1)16-21, 1983.
22. Blackwell, M.J., Eldridge, R.H. and Robinson, G.D., Air Min. Met. Res. Cttee. M.R.P. No.894, 1983.
23. Tregenza, P.R., Lighting Research and Technology, 12(3) pp. 121-128, 1980.
24. Hopkinson, R.G., Petherbridge, P. and Longmore, J., Daylighting Heinemann, 1966.
25. Crisp, V.H.C. and Lynes, J.A., Proceeding CIBS National Lighting Conf. Canterbury 1980.
26. Atkins, W.R.G. and Poole, H.H. Proc. Roy. Soc. Series B 121, pp1-17, 1936.
27. Blackwell, M.J., Air Min. Met. Res. Cttee. M.R.P. No.831, 1953.
28. Blackwell, M.J., Air Min. Met. Res. Cttee. M.R.P. No.895, 1954.
29. Blackwell, M.J. Proc. Brit. Ecological Soc., Symp. No.6, 1965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Oxford), 1966.
30. Taylor, S.M. and Smith, L.P., Met. Mag. 90, pp289-294 1961.
31. Atkins, W.R.G. and Ellison, M.A., Proc. Roy. Soc. Series A 191, pp467-484 1947.
32. Atkins, W.R.G. Q.J.R. Met. Soc. 77, pp.659-662 1951.
33. Atkins, W.R.G. and Jenkins, P.G., Q.J.R. Met. Soc. 78, pp.70-75, 1947.
34. Kinsbury, H.L., Anderson, H.H. and Bizzaro, V.U., "Availability of Daylight" Illuminating Engineering, pp.77-85, February 1957.
35. Gillette, G. and Treado, S., "The Issue of Sky Conditions", Lighting Design and Applications, pp.23-27, March 1985.
- 36.金正泰, "建築照明", 技文堂, 1984.
- 37.李瑞會, "建築環境計劃", 文通堂, 1987.

대치·수서1지구 시영 아파트 현상설계

서민주거의 안정과 개선을 위하여 도심생활권에 근접한 도심권 지역에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건립코자 대치지구와 수서1지구에서 시영아파트의 설계경기가 실시되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한 이 설계경기의 응모등록은 1989년 5월 3일부터 3일간, 응모 안의 접수는 6월 15·16일 양일간에 이루어졌으며, 국내 유수의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총 27개안이 응모됐다.

먼저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대 43,450평 규모의 대지에 4,200세대 이상의 주거 및 기타 부대시설이 요구되었던 대치지구에서는 천일건축(한규봉)안이 당선작으로, 건원건축(곽홍길)의 안이 가작으로, 범한건축(최광수)안과 서울건축(엄웅)안이 입선으로 각각 발표되었다.

강남구 일원동과 수서동 일대 24,291평 규모의 대지에 2,600세대 이상의 주거 및 기타 부대시설이 요구된 수서1지구에서는 예성건축(이영일, 김상경)안이 당선작으로, 범한건축(최광수)의 안이 가작으로, 서울건축(엄웅)안이 입선으로 발표되었다.

동일 단지내에서 분양 및 영구, 장기 임대아파트가 동시에 고려된 금번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12평 이하의 소형가구는 앞으로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이웃가구와의 벽을 허어서 두배로 늘일 수 있도록 '확장형'으로 설계된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또한 시영아파트로서는 처음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계획하여 녹지비율에 있어 대치지구는 40%, 수서1지구는 35%로 높여 설계되었다.

당선작

(주)천일종합건축(대표:한규봉)

계획의 개념

- 토지이용률 극대화를 위해 평탄한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고층 고밀화 주거개념
- 유지관리효율상 영구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분양주택을 근린분구개념으로 배치구성
- 근린분구는 중앙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4개의 인보구로 형성
- 주거지 내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중앙녹도를 적극 도입하여 단지 전체의 일체감 형성 및 통학로 기능부여
- 단지의 조형성과 조망을 위해 남향위주로 하되 주동배치에 변화를 줌으로써 위요공간 형성
- 다양한 수요층을 위해 가변성있는 단위평면개발
- 단지 주전입부에 넓은 오픈 스페이스 확보로 입구부분의 혼재 방지

- 지하주차장 확보로 단지내 녹지공간 증대
- 영구임대주택의 지하공간을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등 다목적으로 활용

단위 주거군 계획 가단위규모

- 주거군의 단위규모는 인보구 단위의 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4개의 인보구를 중앙녹지공간을 중심으로 배치
- 1개의 주거군은 300~400호 기준으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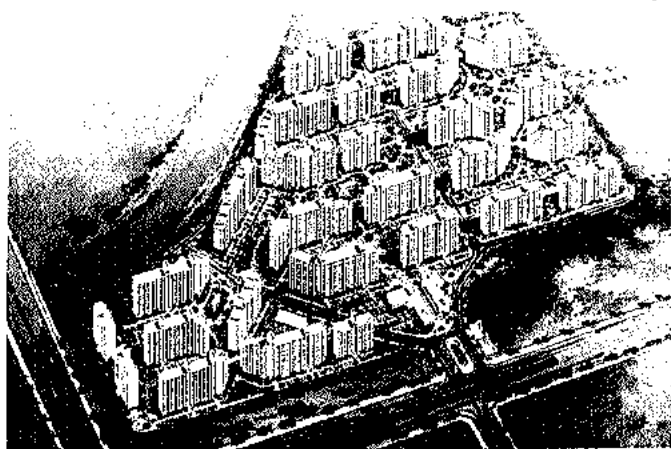
나)영역성

- 주거에 대한 소속감과 친근감을 부여하기 위해 시간적으로 용이하게 구분되는 특색있는 외부공간구성
- 외부공간의 영역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간, 준공공공간, 개인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

대치지구

- 위치: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대
- 대지면적: 143,650㎡ (43,450평)
- 도시계획사항: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 건립세대규모: 4,200세대 이상 기타 부대시설

- ① 당선안 배치도
- ② 생활권 단위 평면도
- ③ 단지 계획도
- ④ 단위 평면도



- 단위주동 출입시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부의 다양한 접근형태 도입

다)동선 및 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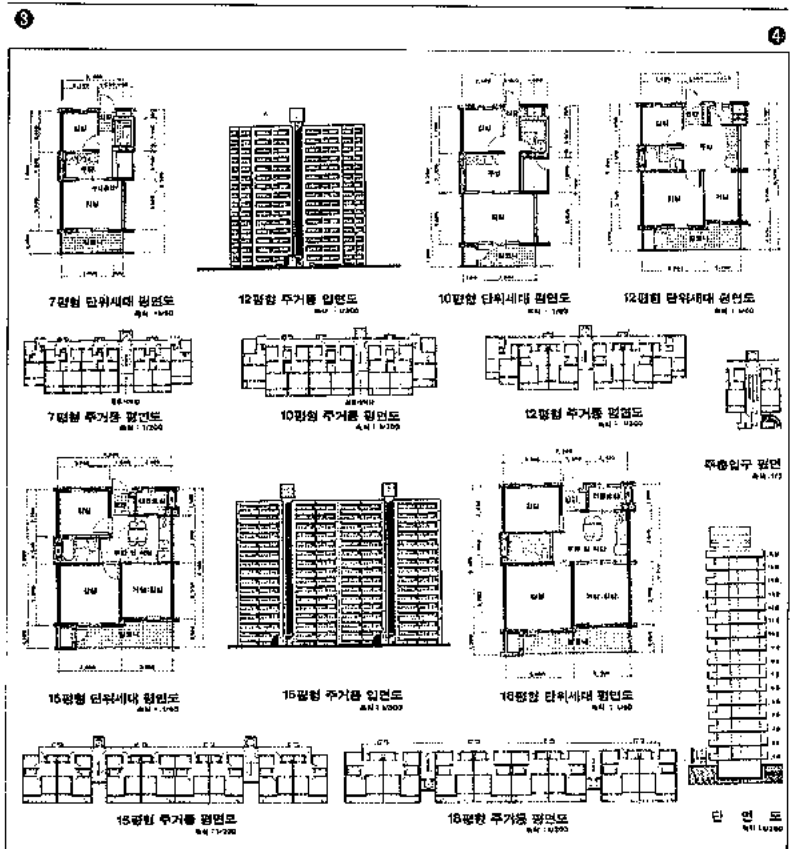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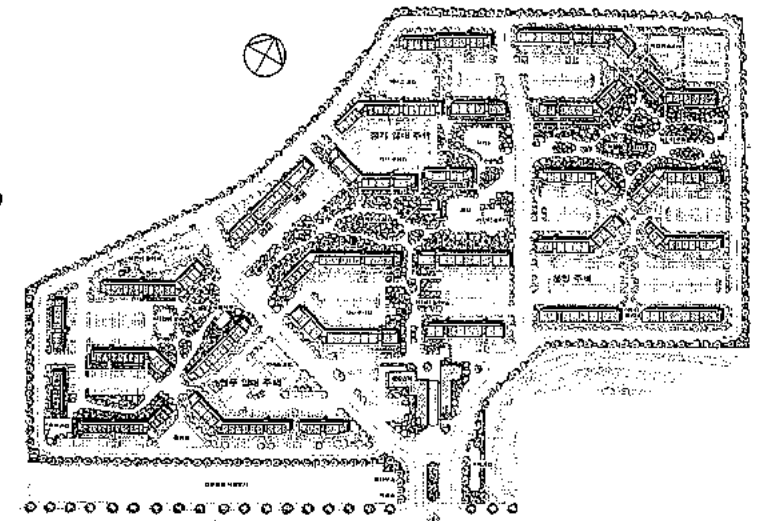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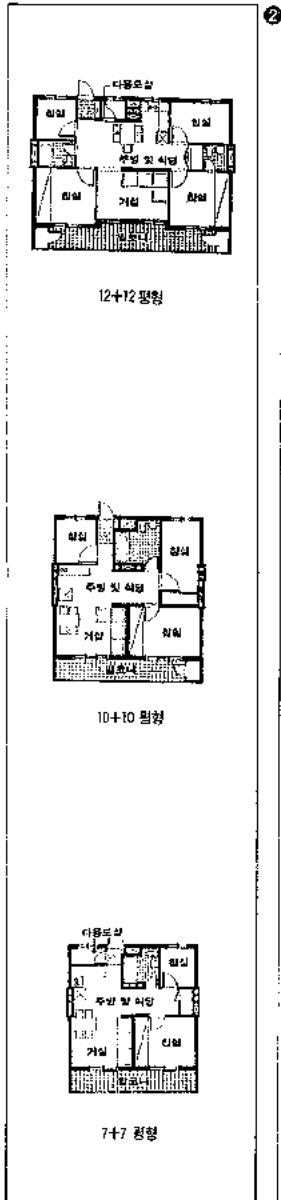
- 주보행자 동선은 단지 입구에서 중앙광장을 통해 동서의 보행자 녹도를 중심으로 동선처리
- 동선의 체계에 따라 각주거군으로의 진입부처리에 다양성 부여
- 주차의 진입부분을 집단화하여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지하주차장 설치로 주차수요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
- 램프, 난간, 보도 등의 유연성 있는 계획으로 장애자에 대한 계획적 배려

라)조망 및 채광

- 확실적인 주거동 배치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거동의 군집화계획
- 주거동의 층변화로 개방성 및 다양성 확보
- 남향위주의 배치로 채광에 대한 고려

단위평면계획

- 토지이용의 고밀화를 위해 복도형 고층화계획
- 소규모 평면(7평, 10평, 12평)은 병합 가능하게 가변성 구조로 채택
- 채광과 일조가 양호한 모서리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면계획
- 가족구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위 평면에 가변성 부여
- 단위 평면의 효율적 활용으로 수납공간증대
- 실비의 집약화와 체계있는 배치로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
- 소규모 평형(7평, 10평)은 각호 서비스 스페이스를 공동, 집약화하여 주생활 공간의 확충(공동세탁장→계단침에 설치)
- 굴곡형 주동 계단실에 화물용 승강기 설치



입면계획

- 층수 변화의 도입으로 개방감 확보와 입면의 변화시도
- 추벽 및 계단실에 다양한 텍스처의 처리와 수퍼그래픽 도입
- 매스간의 단절 및 연결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단위 주동의 이미지 강조와 전체단지의 조화

외부공간계획

- 주거지 내부에 풍부한 녹지조성으로 전원적 주거환경 조성
- 동서간 중앙녹도를 주축으로 공원, 녹지를 체계적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유기적 휴게공간 구성

- 보차분리의 개념으로 공간 영역성의 명확한 구분
- 단지 분구별로 다양한 식재 패턴 및 색채 계획으로 특성을 부여하고 공공 공간을 두어 이웃간의 유대관계 증진
- 휴게, 편의시설 및 안내·표지시설의 적절한 배치로 편리성과 단지 식별성 도모
- 주거동의 다양화로 외부공간의 변화성 유도

중심시설계획

- 부지 중앙 절절점에 넓은 중앙광장을 설치하고 주변에 풍부한 휴게공간 조성
- 보행 녹지는 중앙광장을 축으로 동쪽 학교부지와 연결
- 종합상가는 집중형으로 단지입구에 설치하여 남측 근린생활시설과 연관성 있는 계획
- 종합상가는 단지 전체 배치 흐름과 보행자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중앙 쇼핑몰을 중심으로 2개동으로 구분하여 배치

가작 (주)건원종합건축사(대표 : 곽흥길)

계획의 개념

- 초고층의 타워형 아파트를 강변에 배치하여 단지의 상징성과 용적율을 개고
- 근린공원과 강변을 강한 녹도로써 연결하여 주민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임
- 단지 주진입부 및 공원 연결부분에는 주구센터와 광장을 위치시켜 주민생활의 중심의 장이 되도록 계획
- 타워형 아파트는 초고층에 다른 용적을 중대로 별도의 지하주차장을 두고 지상부분은 녹지공간으로 계획
- 건물의 주된 향은 남향위주로 하되 부분적으로 남동향과 동향으로 계획
- 동향세대의 1층 부분은 피로티화하여 공간의 위계에 따라 분리와 연결 모색
- 건물 층수 계획은 강변부분은 25층, 단지내부는 15층, 단지입구부분과 공원 인접부분은 12층으로 하여 스카이라인의 변화 추구
- 상가시설은 단지과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위치하고 있어, 규모를 축소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부대시설은 주 녹지축에 위치시켜 이용의 편리성 도모
-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은 각 권역별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중앙에 소운동장이 위치하도록 하여 모임의 장을 마련

(주)건원종합 건축사

⑤ 단지현상면도

⑥ 부지도

⑦ 단지 계획도

범한종합 건축사

⑧ 부지도

⑨ 단지 계획도

부지조성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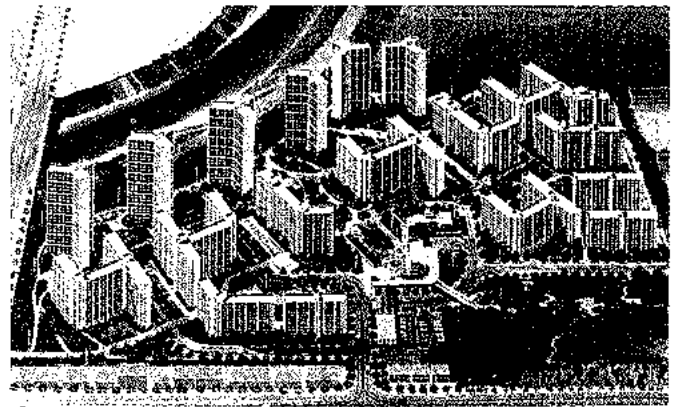
서울건축종합건축사

⑩ 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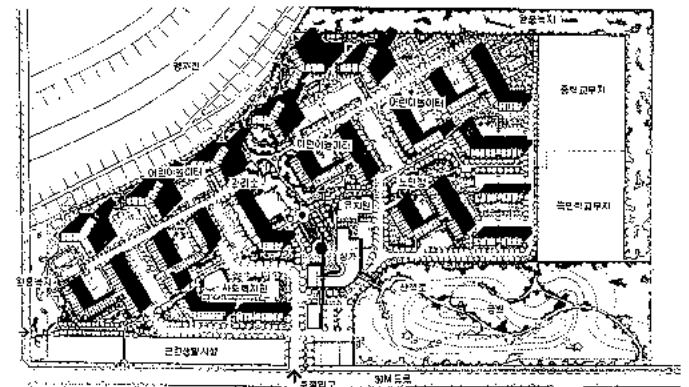
⑪ 단지 계획도



⑤



⑥



⑦

오픈 스페이스 계획

- 근린공원과 양재천을 강하게 연결하는 오픈스페이스축은 보행자의 주 활동축이자 시선축으로 단지내 녹지 중심으로서 기능을 갖도록 계획
- 오픈 스페이스축과 교차하는 동서방향의 보행자축은 보행유발시설이 버스 정류장과 학교시설을 연결하는 목적동선과 강변을 따라 휴게, 녹지 및 각종 놀이시설을 끼고 우회하는 산책 동선으로 구분

시설물 배치 계획

- 상가: 식별 및 접근성을 감안하여 단지중앙의 오픈 스페이스 축 선상에 배치
- 유치원: 아동들의 안전과 통학거리를 감안하여 중앙의 오픈 스페이스축과 교차하는 동서 방향의 보행자축선상에 배치
- 관리동 및 사회 복지관: 관리동은 영구임대, 장기임대, 분양 아파트 단지별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단지별 중심주의 보행자동선 연결지점에 배치하며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내에는 사회 복지관을 두도록 계획

입선작 * * * * * 범한종합건축案 (대표: 최광수)

토지 이용 계획

동서로 긴 장방형의 모습에 의해 대지의 축성이 결정되고 진입과 토지의 이용 형태는 대지를 크게 양분하는 형태로 형성됨. 때문에 중정형 배치로 인한 프라이버시가 주안점이 된다.

부지 조성 계획

- 주변 도로와의 부지 조성 연관성 고려
- 지하층, 지층 구조물의 바닥 레벨을 고려하여 성토예정 부

위의 지하층 배치로 토목 공사의 경제성 제공

- 도로측과 평탄하게 좌우 상향식 부지를 조성

교통 체계 계획

- 보차 분리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
- 조닝별 주차 공간의 분할
- 산책로 주변을 어린이 공원으로 활용하여 주거공간의 효율적 녹지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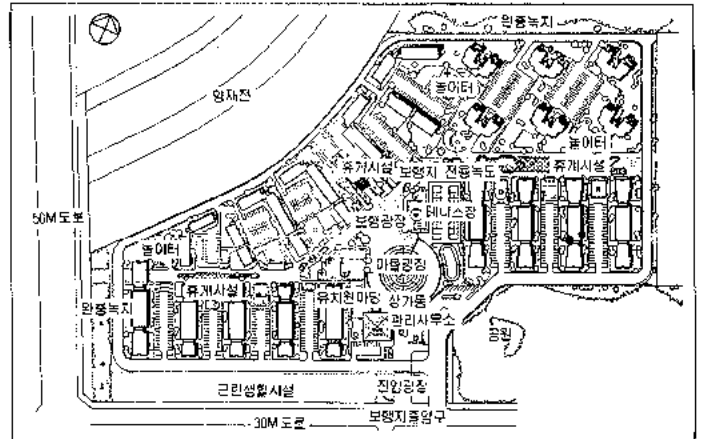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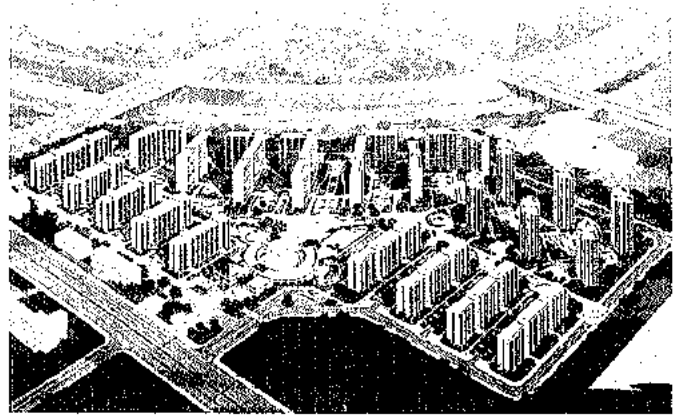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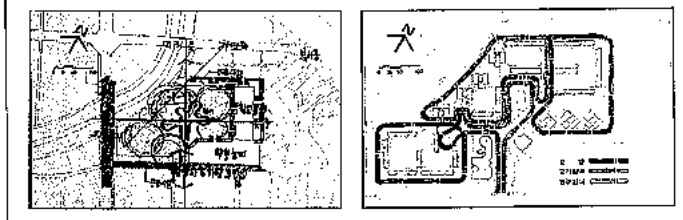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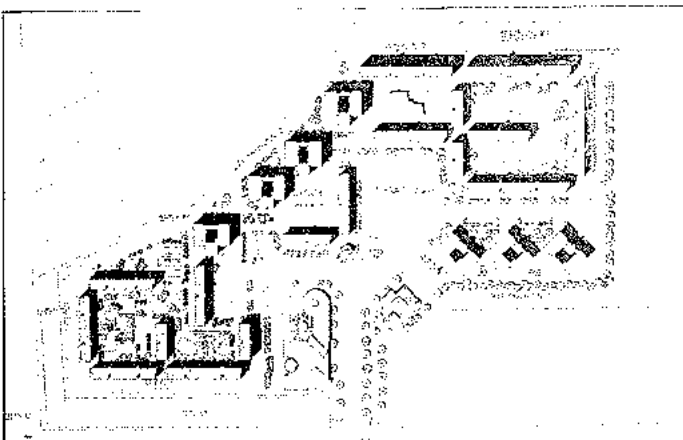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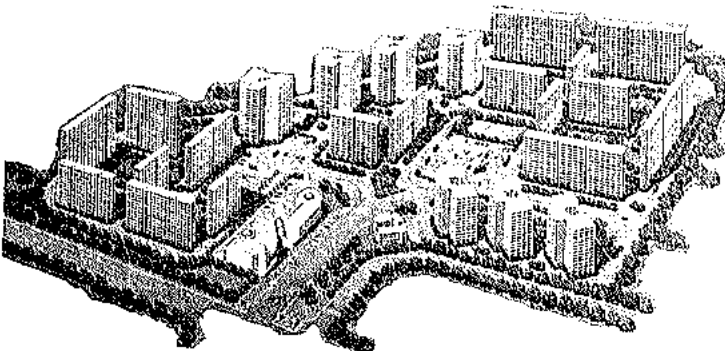
입선작 * * * * * 서울건축종합건축案 (대표: 엄웅)

계획의 개념

- 완충녹지 및 통로에 둘러싸여 자체 완결적인 구심적 조직체계 필요
- 일조, 경관 계절풍의 영향을 최대한 고려 : 대지의 남쪽에 동서향을 바라보는 중북도형 주동을 배치하여 개방시키고 북쪽에는 남향 및 동향의 편복도식 주동을 배치하여 폐쇄
- 단지의 안쪽 끝에 최고층 타원형 주동을 배치하고 북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완성시키는 사각적 터미널 구성
- 완충녹지로 보호된 단지 북측에 고층의 분양 주동을 배치하여 동선 및 매스를 고려한 주동

분포 계획 확립

- 보행녹지 체계를 근간으로 한 보행활동축과 이를 서비스하는 루우프식 차도 체계로 골격구성 : 단지의 규모와 폭을 감안할 때 단지의폭을 노는 차도에서 서어비스 받기에 적절한 폭을 지닌 주동대를 형성시키고, 중앙부는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된 보행자 전용 녹도를 형성
- 토지이용은 주출입구에 가까운 단지 남측 좌우에 비교적 저층의 임대 주동을 배치하여, 보행동선을 단축시킴과 중북도형 평면의 장점을 이용하여 단지 남측면을 개방
- 완충녹지로 보호된 배치동선 및 매스 고려한 주동분포계획



당선작 * * * * *

예성건축(대표 : 이영일) + 김상경(경희대학교수)案



⑩

수서1지구

- 위치 :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동 364번지 일대
- 대지면적 : 80,300㎡ (24,291평)
- 도시계획사항 :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 건립세대규모 : 2,600세대 이상기타 부대시설

예성건축

- ① 부사도
- ② 단지 계획도
- ③ 단지 평면도
- ④ 단위 평면도
- ⑤ 개념도

발행처 : 건축사

⑥ 부사도

도시 및 단지설계

- ▲단지 (superblock)와 도시 (city)와의 상호연결을 통한 주거의 도시성 추구
- 단지와 외곽의 도시가로와 만나는 경우 격자형의 배치패턴으로 도시의 가로변에는 13층 전면이 직접 면하고, 그 주거동 사이에 15층의 타워가 구성되어 수직성장조의 타워와 중층부분의 수평선 유지의 빌딩 윌이 교차하는 「가로형주거」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의 구성으로 도시의 다이나믹한 리듬의 이미지가 실현되어 도시상황에 적응하도록 함
- 단지안의 자연환경에 면하는 부분은 공원속에 타워 (tower in the park)개념을 적용하여 한가로운 전원풍경을 연출하여 좋은 전망과 넓은 녹지 공간으로 쾌적성을 추구하여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시도
- ▲보차분리에 의한 외부공간의 거주성과 영역성 추구
- 단지안에는 보차분리에 의하여 각 주거동의 앞마당과 뒷마당을 서로 다른 성격과 두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외부 공간 체계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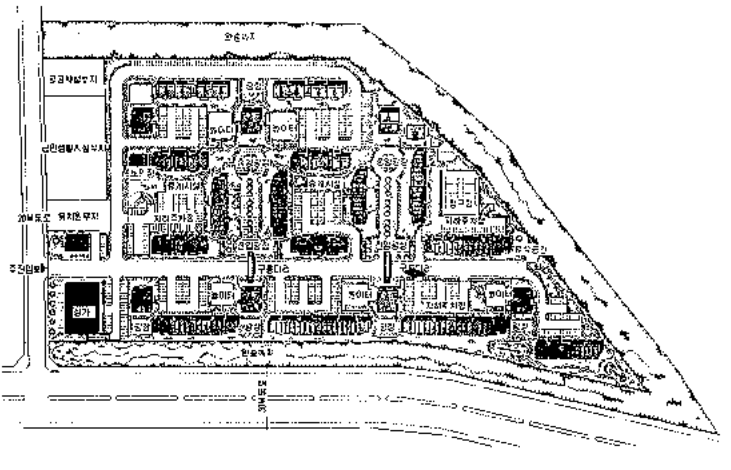
- 단지와외 도로와 만나는 부분의 고층과 중층의 교차되는 영역은 중정공간으로 부여하는 다양한 배치형태의 시도로서 고층 아파트가 가지가 쉬운 확실성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방향성을 유지
- 단지안에서 가로와 세로 양방향의 보행자 전용공간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로공원, 중정, 광장,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가로 (community street) 등의 모임장소 (gathering place)를 계획하여 차량동선 및 주차장공간과 구별
- ▲공간의 위계성과 전통성 추구
- 단지 외곽도로 부분에서 형성되는 도로변 방향의 주거동 (13층)과 타워 (15층)로 구성되는 중정개념의 넓은 플라자 (주차장 + 어린이놀이터)와 단지안으로 들어오면서 형성되는 가로공원 (앞마당)과 주차장 및 놀이터 (뒷마당)의 교차, 그리고 단지의 좌·우로 연결되는 커뮤니티 가로와 광장 등 외부공간의 위계적 체계를 구성.
- 공적인 가로공간과 사적인 주거동이 만나는 중간영역의 디자인 처리는 넓은 가로공원, 중정, 낮은 담장, 계단, 테라스, 커뮤니티가도와 광장, 1층 전용마당 등의 적극적인 구성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동네 분위기를 실현하여 거리의 활성화를 회복.
- ▲주거동의 방향성과 스카이라인의 변화
- 타워형 (15층), 계단식 편복도형 (12+15층), 편복도형 (12층)의 다양한 주거형과 높이를 주변환경의 질서에 적응시킴으로써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시도
- 2개의 중층 주거동 사이에 상호 인동거리에 적절한 폭의 타워형을 구성함으로써 단지의 방

향성과 공동생활의 장소성을 형성.

- ▲지상과 지하에 주차시설의 극대화과 부대시설의 접근성 및 쾌적성 추구
- 외곽도로에서 차량의 순환이 이루어지며, 주거동 그룹사이의 일정한 공간을 보행자공간과 분리하여 Cul de Sac개념의 주차공간을 시도
- 단지주변의 주도로와 만나는 단지진입 위치에 상가의 배치로 접근성의 강조와, 단지안에는 자연환경과 근접한 곳에 커뮤니티가로에 의하여 상호연결된 부대시설의 배치로 접근성 및 쾌적성을 부여.

건축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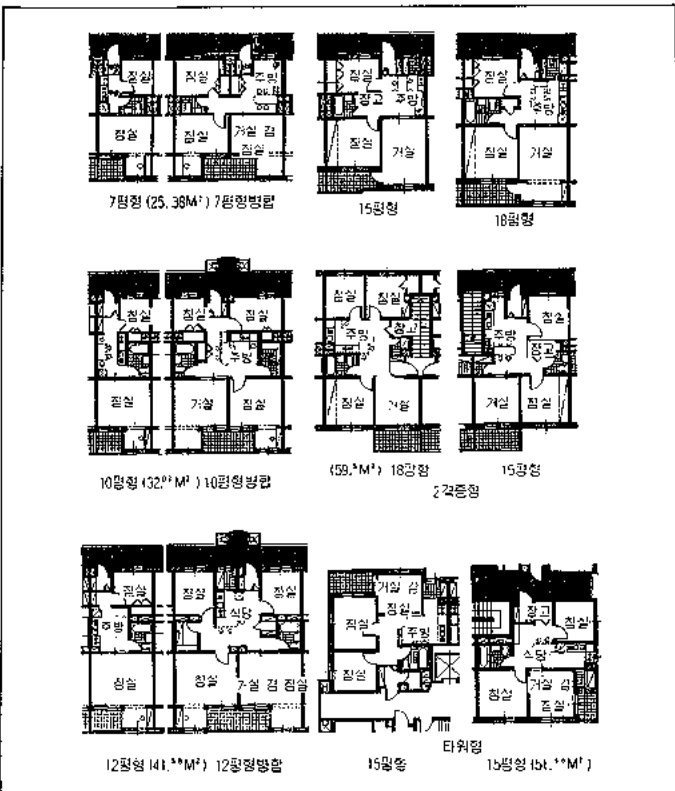
- ▲주거동 및 단위주호공간의 다양성과 선택성 부여
- 편복도형, 타워형 그리고 3개 층마다 복도 및 엘리베이터 서기 방식 (kip stop)에 의한 다양한 주거형식이 제공되어 주거형 모두는 주차장과 중정을 앞·뒤로 함께 면하고 있으며 단지 외곽의 도시환경과 단지안의 자연환경을 함께 공유하는 2중적 특성을 유지
- 각 유형 안에서 여러가지의 크기와 형태의 단위주호의 조합으로 변화있는 공간구성
- ▲단위주호공간의 거주성과 경제성 추구
- 수요자 장래의 변화에 대응한 확장형 및 병합형의 설계제안으로 개량에 따른 슬럼화의 방지
- 오픈 게이트에 의하여 칸막이 벽을 줄여 소형 서민주택공간의 개방성과 융통성 그리고 실용성의 실현
- 거주공간 (거실, 침실, 식당)과 비주거공간 (부엌, 다용도실, 욕실 등)의 분리로 공간의 영역성 부여
- 내부공간조직의 변화에 대한 적응 : 종래 안방이 생활중심지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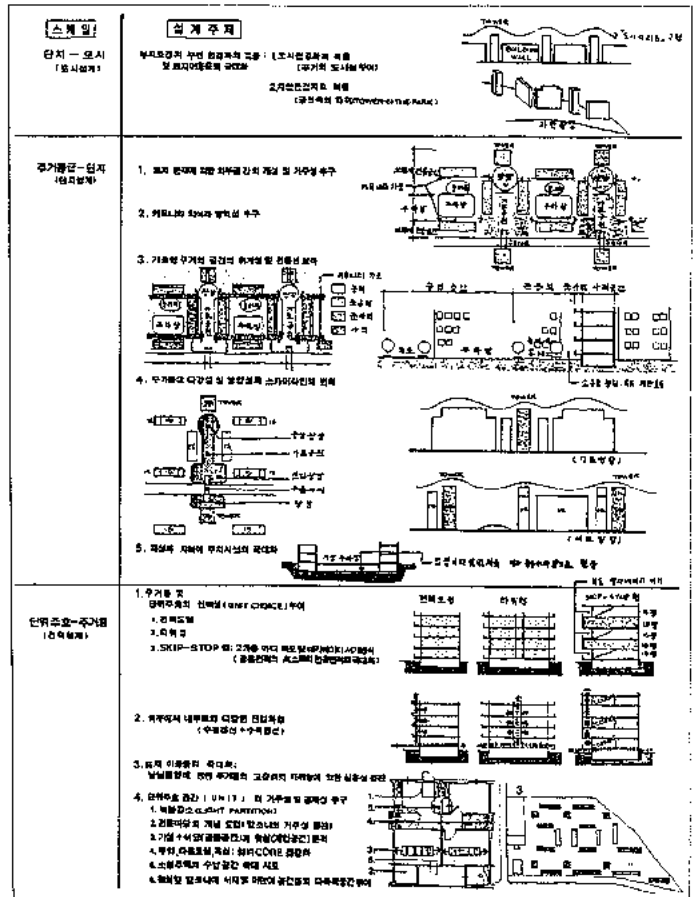


16

역할을 담당했던 개념에서 생활중심기능이 거실+식당의 변적으로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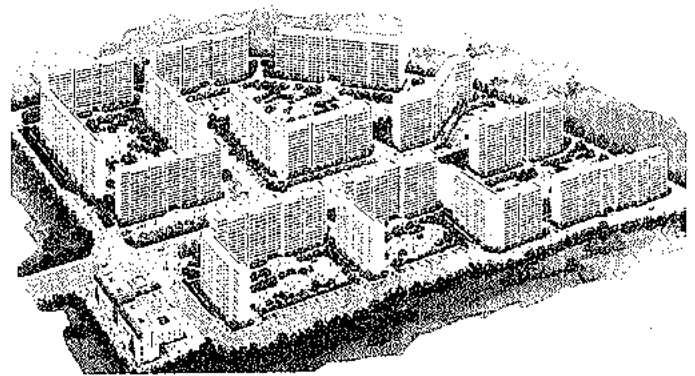
- 비거주공간(서비스기능)의 집중화로 설비 코어의 형성과 설비공사비의 절감효과

- 소형주택의 평면적 및 입체적 수납공간 확대 시도
- 발코니의 거주성 증진: 전통 마당의 개념도입으로 정방형의 발코니 공간으로 생활성과 일조 및 채광효과 증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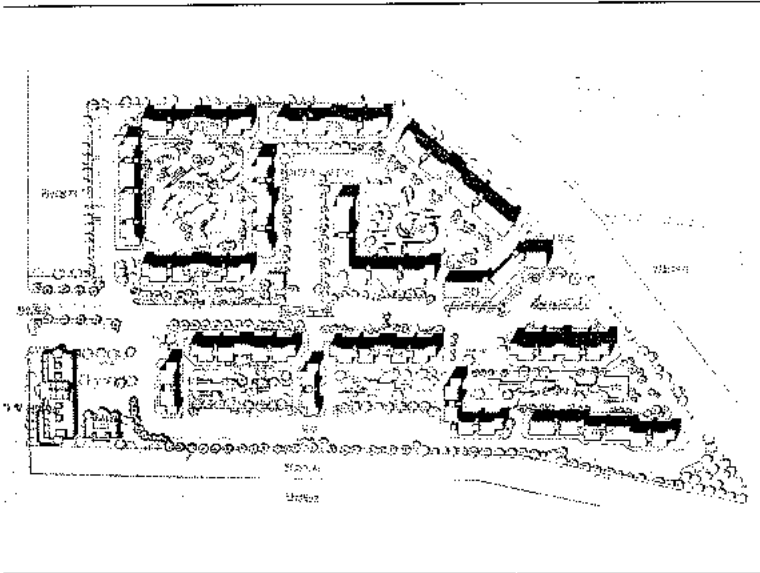
가작 범한종합건축사(대표: 최광수)



18

본 설계안의 계획목표는 사회적 요구의 수렴과 저소득층의 주거개념 모색을 비롯하여, 낙후된 환경 질서를 재확립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의 계획들을 구체화시키자

단지배치의 확실성에 따른 문제점으로 녹지확보가 어렵고,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공공 공간의 부족이 대두되었으며, 주거의 구심적 역할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났다. 또한 경계성 위



49

주의 단지개발로 인하여 생활태도에 긴박감이 고조되며, 삭막한 주거환경으로 성장기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가변적 생활방식에 대응이 불리하므로 단기간 내의 이주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주거 정주개념의 모순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배치에서의 다양성을 위해 공공녹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연쇄적 확보와, 주거의 중심성 회복을 위한 환경개선의욕을 고취시키며 주거민의 공동체식 형성을 위한 구체적 공간 확보 및 공공녹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변적 생활방식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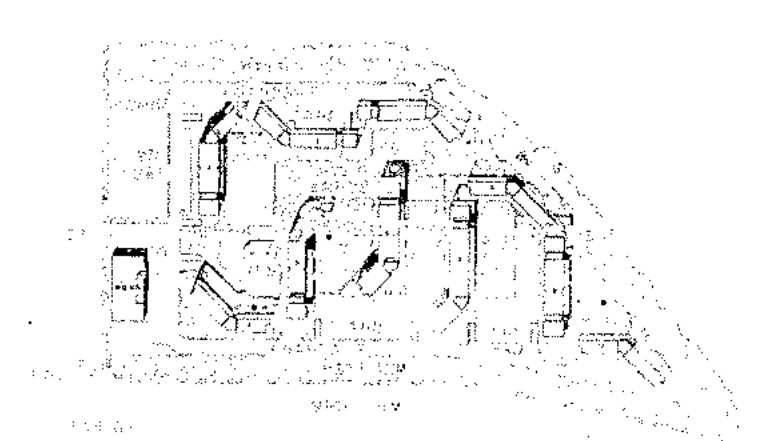
하기 위한 단위를 도입하고 집단 공간을 확보하여 주거의 정주개념 회복에 힘썼다.

부지조성 계획은 주변도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였고, 지하층 지층구조물의 바닥레벨을 생각하여 성토예정 부위에 지하층을 배치, 토목공사의 경제성을 제공하는 한편 도로측과 평탄하게 좌우 상향식 부지를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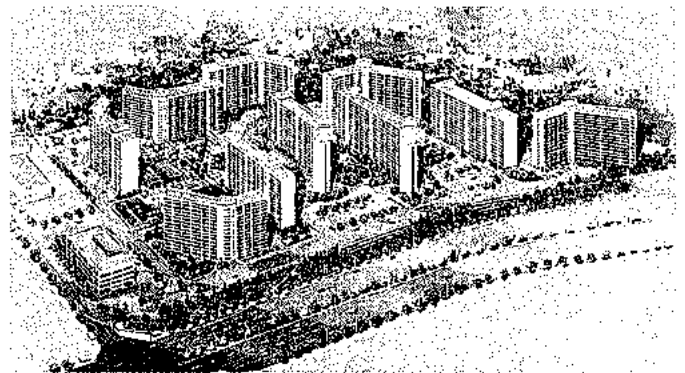
교통체계에 있어서는 보·차도 분리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였고, Zoning별로 주차공간을 분할하였으며, 산책로 주변을 어린이 공원으로 활용하여 주거공간에서의 효율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였다.

입선작

서울건축종합건축案 (대표 : 임웅)



50



21

범원종합건축案

㉑ 단지 계획도

서울건축종합건축案

㉒ 단지 계획도

㉓ 부지도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㉔ 부지도

㉕ 단지 계획도

계획개념

- 획일적인 밀도배분을 지양하고 변화있는 주동계획
- 각 주거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웃간의 자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단위주거의 개인영역과 분구단위의 공동영역, 주거지 전체의 공공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배치

- 단지내부의 통과 교통을 배제하고 보차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주거단지를 조성
- 주거지 지반층에 피로티를 설치하여 단지 전체의 연속성 부여
- 내부 차량동선 배제와 밀도있는 주동계획으로 최대한의 옥외공간(open space) 확보(약45%)
- 중안난방 방식에 의한 난방방식 채택

-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의 최소화와 공급효율 등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이용 및 토지 이용을 극대화
- 장래 개보수 및 병합개수에 대한 배려
- 입주자의 휴식, 놀이 등을 포함한 주거생활이 단지내에서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체계 확립

서울시 신설구청사 현상설계

송파구, 노원구, 양평구등 3개 구청에 대한 서울시의 「신설구청사 설계현상공모」에는 양평구청이 부지선정의 사정으로 연기된 가운데 각각 15개(송파구청)9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송파구청에 삼우종합건축(대표 : 김창수)안과 노원구청에 범한종합건축(대표 : 최광수)안이 당선되었다.

4월 13일 응모자 등록마감후 작품제출까지 한달 남짓한 (5월 15일 작품접수)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설계경기의 심사는 대학교수 8명과 구청관계자 2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맡았다. (▶심사위원 : 이광호(서울대), 안영배(서울시립대), 유희준(한양대), 유도근(홍익대), 이정덕(고려대), 서상우(국민대), 송종석(연세대), 신현식(중앙대), 서정희(노원구청장), 김영근(송파구청장))

송파구청사 신축계획안 당선작

(주)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 案(대표 : 金昌壽)



22

설계개요

- 계획명칭 : 송파구청사 기본계획
- 대지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9-5
- 부지 면적 : 9,813㎡(2,974평)
- 건폐율 : 25.8%
- 건축 연면적 : 14,789㎡(4,473평, 피로티 하부 주차장면적 765.6평)
- 용적율 : 123.6%
- 건축 면적 : 2,536㎡(767.1평)

층별면적

구청사 + 구의회	보건소	계	
옥 타	300㎡	300㎡	
7 층	1,356㎡	1,356㎡	
6 층	1,356㎡	1,356㎡	
5 층	1,855㎡	1,855㎡	
4 층	1,855㎡	1,855㎡	
3 층	1,464㎡	597㎡	2,061㎡
2 층	1,360㎡	597㎡	1,957㎡
1 층	840㎡	573㎡	1,413㎡
지하층	2,033㎡	603㎡	2,636㎡
합 계	12,419㎡	2,370㎡	14,789㎡
(3, 756.7평)	(716.9평)	4,473.6평	

* 피로티 하부 주차장면적 합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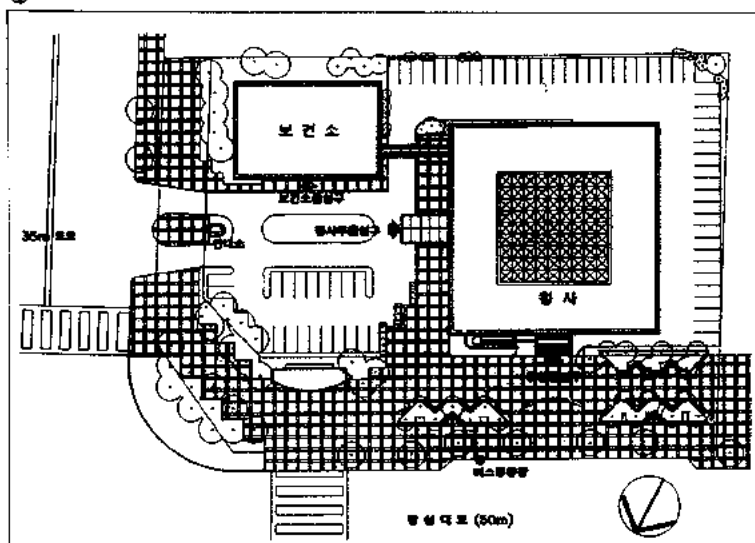
▲ 대상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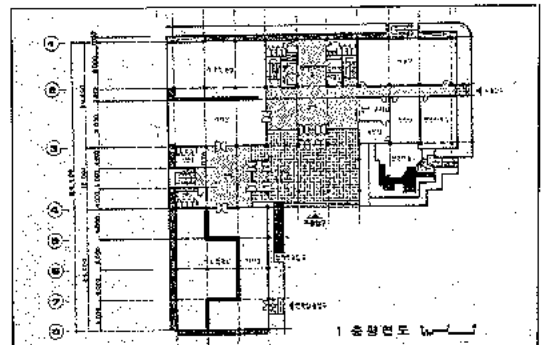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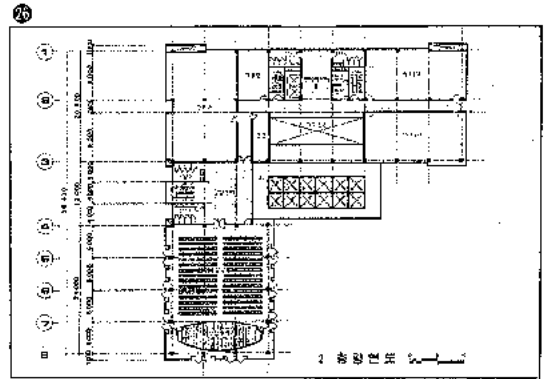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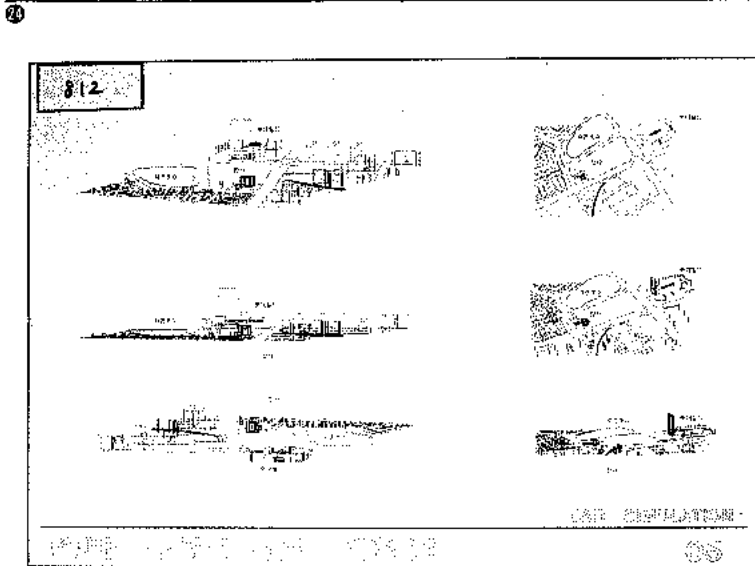
개요	구 청 별	송 파	노 원	양 천
부지위치	신천동29-5 (교통회관앞)	상계택지개발지구 1구역1-2블럭	목동택지개발중심지 구 16블럭 23,5호	
부지면적	2,974평	3,566평	3,388평	
건물규모	부지여건을 고려	지하1층, 지상4~8층, 연면적 각4,470평 내외		
공사비	각 58.1억원			
주요설비	냉난방, 위생설비, 전기·통신설비, 단지내포장, 조경, 하수도및 기타시설			

▲ 기본지침

- 용모자는 해당부지의 입지여건, 각 구별 특성 및 업무의 내용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구민의 편의와 행정사무의 능률성도모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한 작품이 되도록 할 것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장래행정수요에 대비 충분한 면적확보
- 보건소 이용 시민의 편의와 번잡을 고려 구청사와 보건소 건물별동으로 설계
- 각실의 배치 및 면적은 합당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설기준 및 각실 면적기준에 가급적 적합하도록 할 것
- 제반법규사항은 용모자가 검토하여 설계할 것

23





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 2,000년대 행정수요와 지방자치체에 대비한 제반 기능과 시설을 겸비하여 구청의 업무능률을 극대화시키고,
- 구민의 편의증대를 위한 민주봉사형의 건축 공간으로 계획함으로써, 송파구의 행정중심 역할을 하여 구의 상징과 구민의 구심적 장(場)이 되는 건축물을 계획한다.

계획의 개념

- 대지의 효율적 활용
감실대로변 공공공지(20m폭)와 보행 전용통로(10m폭)를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경 및 보행 공간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옥외 주차공간은 본 건물 피로티 하부에 설치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부지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 원활한 동선계획
민원을 포함한 주보행 동선은 전면도로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차량은 측면 도로에서 진입하게 하여 보행과 차량 동선을 분리시키며, 부차적인 보건소 및 서비스 동선은 각 기능별

로 분산처리한다.

- 주차 계획
일반적인 청사 주차장의 이용형태는 단시간 주차(SHORT-TERM PARKING)가 대부분이므로, 장시간 주차에 적합한 지하주차방식을 지양하고, 가능한 지면과 근접한 주차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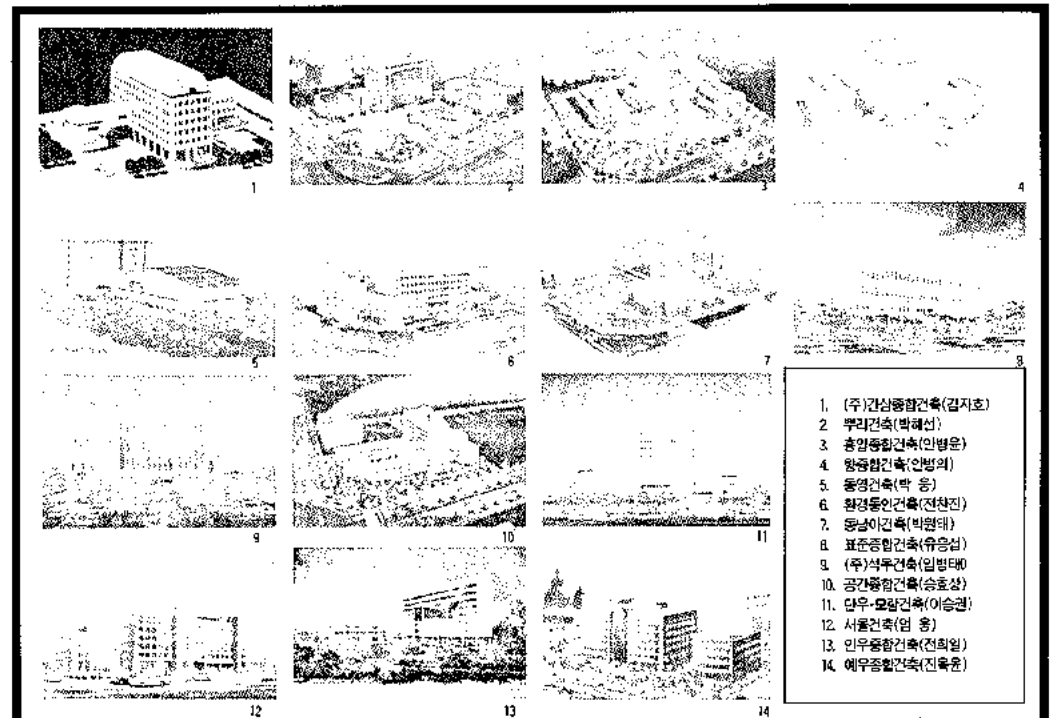
를 절감하고, 주차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피로티하부를 이용한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 외장 계획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한 코너부분의 OPEN SPACE와 장방형 건물이 갖는 양측 방향성과 안정감은 구청사로서의 당위성과 구민에 대한 신뢰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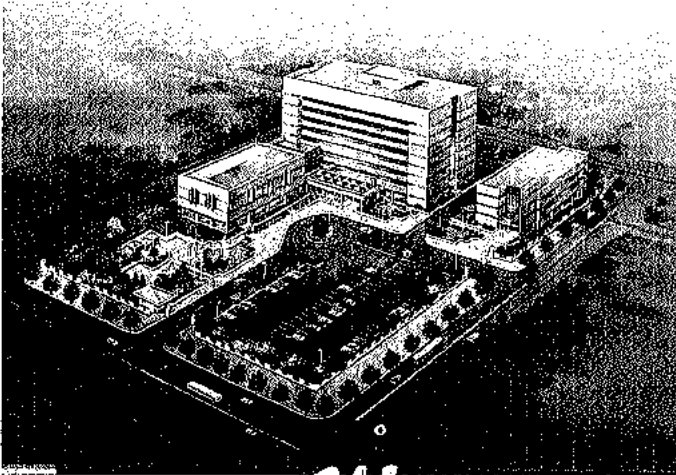
- 옥내 정원계획
건축물 내부 아트리움은 자연채광이 도입되는 옥내의 소공원으로서 구청 직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며, 각종 사무실의 채광과 환기를 원활하게 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송파구청사 신축 계획안 응모작



1. (주)간성종합건축(김지호)
2. 부리건축(박해선)
3. 송암종합건축(인병운)
4. 양광종합건축(인병의)
5. 동명건축(박웅)
6. 환경종합건축(전원진)
7. 동남이건축(박원태)
8. 표준종합건축(유승진)
9. (주)석두건축(임병태)
10. 공간종합건축(송호상)
11. 단우·요양건축(이승현)
12. 서풍건축(임웅)
13. 인우종합건축(전희원)
14. 예우종합건축(진옥윤)

노원구 청사 신축계획안 당선작..... 범한 종합건축사 사무소 案(대표: 최광수)



20

설계 개요

- 대지면적: 노원구 상계동 1-2, 3번지
- 대지면적: 11,788.43㎡(3,566.0평)
- 지역, 지구: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 건축 면적: 2,502.12㎡(756.89평)
- 연면적: 14,737.21㎡(4,458.0평)
- 건폐율: 21.23%
- 용적율: 105.28%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수: 청사동/지하1층, 지상8층, 보건소동/지하1층, 지상3층, 수위실/지상1층
- 마감: 외벽 화강석(타일도가함) 창호 알루미늄 복층 유리
- 주차대수: 105대(법적주차 99대)

토지 이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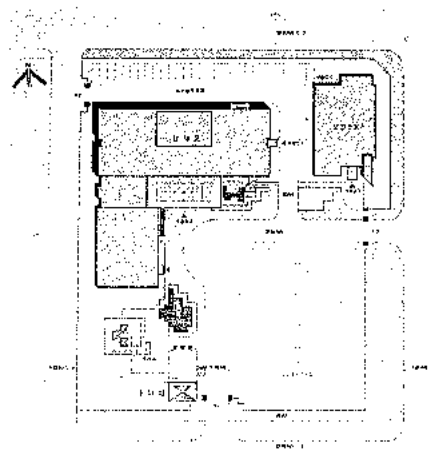
- 구청사의 부지는 비교적 평탄한 대지에 조성
- 4면이 도로에 인접
- 외부도로는 자체 내부도로로 활용
- 건물을 한쪽으로 집중 배치하여 주차 공간 확보
-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하여 외부의 시각적인 만족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

배치계획

- 부지의 이용은 청사 건물, 보건소동, 주차장, 녹지공간등 4개의 지역으로 구획
- 전체 배치는 대칭적인 축을 설정하기 보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한쪽 구석으로 건물을 배치하여 주차장의 공간 확보를 충분히 마련

동별 면적 비교표

구 분	지 침 서	계 획 안
대지면적	11,788.43㎡	
구 청 사	11,200 ㎡	11,226.2 ㎡
구 의 회	1,200 ㎡	1,156.4 ㎡
보 건 소	2,380 ㎡	2,354.61㎡
총 계	14,780 ㎡	14,737.21㎡



20

- 주차장은 일반 이용객과 직원용을 완전 분리 시키는 것으로 건물 후면에 직원용, 전면 공간에 일반 이용객용 주차장을 마련
- 주도로 입구 왼쪽부분에 녹지 공간 및 시민 휴식시설을 확보 일반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
- 건물은 전면에 4층의 민원실동과 후면부분에 8층의 사무실동을 배치하여 시각적 차단을 최소화 시키고 무속건물인 보건소를 사무실동 우측에 배치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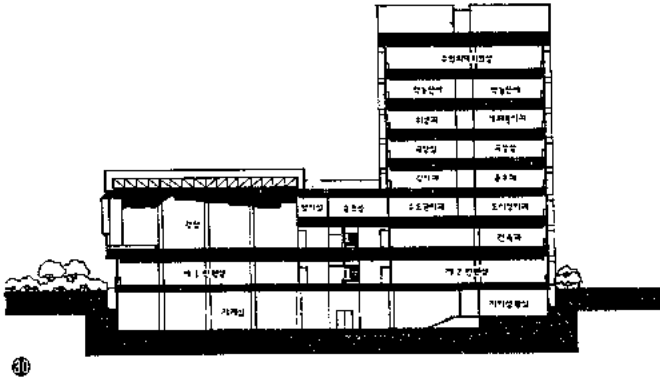
- 도로에서의 자연스런 어프로치
-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교차를 최소화
- 직원 동선과 일반이용자 동선 분리
- 대지내 우회도로 설치로 차량 동선의 원활한 교통체계
- 보차 분리에 의한 보행자 동선의 단순 명쾌한 동선 처리
- 35m 도로에 주출입구 설치 20m 도로에 보조 출입구 설치
- 주차장의 분리로 동선의 단순화 도모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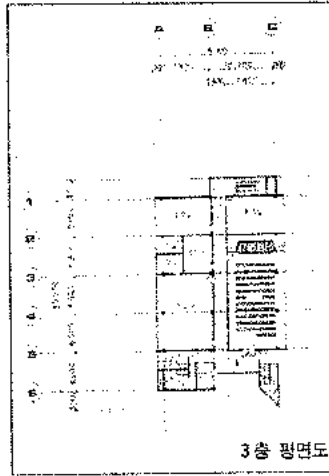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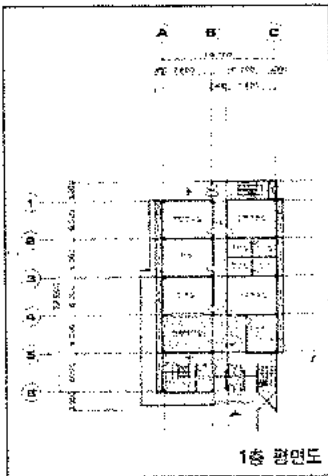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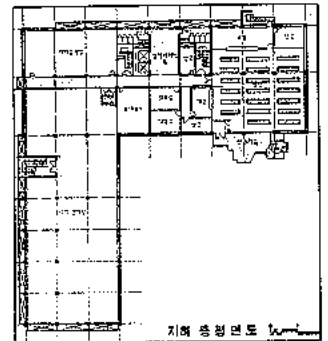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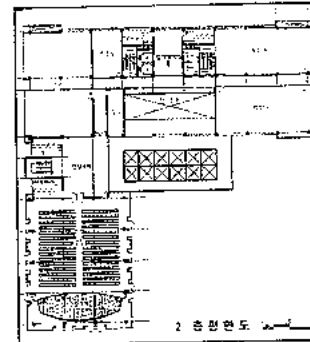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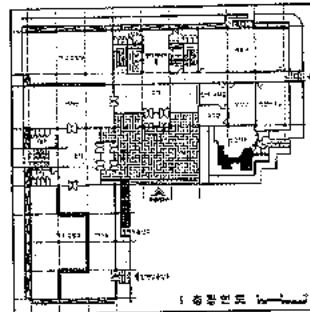
- 민원실동과 사무실동을 분리하여 계획
- 대지 전면 서측에 민원실, 내지 후면 북측에 사무실 배치
- 민원실동과 사무실동 연결부분에 코아를 설치하여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
- 민원실동 코아를 중심으로 1층에서 제1민원실과 사무실동 제2민원실을 연결하여 민원 업무의 합리적 이용 가능
- 민원실동 2층에 강당을 설치 외부 공간과의 연계속에 민원 봉사 공간과 회의 공간을 배치하여 편리성과 친근성및 개방성을 부여
- 구의회를 사무실동 8층에 독립적으로 설치

범한 종합건축사사무소 案

- ① 평면도
- ② CAD SIMULATION
- ③ 2층 평면도
- ④ 1층 평면도
- 범한 종합건축사사무소 案
- ⑤ 투시도
- ⑥ 단지 계획도



㉑ 단면도
㉒ 보건소 평면도
㉓ 구청사 단위 평면도



건물내 동선계획

- 사물실동과 민원실동에 2개의 코어를 설치하여 일반 이용자와 직원 동선을 완전 분리시킴으로써 원활하고 일관성있는 동선을 유지
- 사물실동 코어에 독립된 수직 동선을 확보하며 8층의 구의회 사무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성 부여

입면계획

- 거대한 매스에 다른 위압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2개의 매스로 분절시켜 민원실동의 매끈한 매스부분과 사무실동의 시원하게 뚫린 개구부, 현관부분의 피로터등이 어우러져 시각적 흥미를 유발
- 평탄한 대지에서 오는 입면상

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동을 고층부로, 민원실동을 저층부로 유도시켜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리듬감을 강조

- 민원실동과 사무실동 사이 코아부분을 유리로 처리하여 분절된 두 매스를 연결시켜 주고 전체적으로 변화와 대비의 효과를

도모

- 저층부 민원실동의 동측면 창개구부를 돌출시켜 매스의 입체감을 주도록 계획

노원구청사 신축 계획안 응모작

1. 동서중합건축(김영창)안
2. 공간중합건축(송호성)안
3. 단위·모량건축(이승권)안
4. 인우중합건축(전희일)안
5. 예우중합건축(진옥윤)안
6. 청중합건축(안병의)안
7. 동남이건축(박원태)안
8. 한기중합건축(황인호)안



다시 가을에

계절(季節)의 제삼 소절(小節)
시가(詩歌)의 전장(轉章).

내 삶도 지금 막
헐떡이며 예쁨 왔다.

아! 언제까지 긴
이 치보(癡保)의 시공(時空).

명하니 하늘 우러러
푸른빛 취해 있으니.

가지마다 주저리 노래가 익고
날이 고른 호흡(呼吸).
거기 여간해 끄덕 앓을
산악(山岳)같은 믿음.

날카로움을 깎고
번쩍이는 것을 거두고
타끌도 함께 할 아량(雅量)
아! 바다같은 포옹(抱擁)
가을은 포옹의 계절.
멀지않아 인생의 결장(結章)
겨울이 올 것인데
커다랗게 하나 열매
영근 열매를 갖고 싶다.

朴鎔禹

1989년 7월분 도서신고 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7월분 4백97만8천8백2㎡ 보다 82.15% 증가(4백9만2백84㎡)한 9백6만 9천86㎡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1~7월분 합계한 전년도누계 4천2백29만 8천3백83㎡보다 37.44% 증가(1천5백83 만8천5백 10㎡)한 5천8백13만6천8백 93㎡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지난 6월분 9백2만8천6백63㎡보다 0.54% 증가(4만4백23㎡)한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

구 분		1988년도	1989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741,768	1,969,532	1,217,764	164.17%
	부산지부	338,428	658,834	320,406	94.67%
	대구지부	223,548	321,327	97,779	43.74%
	광주지부	137,173	405,353	268,180	196.50%
	경기지부	856,938	1,505,812	648,874	75.71%
	강원지부	155,655	374,462	218,797	140.56%
	충북지부	235,442	328,635	93,193	39.58%
	전북지부	141,779	462,700	320,921	226.35%
	전남지부	211,550	325,826	114,276	54.02%
	경북지부	402,974	527,148	124,174	30.81%
	경남지부	601,488	895,375	293,887	48.86%
	제주지부	72,468	114,561	42,093	58.08%
감소지역	대전지부	0	541,588	541,588	ERR
	인천지부	437,498	435,296	(2,202)	-0.50%
	충남지부	422,023	212,637	(209,386)	-49.61%
합 계		4,978,802	9,069,086	4,090,284	82.15%

*충남지부와 대전지부의 증·감소 현상은 2월에 지부가 분리가 됨으로 생김.

全國圖書申告 概況(種別前月 對比)

(연면적기준)

(단위: ㎡)

종 별	'89년 6월분	'89년 7월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1,077,246	906,685	(170,561)	-15.83%
다세대 주택	435,741	412,764	(22,977)	-5.27%
연 립 주 택	284,992	160,552	(124,440)	-43.66%
아 파 트	2,739,414	3,505,188	765,774	27.95%
근린생활시설	1,634,185	1,399,239	(234,946)	-14.38%
종 교 시 설	73,333	81,554	8,221	11.21%
의 료 시 설	18,063	12,990	(5,073)	-28.09%
교육연구시설	155,810	210,491	54,681	35.09%
업 무 시 설	1,062,042	764,274	(297,768)	-28.04%
숙 박 시 설	119,860	313,459	193,599	161.52%
공 장	819,219	873,402	54,183	6.61%
기 타	608,758	428,488	(180,270)	-29.61%
계	9,208,663	9,069,086	40,423	0.45%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現況(7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2,303	2,395	1,906,425	127	132	53,107	0	0	0	2,430	2,527	1,959,532
부산지부	1,051	1,332	549,939	259	283	50,099	61	67	58,796	1,371	1,682	658,834
대구지부	615	653	278,803	583	609	33,539	51	51	8,985	1,249	1,313	321,327
인천지부	735	778	403,704	60	68	21,765	23	26	9,827	818	872	435,296
광주지부	347	392	373,033	96	102	30,278	10	10	2,042	453	504	405,353
대전지부	378	378	519,861	34	34	6,793	124	124	14,934	536	536	541,588
경기지부	2,289	2,488	1,297,052	215	240	130,826	62	62	77,934	2,566	2,790	1,505,812
강원지부	399	467	341,317	104	115	32,120	5	7	1,025	508	589	374,462
충북지부	531	608	279,712	118	144	40,648	43	58	8,275	692	810	328,635
충남지부	320	332	159,318	106	106	45,972	55	55	7,347	481	493	212,637
전북지부	285	348	428,546	86	93	27,268	26	26	6,886	397	467	462,700
전남지부	409	446	188,133	179	196	135,864	6	7	1,829	594	649	325,826
경북지부	605	730	402,168	212	250	118,986	15	15	5,994	832	995	527,148
경남지부	1,046	1,229	719,588	428	497	157,061	32	32	18,726	1,506	1,758	895,375
제주지부	189	208	102,348	52	64	12,213	0	0	0	241	272	114,561
합 계	11,502	12,784	7,949,947	2,659	2,933	896,539	513	540	222,600	14,674	16,257	9,069,086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現況(1月 ~ 7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중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21,246	21,688	11,387,925	992	1,014	334,265	0	0	0	22,238	22,702	11,722,190
부산지부	8,262	8,704	4,420,734	1,826	1,862	412,559	438	444	203,299	10,526	11,010	5,036,592
대구지부	4,726	4,961	1,948,717	3,077	3,166	323,613	278	278	107,341	8,081	8,425	2,379,671
인천지부	4,655	5,241	3,939,597	383	408	183,101	118	121	78,299	5,156	5,770	4,200,997
광주지부	2,714	2,964	1,766,783	650	683	122,360	95	95	36,858	3,459	3,742	1,926,001
대전지부	2,886	2,886	1,638,411	333	333	146,302	621	621	179,906	3,840	3,840	1,964,619
경기지부	17,281	18,485	7,911,337	1,731	1,924	1,176,901	405	405	270,046	19,417	20,814	9,358,284
강원지부	3,065	3,567	1,759,057	773	891	289,954	79	83	23,061	3,917	4,541	2,072,082
충북지부	4,112	4,806	2,131,186	834	1,069	294,207	220	312	53,223	5,166	6,187	2,478,616
충남지부	3,127	3,300	1,480,707	644	652	247,732	206	206	61,166	3,977	4,158	1,789,605
전북지부	2,466	2,868	2,009,317	632	689	216,103	143	144	38,472	3,241	3,701	2,263,892
전남지부	3,082	3,478	1,560,223	861	946	463,204	46	47	12,304	3,989	4,471	2,036,731
경북지부	4,896	5,751	3,235,096	1,437	1,602	904,635	167	167	83,349	6,500	7,520	4,223,080
경남지부	8,324	9,622	5,163,102	3,065	3,488	783,288	206	213	100,426	11,595	13,323	6,046,816
제주지부	1,335	1,485	590,787	264	276	47,930	0	0	0	1,599	1,761	638,717
합 계	92,177	99,806	50,942,979	17,502	19,023	5,946,164	3,022	3,136	1,247,750	112,701	121,965	58,136,893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現況(7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중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5,177	5,372	843,462	1,066	1,082	58,034	107	110	5,189	6,360	6,574	906,685
다세대 주택	1,598	1,663	399,116	247	250	13,014	18	18	634	1,863	1,931	412,764
연 립 주 택	112	145	159,178	4	4	1,374	0	0	0	116	149	160,552
아 파 트	234	784	3,443,402	13	34	46,548	2	2	15,238	249	820	3,505,188
근린생활시설	2,965	3,005	1,252,520	541	552	96,669	201	204	50,050	3,707	3,761	1,399,239
종 교 시 설	110	144	68,997	53	59	11,641	5	7	916	168	210	81,554
의 료 시 설	9	9	6,382	13	15	6,167	3	3	441	25	27	12,990
교육연구시설	55	80	121,717	59	60	81,192	22	25	7,582	136	165	210,491
업 무 시 설	180	169	712,601	53	54	33,411	11	11	18,262	224	234	764,274
숙 박 시 설	102	110	214,336	42	45	43,758	19	19	55,365	163	174	313,459
공 장	337	537	461,357	221	353	375,718	47	56	36,327	606	946	873,402
기 타	643	766	266,879	347	415	129,013	78	85	32,566	1,068	1,266	426,488
합 계	11,502	12,784	7,949,947	2,659	2,933	896,539	513	540	222,600	14,674	16,257	9,068,086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現況(1月~7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중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45,746	46,705	7,755,297	7,389	7,563	497,563	574	581	28,549	53,709	54,849	8,281,409
다세대 주택	10,953	11,282	2,565,069	1,606	1,620	85,011	104	104	99,249	12,663	13,006	2,749,329
연 립 주 택	585	853	1,109,619	21	28	26,430	7	7	1,704	613	888	1,137,753
아 파 트	1,330	4,160	15,652,132	79	123	159,880	29	62	56,074	1,438	4,345	15,868,086
근린생활시설	23,501	23,803	10,804,094	3,632	3,718	754,163	1,295	1,311	394,822	28,428	28,832	11,953,079
종 교 시 설	581	660	393,392	319	346	127,795	37	42	7,967	987	1,048	529,154
의 료 시 설	57	64	74,131	67	72	47,854	15	15	14,188	139	151	136,153
교육연구시설	259	344	782,031	304	332	482,728	134	137	62,906	697	813	1,327,665
업 무 시 설	1,029	1,072	4,485,985	363	388	275,970	65	68	52,869	1,457	1,528	4,814,824
숙 박 시 설	971	1,074	1,362,794	244	256	140,951	79	85	112,308	1,294	1,415	1,616,053
공 장	2,581	4,106	3,601,123	1,419	2,182	2,421,960	264	286	197,481	4,264	6,573	6,220,564
기 타	4,584	5,684	2,357,312	2,059	2,396	925,859	419	438	219,653	7,062	8,517	3,502,824
합 계	92,177	99,806	50,942,979	17,502	19,023	5,946,164	3,022	3,136	1,247,750	112,701	121,965	58,136,893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1989. 4. 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을 말한다.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 외형, 부대시설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공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장(서울특별시,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 ①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행한다.

1.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2.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밀집등의 사유로 주택개발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지역으로서 일정비를 이상의 주민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4.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 기타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②제1항에 규정한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지정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등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시계획법과의 관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등) ①시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이용계획
2. 도로, 상, 하수도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사항

3.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존치, 수선, 증축, 개축, 철거등 개량방법 및 그 대상

5. 산사태, 침수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화장실, 탁아소, 공동작업장등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기타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7.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그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항의 결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이전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시장등이 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등이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업은 주민이 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하 "대한주택공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 복지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천재, 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시장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를 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보며, 그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제4조 내지 제9조, 제27조, 제28조, 제33조, 제37조 및 제38조와 도시개발법제7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 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1호의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는 동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동법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건축법등의 적용의 특례등) ①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 및 환기, 동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소, 동법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하실의 설치, 동법제2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동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동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동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전폐율, 동법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동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동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2. 주택건설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동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 및 동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3.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 도시계획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기준 및 동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연면적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②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과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④시장등은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중 이법 공시일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위배되어 건축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나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건축물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과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

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준공검사를 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등) ①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축물을 개량할 수 있다.

②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3조의 3조 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이의 규모, 공합조건, 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 및 임대주택건설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이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이전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당해 지구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하여 공합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매매, 증여, 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 양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제1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공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제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실상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

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제12조(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충당등)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제44조제2항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한주택공사등의 관리처분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①국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취득, 대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는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토지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수용법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15조(표준설계도서의 개발보급) 건설부장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자조적인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축사법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보고 감독등) ①시장등은 관할 지역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매년도 말일

을 기준으로 익년 3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관할 시장등에게 명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한 경우

제17조(벌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와 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효력이 소급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대통령령제12776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1989. 8. 10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린생활시설등의 범위) 법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의 근린생활시설
2. 마을공회당, 공동작업소
3. 공동세탁장, 공동변소, 공동수도, 우물용 건축물

4. 탁아소,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건축물과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제3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신청등) ①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도면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대상지구의 기존 도시계획내용

3. 대상지구안의 건축물, 공공시설, 대지와 그 소유자별조서

4. 대상지구의 주민현황

5. 대상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적도 사본

6. 주민의 동의서, 의견취취 및 그 처리내용

②건설부장관은 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지구의 위치 및 면적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제3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전체면적의 10분의 1미만인 지구의 변경을 말한다.

제4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등) ①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제4조제1항제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총수가 그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2. 법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된 경우에는 그 분할된 지구)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각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3. 법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철거민이 50세대이상 수용된 지역이거나 인구밀도가 1천제곱미터당 300인이상인 지역일 것

②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9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각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2.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에 3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세대주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시장등이 당해 지역안에 세입자를 위한 주택의 건설,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안의 세입자세대주 총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상지역의 면적은 2천제곱미터이상일 것

③시장등은 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대상지역안의 주민현황(세대별 구성원, 거주시기, 소득수준, 재산상태, 생활보호등의

대상여부, 입주형태등을 말한다)

2. 대상지역안의 토지 및 소유상황

3. 대상지역안의 건축물의 현황(동수, 면적, 구조, 소유 또는 임대상황등을 말한다)

4. 대상지역안의 공공시설

④건설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기준등) ①시장등은 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2. 통행체계 및 공급, 처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3. 일조, 통풍, 사생활보호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조성

4.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5. 세입자를 포함한 당해 지구내 전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효과의 균형있는 배분

6. 주택의 건설, 공급의 경우에는 전매, 전대 및 공급질서 교란방지대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별표 1의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보고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 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별표 2의 각 사업항목의 10분의 1미만인 변경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에 다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그 조달방안이 변경을 포함한다)의 변경을 말한다.

1.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및 지구안의 세부도로의 변경

2. 건축물의 규모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위치 또는 형태의 변경

3.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의 각 10분의 1미만의 변경

4. 건축물 용도의 변경, 다만, 주된 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용도 면적의 10분의 1미만인 변경에 한한다.

5. 1년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⑤법제6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구를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장등이 당해 지역 및 지구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3.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교환, 분합등에 대한 관리처분 또는 환지처분에 관한 계획

제6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절차등) ①시장등이 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내용을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7일이상 관계서류 및 도면을 당해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일내에 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의 보고를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의 의견 및 그 처리내용의 요지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 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⑤시장등이 법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명칭,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기간

3. 사업의 시행자

4.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제7조(건축법등 적용의 특례) ①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특례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2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3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4 주거용외의 건축물, 다만, 제2조 각호의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시장등은 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준공검사를 중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대지의 소유권 및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각 1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서에 관하여는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제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주택의 규모, 공급조건등)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모, 공급조건, 방법, 입주자선정기준 및 절차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기준일등)①법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에 대한 입안내용을 최초로 공고한 날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당해 지역 및 지구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①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문서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청사, 관사, 또는 학교 시설용지

2. 철도, 항만 또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용지

3. 문화재, 사적지 및 그 보호구역

4.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 및 보호수생육지

5. 기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④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

정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양여된 토지를 원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감독등)①시장등은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요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시추진 및 그 준공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또는 보고 사항

②건설부장관은 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건설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이 영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영을 적용한다.

별표1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작성서류 및 도면 (제5조 제2항 관련)

도서명	표시사항
1. 계획총괄	가.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목표 나. 계획의 개념 및 개발구상 다. 공공시설의 정비 및 공동시설의 확충 방향 라. 주택의 건설 및 건축물의 개량 방향 마. 주민 소득원의 개발방향 바.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조달방안 사. 기타 주요사항
2. 주변구역의 현황	가. 주변구역의 지형, 기후 등 나.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개황 다. 교통현황 라. 기타 특기사항

도서명	표시사항
3. 대상지구의 현황	가. 위치, 구역 및 면적 나. 지형 및 토지이용 다.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라. 주민현황 마. 토지 및 소유상황 바. 건축물 및 공공시설 사. 기타 특기사항
4. 토지이용계획	가. 도시계획사항의 결정, 변경 나. 토지이용의 세분화 다. 재해방지계획 라. 기타 필요한 사항
5. 공공시설 정비계획	가. 도로계획 나. 상. 하수도 설치 및 정비 다.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
6. 주택의 건설 및 부대 복리 시설계획	가.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계획 나.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계획 다. 입주자선정 기준 및 절차등 라. 기타 필요사항
7. 건축물의 개량	가. 대상건축물 나. 개량범위 및 방법 다. 지원방안 등
8. 공동시설의 확충 및 주민 의 소득원 개발	가. 공동시설 설치계획 나. 주민 소득원 개발방안 다. 기타 필요한 사항
9.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조 달방안	가. 소요사업비의 추정 나. 국공유지 관리, 처분방안 다. 사업비 조달방안 라. 투자계획 등
10. 기타	가.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환지처분계획 나. 분할 시행에 관한 사항 다. 지역 및 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업 라. 기타 필요한 사항

별표 2
주거환경개선사업항목(제5조제4항관련)

사업항목	내 용
1. 공공시설의 정비	가. 도로 정비 나. 상. 하수도 정비 다. 기타 공급시설의 정비
2. 주택의 건설 및 부대, 복리 시설의 설치	가.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나.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3. 건축물의 개량	가. 주택의 개량 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개량
4. 재해방지	가. 축대등의 설치 및 정비 나. 기타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
5.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화장실, 탁아소등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6. 주민 소득원의 개발	공동작업장,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유치동 주민소득원의 개발
7. 기타	시장등이 당해지역 및 지구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 사업

별표3

주택의 공급조건등(제8조관련)

구분	입주자선정기준등
1 주택의 공급조건	가. 공급대상 주택의 공급대상은 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기준일 현재 당해 지구안에 3월이상 거주하는 세입자 세대주로 한다. 나. 공급기준 1세대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방법	가.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이하“분양주택”이라 한다) 당해 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의 다액순에 따라 분양한다. 나.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이하“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당해 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및 당해 지구안의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한다. 이 경우 입주순위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장기간 거주자, 월평균소득다액 세입자의 순으로 정할 수 있다. 다. 주택을 영구임대하는 경우(이하“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당해 지구안의 세입자로서 나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3 주택의 규모	가. 분양주택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나. 장기임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 영구임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이 28제곱미터 내지 40제곱미터를 원칙으로 한다. 라. 세입자에 대한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별구성원의 수, 당해 지구 거주기간, 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 여부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구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4 절차등	가. 입주모집공고 및 절차, 공급신청, 계약 조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나. 장기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지하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 동방포루마 276-0123~5
FAX 279-1718

조적조 내력벽 구조계산에 관한 연구

A Research for Structural Design of Brick Retaining Wall

李明春/상건축사사무소 대표, 공학박사, 기술사

by Lee, Myung-Choon

1. 용도 : 다세대 및 연립주택
2. 구조개요 :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3. 구조계산 : 구조안전도 계산(조적조)규칙
제22조등 준용

(가) 건축물의 규모

1.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개요
(지하층, 지상3층)에서

동별	층수	건축면 m ²	면적 평	비 고
각동	지층	82.22	24.87	옹벽 R.C.조
	1층	82.22	24.87	조적조
	2층	82.22	24.87	R.C.슬라브
	3층	82.22	24.87	및 테두리보
계		328.88	99.48	

- (나) 다세대 및 연립주택 조적구조의 내력벽등에
대한 안전도를 건축법시행령 1-3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절
조적식 구조 제22등(적용범위)(1)항에 의거
구조 계산을 한다.

1. 내력벽에 미치는 응력도 산정

- 1) 지붕슬라브 :

적재하중	슬라브 288	180kg/m ²
고정하중	방수층 40	388kg/m ²
	물 탭 30	
	천 정 30	
	계 :	568kg/m ²

- 보 장 :

적재하중		130kg/m ²
고정하중	지붕고정하중	388
	보 자 중	100
		488kg/m ²
계 :		618kg/m ²

$$\text{보자중} = (0.4 \times 0.2 \times 3.0 \times 2,400K) \div (3.1 \times 3.0) = 62kg/m^2$$

$$\text{내력벽} = 0.19 \times 3.0 \times 2.3 \times 1,900 \div (3.1 \times 3.0) = 267.8 \leq 268kg/m^2$$

- 2) 3층 슬라브 :

적재하중	슬라브 288	200kg/m ²
고정하중	물 탭 30	388kg/m ²
	구 들 40	
	천 정 30	
	계 :	588kg/m ²

- 보 장 :

적재하중	180kg/m ²	
고정하중	슬라브고정하중 388	450kg/m ²
	보 자 중 62	
계 :		630kg/m ²

- 내력벽 :

적재하중(10% 감)		180kg/m ²
고정하중	보고정하중	450
	내력벽자중	268
계		898kg/m ²

- 3) 2층 슬라브

적재하중	슬라브 288	200kg/m ²
고정하중	물 탭 30	388kg/m ²
	구 들 40	
	천 정 30	
	계 :	588kg/m ²

- 보 장 :

적재하중(10% 감)	180kg/m ²	
고정하중	슬라브고정하중 388	} 450kg/m ²
보 자 중	62	
계 :	630kg/m ²	

- 내력벽 :

적재하중		180kg/m ²
고정하중	보고정하중	450
	내력벽자중	268
계 :		718kg/m ²
		98kg/m ²

- 4) 1층 슬라브 :

적재하중	200kg/m ²
------	----------------------

고정하중	슬라브 288	388kg/m ²
	물 탭 30	
	구 들 40	
	천 정 30	
	계 :	588kg/m ²

- 보 장 :

적재하중(10% 감)	180kg/m ²	
고정하중	슬라브고정하중 388	450kg/m ²
	보 자 중 62	
계 :		630kg/m ²

- 내력벽 :

적재하중		180kg/m ²
고정하중	보고정하중	450
	내력벽자중	268
계 :		718kg/m ²
		898kg/m ²

- 5) 지층슬라브 :

적재하중	200kg/m ²
고정하중	Σ 388kg/m ²
계 :	588kg/m ²

- 보 장 :

적재하중	180kg/m ²
고정하중	Σ 450kg/m ²
계 :	630kg/m ²

- 내력벽 :

적재하중	180kg/m ²
고정하중	Σ 718kg/m ²
계 :	898kg/m ²

- 6) 지층내력벽에

미치는 (4층) 전체연직하중(옥상층 포함)

$$\begin{aligned} 4\text{층하중} &= (618K + 898 \times 4) \times 3.1 \times 3.0 \\ &= 4,210K \times 9.3m^2 \\ &= 39,153K = 39,200K \end{aligned}$$

$$\text{지층내력벽 계} = 39,200kg = 39.2t$$

*이상 다세대 및 연립주택 층별 면적하중 산출기초이다.

각층별 연직하중 일람표 (㎡당)

층별	하중	스라브	보장	내력벽	비 고
지붕	적재하중	180	130	130	지붕은 Slab 혹은 모임지붕으로 테두리보 R.C 조
	고정하중	388	488	488	
	계	568	618	618	
3 층	적재하중	200	180	180	테두리보(Wall Girder는 Slab와 T형 R.C구조로 반 Rohmen조)
	고정하중	388	450	718	
	계	588	630	898	
2 층	적재하중	200	180	180	테두리보(Wall Girder는 Slab와 T형 R.C구조로 반 Rohmen조)
	고정하중	388	450	718	
	계	588	630	898	
1 층	적재하중	200	180	180	테두리보(Wall Girder는 Slab와 T형 R.C구조로 반 Rohmen조)
	고정하중	388	450	718	
	계	588	630	898	
지층	적재하중	200	180	180	테두리보(Wall Girder는 Slab와 T형 R.C구조로 반 Rohmen조)용벽 R.C 조
	고정하중	388	450	718	
	계	588	630	898	
내력벽	합 계		4,210kg		지하1층 지상3층

(다) Materials of allowable stress

1. Concrete $f_c = 75 \text{ kg/cm}^2$
 $f_x = 7.5 \text{ kg/cm}^2$
2. Reinforced $f_s = 1,600 \text{ kg/cm}^2$
 $f_c = 1,600 \text{ kg/cm}^2$
3. Bond Stress $f_b = 7 \text{ kg/cm}^2$
4. Bearing power $= 25 \text{ t/m}^2$
5. Cement breck $f_c = 70 \text{ kg/cm}^2$

(라) 보 (Girder) Bending moment and shearing (테두리보)

$$W = 630 \text{ kg} \times 3.0 = 1,890 \text{ kg/m}$$

$$C = \frac{W}{12L} (3L^3 - 2a^2L + a^3)$$

$$= \frac{1,890}{12 \times 3.0} \times (3 \times 0^3 - 2 \times 0.8^2 \times 3.0 + 0.8^3) \times 100$$

$$= 52.5 \times (27 - 3.8 + 0.5) \times 100$$

$$= 52.5 \times 23.8 \times 100 = 124,950 \text{ kg.cm}$$

$$M_o = \frac{3L^2 - 4a^2}{24} W$$

$$= \frac{3 \times 3.0^2 - 4 \times 0.8^2}{24} \times 1,890$$

$$= \frac{27 - 2.6}{24} \times 1,890 \times 100$$

$$= 1.02 \times 1,890 \times 100 = 192,780 \text{ kg.cm}$$

$$M_c = 192,780 - 124,950 \times \frac{3}{4}$$

$$= 192,780 - 93,713$$

$$= 9,067 \text{ kg.cm}$$

$$Q = 1,890 \times \frac{(3.0 - 0.8)}{2} = 2,079 \text{ kg}$$

1) G_1 Girder의 단부 단면을 결정하면

B. Moment $m_e = 124,950 \text{ kg.cm}$
응장대비근(應張對比筋) $m_t = 105$ $r = 1$ 로 가정하면

부속표 7 NO-1에서 $C = 10.85$

* Wall Girder (테두리보) R.C. 조는 각종 하중 등분표(等分布) 내력벽 압축강도전달에 Slab Concret와 T형을 형성 조적조의 획기적 보강 구조가 되는 것이며 규칙 제26조 제2항(내력벽의 두께)표에서 1층, 2층, 3층 공히 19cm 충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bd^2 = \frac{M}{C} = \frac{124,950}{10.85} = 11,516 \text{ cm}^2$$

$$B = 20 \text{ cm}$$

$$d = \sqrt{\frac{11,516}{20}} = 24.0 \text{ cm} \leq 40.0 \text{ cm} \cdots \cdots \text{O.K.}$$

2) G_1 보의 중앙부 단면을 결정하면

$$M_c = 99,067 \text{ kg.cm}$$

$C = 40 \text{ cm}$ $d = 35 \text{ cm}$ 로 가정하면

$$j = \frac{7d}{8} \times \frac{7}{8} \times 35 = 30.6 \text{ cm}$$

$$at = \frac{M}{f_t j} = \frac{99,067}{1,600 \times 30.6} = 2.02 \text{ cm}^2$$

$$= 4.02 \text{ cm}^2 \cdots \text{O.K.}$$

16m/m $\phi \times 2 = 4.02 \text{ cm}^2$
3) 기둥(column) 대응내력벽 단면점점

$B = 19 \text{ cm}$ $D = 300 \text{ cm} \cdots \cdots 3.0 \text{ m}$
지상3개층(옥상포함)으로 가정하여 연직하중 $P \approx 40,000 \text{ kg}$
시멘트 벽돌 : f_c 안전도

$$\text{점점(안전율)} = \frac{70}{3.5} = 20 \text{ kg/cm}^2$$

$$f_c = \frac{P}{BD} = \frac{39,200}{19 \times 300} = 6.9 \text{ kg/cm}^2 < 20 \text{ kg/cm}^2 \cdots \text{O.K.}$$

4) 조적조 내력벽체 두께 = T의

계산검토(내.외부 공통)

$$T = \frac{LH}{DN} = \frac{3.0 \times 2.7}{4.0 \times 22}$$

$$0.092 \text{ m} < 0.19 \text{ m} \cdots \text{O.K.}$$

L = 내력벽 폭(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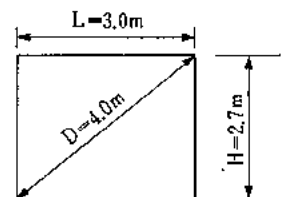
H = 내력벽 높이(2.7m)

D = 대각선(내력벽 폭과 높이의

사선 : 4.0m) $\cdots$ (도1)

N = 주벽에 관한 계수(22)

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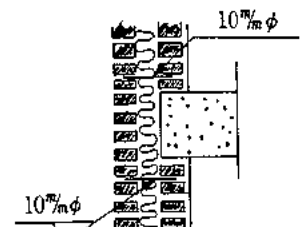
조적조 내력벽두께

$$T = \frac{LH}{DN} = \frac{3.0 \times 2.7}{4.0 \times 22}$$

$$= 0.092 \times 100 =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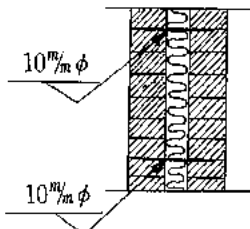
$$= 9.2 \text{ cm} \leq 19 \text{ cm} \cdots \text{O.K.}$$

도-2



외부 이중공간사이 테두리보를 감싸고 있는 조적조 구조는 결노와 습기방지에 기여한다.

도-3



이중벽 내외부를 이형철근 10m/mφ 보강 6단 40cm간격은 전도울방지, 내력 벽두께 19cm로 인정한다.

(마) 조적조 구조 건축법 시행령 규칙 제22조 내지 제30조 적용범위 점검

1. 층고(높이) : $H=2.7\text{M} \leq 4.0\text{M}$

..... O.K.

2. 내력벽

$$\text{두께} : T = \frac{2.7}{20} = 0.135 = 13.5\text{cm} \leq 19\text{cm}$$

..... O.K.

3. 벽길이 : $3.0\text{m} \leq 10.0\text{m}$ O.K.

4. 내력벽으로 :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가장큰방) 검토

$$A = 3.0\text{m} \times 3.7\text{m} = 11.1\text{m}^2 < 20\text{m}^2 < 40\text{m}^2 < 60\text{m}^2 < 80\text{m}^2 < \dots \text{O.K.}$$

5. 간막이 벽두께 : $T' = 9\text{cm} \leq 9\text{cm}$ O.K.

6. 테두리보(Wall Girder)와 Slab가 일체식 T형으로 구성됨으로 반 일체식 Rohmen구조로 간주한다.

7. 3층 이하 건축물로서 :

$$\text{처마높이 } H = 9.45\text{m} \leq 11.0\text{m} \dots \text{O.K.}$$

$$\text{각층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 A = 11.1\text{m}^2 \leq 40.0\text{m}^2 \dots \text{O.K.}$$

로서 규정 제23조 내지 34조에 한하여 적용받는다.

8. 개구부 폭의 합계 : 개구부폭 합계 = 벽길이의 1/2

$$\text{벽길이} : L =$$

$$12.8 \times 2 + 6.6 \times 2 = 38.8\text{m} \div 2 = 19.4\text{m}$$

개구부길이 :

$$W = (2.5 + 2.2 + 0.8 + 1.2 + 1.3) \times 2 = 16\text{m} \leq 19.4\text{m} \dots \text{O.K.}$$

9. 이중벽 : 높이 $2.7\text{m} \leq 3.0\text{m}$

외부단열재 삽입 이중벽으로서

외부소성벽돌 + 단열재 +

시멘트벽돌을 연결하여 40cm 간격으로 10m/mφ 철근으로 매 6단마다 연결 보강함으로 좌굴(挫屈)Buckling을 미연방하여 19cm의 내력벽 두께로 간주

전도(顛倒)율을 억제한다(도-3)

10. 벽량(壁量) : $21\text{cm}/\text{m}^2 \leq \text{벽량} \dots \dots \text{일본}$

규정 인용

$$X\text{-방향벽량} = \frac{(2.7+1.3+0.6) \times 2 + 2.7 \times 2}{82.22}$$

$$+ \frac{3 \times 2 + 2.5 \times 2 + 2.2}{19} \times \frac{19}{19} = 35 \geq 21. \text{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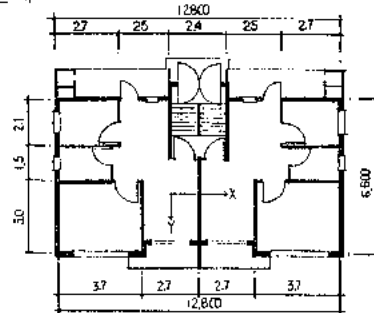
$$Y\text{-방향벽량} = \frac{(6.6-1.3) \times 2 + 0.8 \times 2 + 1.4 \times 2 + 3 \times 2 + 3.7 \times 2 + 4.5}{82.22}$$

$$\times \frac{19}{19} = 40 \geq 21 \dots \dots \text{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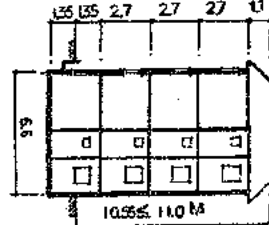
11. 대린벽(對隣壁) : 서로 이웃(相隣)하여 1개이상 접착하여 내력벽을 구성하고 있으며, 벽높이의 1/3이상의 부축벽등으로 간막이 벽체를 형성하고 있다.

12. 이중공간외벽 : 1개이상 대린벽은 1/3~1/4정도의 하중지지, 반내력벽인고로 간막이벽 T(9cm)와 흡사하다. 위 향에서 이형철근 보강은 19cm 벽두께로 법적 인정을 받으며 실내 공간 약 3.0m² 이상+와 공사비 절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도-2, 도-3) 참조 절노와 습도를 완전 차단할 것이다.

도-4



도-5



(바) 조적구조의 건축법상 현대식과 재래식 비교검토

1) 조적조는 건축법상 3층까지 허용되는 바, 본 외벽조적의 경우 각층 내력벽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 0.5B+단열재 50m/m+외부마감 소성벽돌+0.5B=

1.0B로 축조, 내부 중요부

내력간막이벽은 시멘트벽돌 1.0B로 축조,

내부 중요부 내력간막이벽은 시멘트벽돌

1.0B로 축조함으로서 도-4,5와 같은

구조체로서 내력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역학적 측면에서 보면 벽들은 단면적이

큼으로 연직 압축응력도가 비교적 높으나,

조적인고로 수평응력도가 다른 건축골조

재료에 비하여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은 것이 본질적으로 흠이다.

2) 본 조적구조체의 공법에 있어,

(도-2 : 설계도 참조) 내부시멘트벽돌

0.5B+외부 소성벽돌 0.5B=1.0B공간

쌓기로 되어 있으며 이 T보(T. Beam형)가

Slab로 연결되어있는고로 테두리보(Wall

Girder)는 반 Rohmen구조체이며, 외부

이중벽은 10m/mφ 이형철근 40cm

간격으로 6단마다 보강함으로 벽두께 19cm로

인정받으며 내력벽의 전도(顛倒)에 안전하며,

2개이상의 대린벽(對隣壁)으로 내력벽을

구성함으로 각종 하중을 최대한

등분포(Uniform Load)로 전달하는 것이다.

(도-2,3참조) 고로 실험 및 구조제안상

재래식 목구조 집중하중(Concentrated Load)

0.5B+0.1B공간쌓기 벽두께를

(사) 결론

1. 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1-3

제22조제2항 조적식구조 제22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 구조제안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경험상 기동 R.C조 Rohmen구조와

조적혼합구조는 그 접합부위에서 동접기

결노현상과 우기에 습기현상은 피할 길이

없음을 이 기회에 부언하여 두기로 한다.

구조 계산상 R.C 기동혼합구조는 전혀

불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공사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2. 따라서 천재지변과 같은 불의의 충격이

없는 한 본 다세대 및 연립주택 조적구조상

지층 내력벽 및(외부)소성벽돌 0.5B+내부

시멘트벽돌 0.5B 공간쌓기 조적구조는

상술한 바 테두리보 T-Beam Slab식으로서

조적구조의 획기적 보강방법이며, 실험 및

구조제안 검토한 바, 내력벽 조적구조는 위

제22조 제1항(적용범위)에서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기에 족하다고 판단된다.

'90예산편성 위원회 개최

1990년도 본협회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편성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8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9회 理事會에서 예산편성위원회 운영지침을 승인함에 따라 구성된 예산편성위원회는 朴成圭理事를 위원장으로 한 이사4명과 각 지부 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기타 대의원중에서 지부에서 선임토록 위촉하여 총 39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그동안 본부총회가 매년 익년도 예산편성문제로 대의원들이 많은시간을 낭비하는 등 비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온바, 향후 예산편성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총회에 제출토록하여 제출된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지부별로 대의원 회의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토록 함으로써 총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정착시키고자 한 것이다.

예산편성위원회를 통과한 '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理事會를 거쳐 정기총회에 부의, 확정 한다.

이번 예산편성 위원회에서 편성된 '90년도 본부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 8억9천3백만원

*월 정 회비 :

정회원 회비(월) - 18,000원

준회원 회비(월) - 10,000원

*실적 회비 :

설계보수액의 0.04%

*보조금 수입 :

전국건축사대회 회원부담금

1인당 2만원

*기타수입

2) 특별회계 : 12억5천만원

*입회비 - 300만원

*광고수입

*임대수입

3) 건축법령 연구소회계 :

9천5백만원

* 특별회계의 연구소 보조금



예산편성 위원회의



제10회 理事會



제5회 지부회장 회의

제10회 이사회 개최

제10회 理事會가 宋基德 회장 주재로 부회장, 이사, 감사, 서울지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월 3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1990년도 예산안 승인등 주요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날 理事會 주요안건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附議事項〉

案件 : 1990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안) 승인의 건

處理 : 2차에 걸친

예산편성위원회에서 검토,

조정된 원안대로 승인함.

案件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處理 : 협회운영개혁을 위해

예산편성위원회 개최등 각종

위원 회의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개최되어 이에 따른

회의비의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원안을 승인.

案件 : 자문세무사 선임의 건

處理 : 오승세무회계사무소의

최소오를 본협회 자문세무사로

선임키로 함.

案件 :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개정(안) 승인의 건

處理 : 개선안에 대해 추후

협의 후 결정토록 유보함.

案件 : 지부 사무국장 직급조정

승인의 건

處理 :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부 사무국장의

직급조정은

소속지부회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직급조정을

희망하는 지부 사무국장과

본부 직원에 대해 직급을

올에서 감으로 조정키로

승인하되 조정은 회장, 부회장,

朴成圭 이사, 사무처장이

조정토록 결의함.

〈기타事項〉

案件 : 수해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 무료봉사 및 설계·감리비

50% 감면운영에 대한 건

處理 : 9월중 접수된

수해건축물의 안전 진단실사는

지부별로 자체 건축물

안전진단반을 편성하여

무상으로 봉사하며 복구에

대한 건축물의 설계·감리비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한 금액의 50%로 감면

운영하여 수재민의 복구활동을

적극 후원키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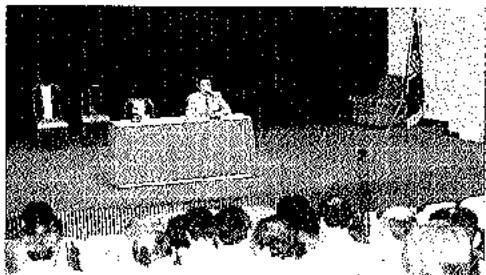
제5회 支部會長會議 開催

본 협회 各市道支部 會長會議가 宋基德 회장 주재로 8월 28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한편 '90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졌다.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지부 감사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광경

시도 지부 감사회의 개최

1989년도 제24회 정기총회를 대비한 자체 정기감사가 전국에 걸쳐 실시된다. 금번 정기감사는 행정운영의 적정성 및 능률성을 제고시키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 중복간사를 지양토록하고자 지부 감사의 소속 지부는 소속 지부 감사가 실시하고 결과보고에 의한 서면 감사로 대체하며 비진지부에 대하여만 현지출장 확인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9일 대전 유성관광 회의실에서 각 시도 지부 감사집체교육이 실시되어 감사방향 및 지침이 시달되었다.

본부 및 각 시도지부 감사 실시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감사기간: 본부 - 1989. 10. 23~27
지부 - 1989. 9.

4~30일중
(지부실정에 따라 선택)

②감사자: 본부 - 감사: 오운동, 김일영

지부 - 소속 지부 감사

③감사 결과 제출
본부: 1989. 10. 30
지부: 1989. 9. 30

④감사자료
작성기준: 본부 - 1989. 1. 1~9. 30
지부 - 1989. 1. 1~8. 31

⑤감사 실시 내용
*89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리 및 시행 여부
*주요 업무 추진 및 사업 실적
*시정 업무 추진 사항
*89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도서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각종 문서 수발 및 처리 사항
*기타 협회 업무 관련 사항

宋會長, 總理 司正諮問委員에 위촉

本協會 宋基德會長은 지난 달 30일 姜英勳총리 주재로 열린 司正자문회의에서 공직자 사회의 정화방안을 논의하고 자문에 응할 國務總理 司正諮問委員에 위촉되었다.

이날 위촉된 國務總理 司正諮問委員 명단은 다음과 같다.

- ▲金東一(梨大교수)
- ▲林煥燮(高大교수)
- ▲朴堉告(東國大교수)

- ▲宋復(延大교수)
- ▲宋相現(서울대교수)
- ▲李京余(소비자연맹 상부)
- ▲趙永冕(소비자보호단체 협회장)
- ▲金斗璜(공인회계사 회장)
- ▲曹圭河(全經聯 전무)
- ▲許相寧(중소기업협동조합 부회장)
- ▲姜英求(MBC 보도국장)
- ▲宋貞淑(서울신문 논설위원)
- ▲車相源(상공회의소 부회장)
- ▲洪義植(신한투자금융 사장)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실시

건축관련법규의 개정을 포함한 협회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가 지난 8월25일 본협회 대강당에서 본부 임원 및 서울·경기·인천지부 임원 및 본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모두 4가지 연구과제를 나누어 협의회 이날 협의회는 법령연구소와 제도개선 연구위원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

이날 협의회 사항들은 최종 종합하여 支部會長會議 및

理事會를 거쳐 정식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제1연구과제
 1. 조사 및 검사 대행 업무
 2. 협회 조직 및 운영제도
- 제2연구 과제
 1. 건축사 자격 시험제도
 2.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제도
- 제3연구과제

건축법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연구과제

주차장법 개선에 관한 사항

수재의연금 기탁

지난 8월 1일 전국회원들이 수재의연금 1천여 만원을 한국일보사에 기탁한 이래 각 市道支部별로 수재민에 대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全羅南道支部(會長 金仁模)에서는 8월 2일 수재의연금 20만원을 金仁模회장이 광주일보사에 기탁했으며 목표분소 회원일동이 34만 4천 5백원, 순천분소

회원일동이 35만원, 여수분소 회원일동이 30만원을 각각 MBC 각 지방 방송국에 기탁하였다. 또한 濟州道支部(會長 李世院)는 8월 14일 모금운동을 통해 조성된 수재의연금 50만원을 제주신문사에 기탁하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

신임회원



李柄水
1952. 9. 29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창원종합건축사사무소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295-2
626-9077



朱仁秀
1956. 6. 30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미라인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02-61
334-3358



李揆洪
1953. 1. 5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창원종합건축사사무소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295-2
626-9077



朱澤龍
1959. 10. 14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2-4
585-2201



白昇基
1952. 4. 25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창원종합건축사사무소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295-2
626-9077



李完鎭
1954. 10. 10
경북개발대학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신동건축
대구시 남구 대명동 809-3
625-9959



洪張杓
1959. 7. 27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세기건축
서울시 중구 수표동 47-6
278-3111



成政吉
1952. 9. 22
서울대, 동대학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8-8
266-6315



金鍾秀
1951. 5. 5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머릿돌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8-9
573-9505



張炫洙
1958. 5. 2
서울산업대학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모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708-332
587-8175



牟然興
1926. 2. 15
경성공업학교 건축과
범우, 성원, 복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1-16
547-7576



吳永郁
1953. 4. 16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0-3
549-0312



洪英佑
1956. 9. 2
연세대, 동대학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전건축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9-9
566-1906



金秉玄
1937. 10. 2
서울대, 동대학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8-8
266-6315



柳鍾成
1941. 4. 23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수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3-2
553-7872



金琛弘
1952. 12. 8
부산대, 연세대 대학원 건축과
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2-4
585-2201



南炳台
1956. 1. 16
대전공업대학, 중앙대 대학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다듬
대전시 중구 대동2동 479-2
26-4273



朴圭龍
1956. 6. 11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삼·원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251-157
469-4516



李相潑
1954. 3. 9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우양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7-46
553-8849



朴昇柱
1957. 11. 19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과
태, 신화종합건축사사무소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11-10
427-1115



安鎬亨
1954. 5. 25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
부산 동구 초량동 1205-1
44-5880



崔光鎭
1955. 7. 15
대구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아성, 선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57-10
554-3003



金聖烈
1951. 11. 11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전
부산시 동구 범일 2동 830-268
645-7188



張世春
1954. 7. 28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서림건축사사무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243
5-3733



金昶微
1957. 8. 21
동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연계건축사사무소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297-1
54-3023



朴義植
1940. 8. 6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동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2
782-3146